

2022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제도 알림 사항



1 2021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가 개선되어 질병·육아 등으로 인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이 의무적용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일하지 않는 아래 경우에 한하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2021년 7월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적용제외신청 가능한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한 1개월 이상의 휴업

2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산재보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 다음과 같이 특별 자진신고 기간 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직 등을 신고한 사업주에게 이 법 시행일(공포일) 이전의 산재보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특별자진신고기간	2022. 1. 1. ~ 2022. 12. 31.
면제 내용	- (부과고지사업장) 특별자진신고 기간 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급 입직 신고는 경우 2021.1.5. 이전 산재보험료 50% 면제 - (자진신고사업장) 특별자진신고 기간 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해 소급하여 보험관계 성립 신고하면 2021년 이전 연도 보험료 확정신고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50% 면제

3 2022년 6월 30일까지 산재보험료를 경감해드립니다.

-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해드립니다.

대상직종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경감보험료	2021. 7. 1. ~ 2022. 6. 30. 기간 발생하는 산재보험료 ※ 2022년 6월 입직자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2022.7.15.까지)내 신고분까지 적용

2022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가입 및 부과 업무 흐름도(부과고지사업장)

1. 근로자 종사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신고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퇴사시 : (산재)근로자자격취득신고, 근로자자격상실신고 (고용)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다음달 15일까지 ○ 전근·휴직, 정보 변경 시 : (산재)근로자 전보신고, 휴직 등 신고, 근로자정보변경신고 (고용)피보험자 전근신고, 휴직 등 신고,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일용근로자 : (산재,고용)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다음달 15일까지
월별보험료산정 부과·고지·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보험료 산정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고 지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도착 ○ 납 부 : 다음달 10일까지
자격상실신고에 의한 퇴직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퇴사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자격상실신고 시 작성 ○ 퇴직정산 결과 반영월의 월별보험료에 합산고지 (추가부과, 반환·충당) : 반영월의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등분하여 반영월과 그 다음월 월별 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연도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3월 15일까지 ○ 정산결과 4월분 월별보험료에 합산 고지(4월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분할 하여 4월과 5월분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추가부과, 반환·충당)
연도 중 소멸사업장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멸신고 : 소멸일부 14일 이내 ○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료 정산(추가부과, 반환·충당)
정산보험료 직권조사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사업장 또는 신고누락 근로자 직권조사부과 : 유관기민(건강보험, 국세청 등) 자료 및 기준보수를 이용하여 직권조사부과 ○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해 일괄정산, 정산 결과는 10월 보험료에 반영 ○ 수시정산 : 신고내역이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연도 중 수시 직권조사부과

* 각종 신고·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하시면 편리합니다.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 4대사회보험 공통신고 서식 접수는 4대사회
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및 다른 공단 EDI에서도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예술인 종사 사업장

<p>(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예술인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종사 관리번호와 별도 성립 필요 ※ 산재보험 가입은 '중소기업사업주등 산재보험 가입 신청(p.145)' 이용
<p>(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퇴사시 : (고용)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다음달 15일까지 ○ 휴업, 정보변경 시 : (고용)휴업 등 신고,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기에술인 : (고용)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다음달 15일까지
<p>(고용보험) 월별보험료산정 부과·고지·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보험료 산정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1.4%, 2022. 7. 1.부터 1.6%) ○ 고 지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도착 ○ 납 부 : 다음달 10일까지
<p>(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에 의한 퇴직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용역 계약 종료 시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자격상실신고 시 작성 ○ 퇴직정산 결과 반영월의 월별보험료에 합산고지(반영월의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등분하여 반영월과 그 다음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추가부과, 반환·충당)
<p>(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연도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3월 15일까지 ○ 정산결과 4월분 월별보험료에 합산 고지(4월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분할하여 4월과 5월분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추가부과, 반환·충당)
<p>연도 중 소멸사업장 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멸신고 :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료 정산(추가부과, 반환·충당)
<p>정산보험료 직권조사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사업장 또는 신고누락 예술인 직권조사부과 ○ 수시정산 : 신고내역이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연도 중 수시 직권조사부과

* 각종 신고·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하시면 편리합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최초 종사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 종사 관리번호와 별도 성립 필요
(산재보험) 입·이직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퇴사시 : (산재)입직신고, 이직신고 (고용)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다음달 15일까지 ○ 휴업, 정보변경 시 : (산재)휴업 등 신고(1개월 이내 휴업), 적용제외 신청(1개월 이상 휴업), 명세변경신고 (고용)휴업 등 신고,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기노무제공자 : (산재)건설기계 입직신고서 (고용)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월보수액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 → 다음달 말일까지 ※ 기준보수 적용 직종(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제외
월별보험료산정 부과·고지·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보험료 산정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산재) 직종별 기준보수 × 사업장 보험료율 - (고용) 월보수액 × 1.4%(2022. 7. 1.부터 1.6%) ○ 고 지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도착 ○ 납 부 :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에 의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자격상실신고 시 마지막 적용월 및 그 전월 지급한 월보수액을 기입 - 그 외 월보수액 통보 누락월 있는 경우 통보서 추가 제출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연도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3월15일까지 사업주는 전년도 월보수액 통보 내역 확인 신고 - 미신고 월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는 경우 해당 월보수액 통보 후 확인서 제출
연도 중 소멸사업장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멸신고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료 정산(추가부과, 반환·충당)
정산보험료 직권조사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사업장 또는 신고누락 종사자 직권조사부과 : 유관기관(국세청 등) 자료 및 기준보수를 이용하여 직권조사부과 ○ 수시정산 : 신고내역이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연도 중 수시 직권조사부과

* 각종 신고·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하시면 편리합니다.

보험료 징수 및 정산 업무 흐름도(자진신고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본사 :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건설업 일괄적용 : 일괄적용 성립신고 - 건설업을 행하는 자의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별공사 및 별목업: 건설 및 별목업 성립 신고 - 성립일(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산보험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기간 : 당해 연도(1.1. ~ 12.31.) ○ 신고기한 : 매년 3월 31일까지(연도 중 성립 사업장은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 보험료 : 추정보수총액×보험료율 ○ 납부방법 : 일시납 또는 분납(2~4회) ○ 유의사항 :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수총액 대비 70~130% 이내인 경우 확정보수총액과 같은 금액으로 신고
사업개시(종료)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시(종료) 신고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신고(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사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확정보험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기간 : 전년도(1.1. ~ 12.31.) ○ 신고기한 : 매년 3월 31일까지(연도 중 소멸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험료 : 확정보수총액×보험료율 ○ 납부방법 : 일시납
건설업 확정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 : 국세청 결산자료 및 기성실적 자료를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보수총액과 대조하는 등 “확정정산사업장 선정위원회”에서 정산대상 선정 ○ 실시기관 :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 소속 「확정정산부(팀)」에서 정산 ○ 정산원칙 :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한하여 조사하되, 정산 결과 추가 징수합계액이 신고액 대비 10%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시점까지 정산

* 각종 신고·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하시면 편리합니다.

4대사회보험 전자신고방법



STEP 1. 사업장 회원가입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장 회원가입 클릭!
사업장 회원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면 가입 완료!

STEP 2. 사업장 성립 신고

처음으로 신고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성립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표자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STEP 3. 자격취득신고

근로자 채용 시 4대사회보험에 취득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4대사회보험 공통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하고자 하는 보험을 선택하여 개별 신고도 가능!



◀ 4대사회보험 가입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4대사회보험 가입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

2022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 2022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기준(일반근로자)

구 분		지원 기준
지원대상 사업 규모*		근로자 10인 미만
지원대상 보수 수준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지원율	신규가입자**	80%
	기가입자***	미지원
지원 기간		'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제외 대상기준	재 산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지원대상 사업 규모: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2022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기준(예술인·노무제공자)

구 분		지원 기준
지원대상 사업 규모*		근로자 10인 미만(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규모 판단시 미포함)
지원대상 보수수준**	예술인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월보수 통보액 230만원 미만
지원율		80%
지원 기간		예술인·노무제공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제외 대상기준	재 산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지원대상 사업 규모: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지원대상 보수 수준: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보수 합산 금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예술인·노무제공자 각각 판단)

※ 월보수 통보: 사업주가 월보수액을 기한 내 통보한 노무제공자에 한하여 지원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지원

2022년도 적용 및 부과업무 관련 고시

구분		2021년		2022년		
산재보험 사업종류		28개		28개		
산재 보험료율	평균요율	14.3/1,000		14.3/1,000		
	- 최고	185/1,000(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1,000(석탄광업 및 채석업)		
	- 최저	6/1,000(금융및보험업 등 3개)		6/1,000(금융및보험업 등 3개)		
일반건설 노무비율		총공사금액의 27%		총공사금액의 27%		
하도급 노무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0%		하도급공사금액의 30%		
벌목업 노무비율		1㎡당 10,704원		1㎡당 10,716원		
중소기업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① 월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	1등급	2,092,800원	69,760원	2,198,400원	73,280원	
	2등급	2,519,430원	83,981원	2,632,800원	87,760원	
	3등급	2,946,060원	98,202원	3,067,500원	102,250원	
	4등급	3,372,690원	112,423원	3,502,200원	116,740원	
	5등급	3,799,320원	126,644원	3,936,900원	131,230원	
	6등급	4,225,950원	140,865원	4,371,600원	145,720원	
	7등급	4,652,580원	155,086원	4,806,300원	160,210원	
	8등급	5,079,210원	169,307원	5,241,000원	174,700원	
	9등급	5,505,840원	183,528원	5,675,700원	189,190원	
	10등급	5,932,470원	197,749원	6,110,400원	203,680원	
	11등급	6,359,100원	211,970원	6,545,100원	218,170원	
	12등급	6,785,730원	226,191원	6,979,800원	232,660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1등급	1,820,000원		1,820,000원		
	2등급	2,080,000원		2,080,000원		
	3등급	2,340,000원		2,340,000원		
	4등급	2,600,000원		2,600,000원		
	5등급	2,860,000원		2,860,000원		
	6등급	3,120,000원		3,120,000원		
	7등급	3,380,000원		3,380,000원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평균보수		4,330,442원		4,438,528원		
고용보험료율 ^②	실업급여	근로자	16/1,000	실업급여	근로자	16/1,000
		예술인·노무제공자	14/1,000	예술인·노무제공자	14/1,000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150인미만	2.5/1,000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150인미만	2.5/1,000
		150인이상(우선)	4.5/1,000		150인이상(우선)	4.5/1,000
		150인이상	6.5/1,000		150인이상	6.5/1,000
		1천인이상	8.5/1,000		1천인이상	8.5/1,000
출퇴근재해산재보험료율		1.0/1,000		1.0/1,000		
임금채권부담금비율		0.6/1,000		0.6/1,000		
석면피해구제분담금비율		0.03/1,000		0.03/1,000		

① 무급가족종사자의 월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최대 5등급까지만 적용

② 2022.7.1.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근로자 18/1,000, 예술인·노무제공자 16/1,000로 변경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인쇄·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2022년도 기준보수 고시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원)

구분	C.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및창고업	I.숙박 및 음식점업	L.부동산업	M.전문, 과학및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S.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서울	2,460,280	2,363,438	2,504,063	1,931,567	2,089,330	2,536,717	2,269,463	2,043,783	2,184,311	1,933,002	2,338,922
부산	2,541,649	2,174,026	2,575,543	1,914,440	2,016,762	2,485,205	2,008,521	2,085,580	2,037,394	2,056,576	2,141,691
대구	2,335,451	2,138,219	1,986,030	1,914,440	2,130,126	2,170,326	1,953,441	1,914,440	2,036,326	1,962,594	2,023,513
인천	2,599,916	2,157,118	2,406,730	1,914,440	2,178,508	2,634,774	2,144,540	1,961,070	2,089,094	2,394,167	2,051,715
광주	2,729,312	2,223,501	2,557,198	1,919,616	2,033,863	2,187,677	2,631,102	1,976,030	2,067,596	1,994,333	2,186,003
대전	2,555,819	2,134,890	2,188,074	1,914,440	1,950,785	2,310,000	2,143,243	1,927,789	2,148,313	1,914,440	2,328,945
울산	2,837,507	2,230,601	2,472,470	1,914,440	2,471,093	2,613,934	2,102,648	1,972,343	1,982,101	1,914,440	2,015,205
경기	2,708,403	2,279,679	2,151,358	1,930,366	2,197,347	2,546,358	2,134,400	1,956,899	2,028,243	2,124,719	2,275,428
강원	2,506,521	1,990,920	2,148,534	1,970,253	2,010,851	2,341,682	2,316,563	1,914,440	2,088,169	1,999,241	2,126,339
충북	3,070,453	2,090,752	2,098,254	1,918,464	2,165,039	2,376,282	2,126,698	1,951,920	2,082,966	2,015,357	2,093,007
충남	2,953,227	2,136,635	2,370,021	1,914,440	2,277,111	2,702,526	2,190,175	2,059,219	2,041,244	1,945,176	2,064,926
전북	2,686,046	2,000,572	2,332,089	1,932,722	1,929,978	2,180,878	2,022,106	1,914,440	2,153,594	2,012,456	2,144,446
전남	2,688,053	2,024,673	2,112,375	1,958,016	2,286,342	2,402,077	1,977,434	2,213,850	2,121,019	1,998,138	2,134,993
경북	2,694,994	2,059,388	1,958,602	1,915,594	1,968,540	2,350,444	2,110,832	1,914,440	2,033,304	2,083,376	2,041,945
경남	2,811,059	2,143,534	2,205,046	1,914,440	2,000,699	2,483,633	2,445,103	1,914,440	2,029,310	1,938,723	2,224,626
제주	2,446,597	1,968,893	2,488,515	2,049,282	1,914,440	2,555,567	1,914,440	2,313,011	2,036,051	1,939,119	2,114,679
세종	2,293,945	1,941,311	2,018,312	1,914,440	1,914,440	2,070,197	2,140,390	2,072,418	1,967,675	1,914,440	1,990,298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원)

산 업 분 류	기준보수액
A. 농업, 임업 및 어업	2,393,540
B. 광업	2,820,685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313,423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551,561
F. 건설업	4,438,528
J. 정보통신업	2,667,279
K. 금융 및 보험업	2,495,863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08,433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942,764
U. 국제 및 외국기관	3,290,284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 주44시간제 사업의 경우 226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함

: 목차 | CONTENTS |

제1편 산재·고용보험 개요 / 1

제1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2
제2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3

제2편 산재·고용보험 가입 / 5

제1장 보험 가입 대상	6
제2장 보험 가입자	9
제3장 보험 가입 신고 등	12

제3편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 17

제1장 보험 가입 근로자	18
제2장 근로자 가입, 탈퇴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21
제3장 근로자 전근(전보), 휴직, 변경, 정정, 취소	31

제4편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 37

제1장 보험료 산정	38
제2장 부과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48
제3장 자진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63

제5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73

제1장 사회보험료 지원	74
제2장 부당지원금의 환수	84

제6편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 87

1. 고용보험 적용	88
2. 피보험자격 관리	90
3. 보험료 산정·부과	94
4. 실업급여	97
5. 출산전후급여 등	99

제7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 103

제1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04
제2장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117

제8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 137

제1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38
제2장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41
제3장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42
제4장 중·소기업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45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특례	150
제6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153

제9편 벌칙 등 / 159

1. 과태료	160
2. 가산금	161
3. 연체금	161
4. 보험급여액의 징수	162

제10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 165

제1장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추진 배경 및 기본원칙	166
제2장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167
제3장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179
제4장 지급액 산정 및 지원금 지급	183
제5장 이의신청	186
제6장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처리	187
제7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지원 기준	191
제8장 신청서 접수	194
제9장 참고사항	204

제11편 보험사무대행기관 / 207

제1장 보험사무대행제도	208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210
제3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 및 폐지	216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등	217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20
제6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223
제7장 보험사무대행기관 토털서비스 이용 매뉴얼	230

제12편 참고 사항 / 241

〈참고1〉 서식자료	242
〈참고2〉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 비교	243
〈참고3〉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248
〈참고4〉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251
〈참고5〉 2021년 성과평가 우수 보험사무대행기관 상위 30개소	256

※ 동 실무편람은 2022.1.7.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실무편람 발행일 이후 개정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편

산재 · 고용보험 개요

- 제1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 제2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제 1 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1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임
-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 등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 재해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함

산재보험 급여 종류

- | | | | | | |
|-------------|------------|--------|--------|----------|-------|
| ① 요양급여(치료비) | ② 휴업급여 | ③ 장해급여 | ④ 유족급여 | ⑤ 상병보상연금 | ⑥ 장의비 |
| ⑦ 간병급여 | ⑧ 직업재활급여 등 | | | | |

2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수당만 지급하는 실업보험과 달리 실업수당 뿐 아니라 구인 구직 정보망 운용,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에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임
- 피보험자(근로자의 경우 보수의 0.8%,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수액의 0.7%)와 사업주(보수총액의 1.05~1.65%)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을 재원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주요 사업

- ① 피보험자(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 지급
- ②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 ③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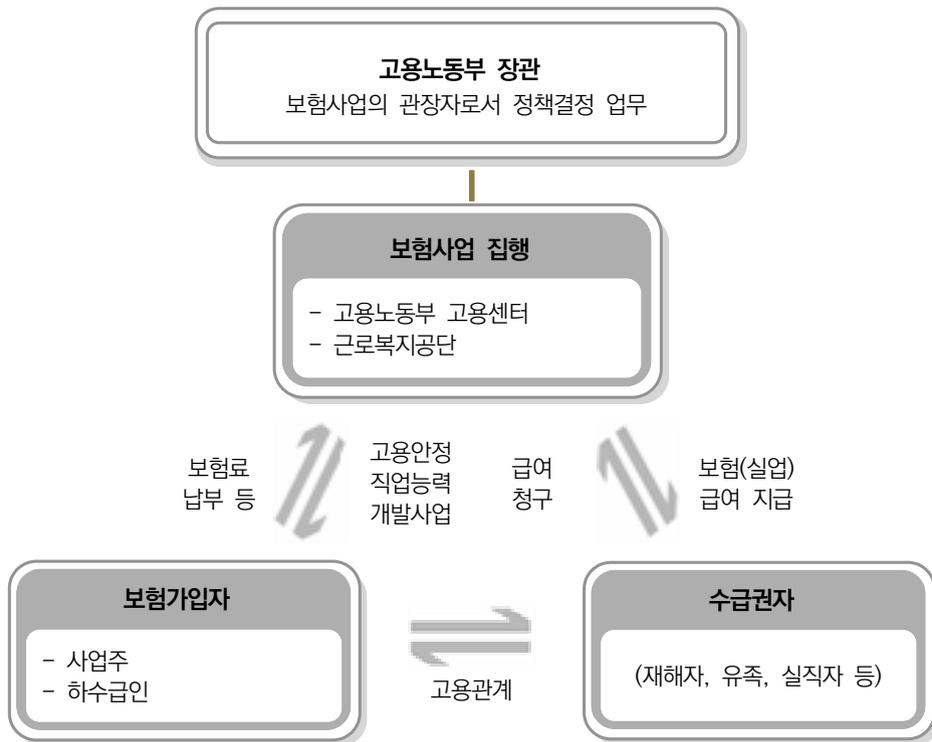
제2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제1편 산재·고용보험 개요



산재·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재보험 업무와 고용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등으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산재보험사업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의 적용·부과·징수, 고용정보 관리 및 요양에 따른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

※ 고용보험사업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2017.1.1.부터 수행), 고용보험 적용·징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 산재·고용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처분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제2편

산재 · 고용보험 가입

- 제1장 보험 가입 대상
- 제2장 보험 가입자
- 제3장 보험 가입 신고 등



제 1 장

보험가입 대상



1 가입범위 및 의무가입 대상

가. 가입범위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2018. 7. 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 되면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됨
- 따라서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임

나. 의무가입 대상

구분		2018.7.1.부터
산재 보험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건설공사	○ 모든 건설공사 (2018.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고용 보험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의 상시 4명 이하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건설공사	○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공사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①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②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200㎡)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사례 커피숍 운영 중 아르바이트를 사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및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당연히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사례 개인이 건축공사(인테리어 등)를 직영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

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공사(인테리어 등)를 직영하는 경우라도 연면적 및 총공사금액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대수선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2 | 일반사업 및 건설업의 가입기준

2 산재·고용보험 가입

가. 일반사업

- 산재보험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가입(“사업장” 단위)함을 원칙으로 하며,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 단위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가입 가능

나. 건설업

- 건설사업자에 의한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현장 전체를 하나의 보험가입 단위로 함
 - 건설사업자란 건설면허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및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현장 전체를 하나의 보험가입 단위로 하여야 함.
- 건설사업자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공사는 현장(사업장)별 가입

다. 별목업 등 사업 기한의 정함이 있는 사업

- 허가 단위별 사업의 기간을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장” 단위로 판단

고용·산재보험의 건설업 적용 대상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대통령령(고용·산재법 시행령)으로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제외
- 시행령 개정 전 적용
 - **건설업과 관련하여 고용·산재법 시행령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제외**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처리방법: 당연 일괄적용
 - (산재보험) **2018. 7. 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을 규정하고 있던 산재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면서 그 적용대상이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됨. 2018. 7. 1. 이후 착공하는 경우 공사금액·연면적 관계없이 모두 의무가입대상임**
 - (고용보험) 2019. 1. 1. 이후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사업이 건설업이면 그 때부터 보험의 일괄 적용대상이 됨.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건설사업자는 ①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②건축(대수선) 연면적 100㎡(200㎡)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의 착공일부터 당연 일괄적용대상이 됨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

- ①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이트 접속(<https://total.comwel.or.kr>)
 - 사업장 → 증명원신청/발급 → 보험가입증명원
- ② 콜센터 ☎ 1588-0075 통화
 - 단축번호 217(제증명발급 신청), 사업주 또는 대리인만 가능
- ③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제증명발급신청서(사업장용)” 팩스 송부 또는 방문
- ④ 지자체 및 공공기관(시·군·구 및 읍·면·동), 교통시설(터미널, 지하철, 기차역) 등에 소재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증명원 16종 발급 가능
(정부24 사이트 →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기안내 → 설치장소 확인)
- ⑤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서도 발급 가능

제2장

보험가입자

제2편 산재·고용보험 가입



1 보험가입자

가. 보험가입자의 범위

- 산재 및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함
 - 이때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가입자가 됨
 - ※ 보험가입자는 사업 영위 활동으로 각종 보험행정 신고 업무 등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복수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대리인의 범위

- * 대리인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 단위별로 1명 이상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보험사무를 대리할 수 있음
 - 법인인 경우 ⇨ 임직원, 변호사, 노무사
 - 개인인 경우 ⇨ 임직원, 변호사, 노무사,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나.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 건설업에 있어서 도급계약 형식으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최초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임
- 하수급인이 보험 가입자가 되는 경우
 -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그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임
 -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승인하는 때에는 그 하수급인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임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 요건 및 절차

- (1) 승인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건설업에 한함
 - 하수급인 사업주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사업자, 정보통신공사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 것(종목별 면허 보유 필수임)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제출
 - ※ 다만, 다음의 ①, ② 사유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신청은 승인 불가임
 - ① 하도급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 ②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 (2) 구비서류 : 도급계약서 사본 1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주의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명세서” 신청을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로 잘못 알고 착오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

〈하수급인명세서 및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 비교〉

구분	보험	용도	구비서류	제출기한
하수급인명세서	고용	피보험자신고용	·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 14일 이내 (원수급인 제출)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승인신청서	고용 산재	보험가입자 및 납부의무자 변경	·하도급계약서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하도급 착공 후 30일 이내 (원수급인 신청)

◉ 사례 개인 건축공사를 도급 준 경우 보험가입자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건축주 A가 2억5천만원에 건설사업자인 B에게 전부 도급을 준 경우 보험가입자는 건설사업자인 B가 보험가입자 및 보험료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판단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일반 근로자)의 보험가입자 판단

❖ 산재보험(판단기준 변경)

보험가입자 판단	기존	변경	시행일
건설현장 내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포함한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파견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주	해당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2018. 1. 1.

※ '임대, 도급' 등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와 건설기계조종사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에 해당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함

❖ 고용보험(기존과 동일)

- 건설용의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동 기계·장비 조작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 파견된 건설공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임대사업 소속의 근로자로 하여 적용
 - 다만, 건축·토목공사 등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적용
 - 건설면허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건설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사실상의 건설도급계약에 의해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한다면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흡수 적용함

대리인 제도 개선 (규정 조문 신설)

(1) 대리인 제도 개선 필요성

- 사업주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임직원의 퇴사 등으로 대리인 해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임 신고를 하지 않아,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문제
 - 대리인이 아닌 자에 대한 대리인 정보를 계속 보유·관리해야 하는 문제 등 개선필요

(2)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내용

- (효력 존속기간) 대리인 선임 효력 존속기간은 선임 신고서 접수일 또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존속기간 만료 전 효력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 (갱신신청) 대리인 선임 효력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만료일 까지 대리인 효력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사장은 대리인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해임) 대리인 선임 효력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제3장

보험 가입 신고 등



1 보험관계 성립신고

가. 보험관계의 성립일과 제출서류

	의무가입사업장		임의가입사업장	
성립일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실제 착공일)	
제출서류*	일반사업	건설공사 및 별목업	일반사업	건설공사 및 별목업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기타(근로자명부 등)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포함) 건축 또는 별목허가서	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기타(근로자명부 등)	보험가입신청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포함) 건축 또는 별목허가서
제출기한	보험관계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의 전날)		건설공사 및 별목업의 경우는 사업 종료일의 전날	
근로자 고용신고서	근로자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가능하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나. 보험관계 성립일 판단 기준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자 유형(일용, 상용, 시간제 등)에 상관없이 근로자 채용일 부터 적용

다. 동종 사업의 일괄적용

(1) 의의

-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2개 이상의 해당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당연 일괄적용의 요건

-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일 것*

※ 건설업 당연일괄 적용대상은 건설면허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및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행하는 자의 경우 공사현장 전체를 하나의 보험가입 단위로 함

(3) 임의 일괄적용의 요건

-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 ② 산재보험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에 한함
- ③ 건설업의 경우 관련법에 의한 당연 일괄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당연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위 ①호(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일괄적용 가입이 가능함

(4) 보험관계의 유지

- 전년도 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주는 일괄적용관계가 해지되지 않는 한 그 보험 연도 이후의 보험 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 관계가 유지됨

(5) 일괄적용의 해지

- 일괄적용을 승인 받은 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보험 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사업개시신고

-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현장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함

2 | 보험관계의 변경

가. 보험관계의 변경

-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나. 변경내용

-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포함)
-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별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다. 제출서류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1부
 - 다만, 우선지원대상 기업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변경은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 보험관계의 소멸

가. 보험관계의 소멸사유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 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 등과는 관계없음
-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소멸 조치
- 임의가입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보험계약해지 신청가능하나 신청 시기는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해당 보험연도 종료 후 가능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소멸
- 일괄적용의 해지 : 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보험관계의 소멸일 및 제출서류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

- 소멸일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 제출기한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2) 직권소멸조치한 경우

- 소멸일 : 공단이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3)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소멸일 :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해지신청서 1부
 -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해지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제3편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 제1장 보험 가입 근로자
- 제2장 근로자 가입, 탈퇴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제3장 근로자 전근(전보), 휴직, 변경, 정정, 취소



제 1 장 보험 가입 근로자



1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다만, 특례에 따라 비록 근로자는 아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함
- 한편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을 제외

2 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가.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고용보험도 동일)

나.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 실업급여 적용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함(3개월 경과 시 가입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산재보험도 동일]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	19. 교 수(E-1)	△(임의)
2. 공 무(A-2)	×	20. 회화지도(E-2)	△(임의)
3. 협 정(A-3)	×	21. 연 구(E-3)	△(임의)
4. 사증면제(B-1)	×	22. 기술지도(E-4)	△(임의)
5. 관광통과(B-2)	×	23. 전문직업(E-5)	△(임의)
6. 일시취재(C-1)	×	24. 예술흥행(E-6)	△(임의)
7. 단기상용(C-2)	삭제(2011.11.1.)	25. 특정활동(E-7)	△(임의)
		25의2.계절근로(E-8)	△(임의)
8. 단기종합(C-3)	×	25의3. 비전문취업(E-9)	△(임의)
9. 단기취업(C-4)	△(임의)	25의4. 선원취업(E-10)	△(임의)
10. 문화예술(D-1)	×	26. 방문동거(F-1)	×
11. 유 학(D-2)	×	27. 거 주(F-2)	○(당연)
12. 산업연수(D-3)	×		×
13. 일반연수(D-4)	×	28. 동 반(F-3)	×
14. 취 재(D-5)	×	28의2. 재외동포(F-4)	△(임의)
		28의3. 영 주(F-5)	○(당연)
15. 종 교(D-6)	×	28의4. 결혼이민(F-6)	○(당연)
		29. 기 타(G-1)	×
16. 주 재(D-7)	★(상호주의)	30. 관광취업(H-1)	×
17. 기업투자(D-8)	★(상호주의)	31. 방문취업(H-2)	△(임의)
18. 무역경영(D-9)	★(상호주의)		
18-2. 구직(D-10)	×		

- ① ○ : 의무적으로 가입
- ② × : 적용제외
- ③ △ : 근로자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E-9, H-2 의 경우 실업급여사업만 임의가입)
- ④ ★(상호주의)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용(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3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허가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 확대

□ 적용 시기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적용 사업

-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 시기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받기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제2장

근로자 가입, 탈퇴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제3편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1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1)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 (2) 다음의 경우에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사유	취득(고용)일
공통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근로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	적용을 받게 된 날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고용 보험	고용보험 가입신청한 외국인의 경우	가입신청한 날의 다음 날
	고용보험 가입신청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가입신청한 날의 다음 날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가 일괄적용을 받게되는 경우	일괄적용 관계가 성립한 날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중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 (나머지 사업장에서 취득)
산재 보험	자진신고 사업에서 부과지 사업으로 사업종류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해외파견 사업에서 국내 부과지 사업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특수형태근로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변동된 날
	근로자 정보 신고제외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변동된 날
	적용제외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3) 고용보험 소급 취득 신고

- 취득일 : 피보험자격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접수일)부터 소급하여 3년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날, 다만,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한 날이나 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 계산(고용보험법 제50조 제⑤항, '15.1.20. 시행)
- 증빙자료 제출 :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 (1) 최초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성립일부터 14일이고,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성립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적기에 산정·부과 가능
-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사업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와 산재보험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고
- (3) 재외국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가 아닌 한 취득신고서에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국내거소 신고한 경우)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국내거소신고 처리
- (4)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사업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 개별사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취득신고는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자진신고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은 신고 불가)
- (5) 자활근로자란 지역자활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뜻하며 취득신고 시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및 사유 란에 보장자격을 구분하여 신고
 - ※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생계급여수급자라하여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및 사유란에 자활근로자로 체크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부과고지 및 자진신고 신고 사례

● 사례 고용보험은 본사로 신고, 산재는 장소적으로 분리 적용 사업장에 고용신고 (고용보험이 부과고지 대상인 경우)

순번	근로자명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갑	관리번호 : A (제조업 : 부과고지)	관리번호 : B (제조업 : 부과고지)
2	을		
3	병		
4	정		
5	무		
6	기		
7	경		
8	신		

☞ 관리번호 A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대상 : 갑, 을, 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 :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 관리번호 B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대상 : 정, 무, 기

☞ 관리번호 C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대상 : 해당 없음(자진신고)

● 사례 고용보험은 본사로 신고, 산재는 장소적으로 분리 적용 사업장에 고용신고(고용보험이 자진신고 대상인 경우)

순번	근로자명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갑	관리번호 : A (건설업 : 자진신고)	관리번호 : B (제조업 : 부과고지)
2	을		
3	병		
4	정		
5	무		
6	기		
7	경		
8	신		

☞ 관리번호 A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대상 : 해당 없음(자진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 :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 관리번호 B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신고 대상 : 정, 무, 기

☞ 관리번호 C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신고 대상 : 경, 신

다. 신고내용 및 신고서 작성 방법

(1) 근로자별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구분

- 고용보험만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만 체크
 ※ 예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
-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에만 체크
 ※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 시 1년 동안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
- 고용·산재보험 모두 적용되는 근로자는 둘 다 체크

(2)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은 경우는 한 장에 작성하되, 다른 경우 각각 작성
-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란에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장란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3) 월 평균보수

- 취득일로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4) 근로자 자격취득일

- 근로자 자격취득일을 기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과 산재보험 취득일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기재

(5) 직종부호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136개) 직종에 따라 해당 코드를 기재하되, 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기재

(6)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이 월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의한 값을 기재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

$$(\text{월소정근로시간} \times 12) / 365 \times 7$$

(7) 계약종료연월(계약직만 작성)

-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계약직 근로자여부에 대해 표시를 하고, 계약 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기재.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기재

(8)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및 사유(해당자만 기재)

- 고용·산재보험료 중 아래와 같이 일부 보험료만 부과되는 근로자는 보험료부과구분 란에 해당하는 부호와 사유 코드를 각각 기재

부 호	사유 코드	사유(대상근로자)	부과범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 급여	고안 · 직능
51	09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	x	x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2	03	현장실습생	○	x	x	x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4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x	○	○
55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x	x	○	○
	07	해외파견자(「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x	x	○	x
58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x	x	○
60	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	○	x	○

※ 해당보험에 취득되어 있을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는 범위를 말함(○표시 되어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2 |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1)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가 이직하여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실연월일, 상실사유, 보수 총액 등을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 (2) 다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번	사유	자격상실(고용종료)일
공통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 경우	적용 제외된 날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
고용 보험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존 근로관계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신청한 경우	탈퇴신청한 날의 다음날
	고용보험에 가입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탈퇴신청한 경우	탈퇴신청한 날의 다음날
	이중고용으로 먼저 취득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산재 보험	해외파견 사업으로 파견되는 경우	국내 사업에서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사업종류 변경으로 부과지 사업에서 자진신고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 (1)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소멸일로부터 14일이고,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 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보수 총액신고서」를 함께 제출
- (2) 상실사유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와 구분코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3) 상실사유 분류 중 ‘자진퇴사에 의한 이직’,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및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은 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기타’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으로 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것임
- (4)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어 보수총액을 기간별로 신고해야 하거나,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보수총액을 보험사업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구분 신고서」를 함께 제출

● 사례 보험관계 소멸사업장의 각 신고서 제출기한 비교

2022.6.13. 폐업된 사업장의 경우

- 보험관계소멸일 : 2022.6.14.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제출기한 : 2022.6.27.
-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기한 : 2022.7.15.
-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 : 2022.6.27. 이므로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기한 마지막 날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미 소멸한 사업장의 2022. 6월분 월별보험료가 일할계산되지 않고 전액 부과된 후 2022. 7월분 보험료 산정시 재산정(감액)됨. 『보수총액신고서』가 나중에 제출되면 다시 보험료가 추가징수 또는 감액됨

다. 신고서 작성 방법

(1)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은 경우는 한 장에 작성하되, 다른 경우 각각 작성
-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란에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 사업장란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장명칭,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2) 전화번호(이동전화)

- 근로자의 이동전화번호 기재
- ※ 모바일통지는 발송시점에 통신사에서 보유하는 근로자의 이동전화번호를 실시간으로 매핑하여 발송되므로, 신고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발송되지는 않음

3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3) 상실연월일

- 자격상실일을 기재

※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4) 상실사유 및 구분코드

-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사업 지원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구분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 보수총액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기재

※ 월별보험료는 자격상실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되며 자격상실 시 신고한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정산

3 | 이직확인서

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개편

● 2020년 8월 28일 개편(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4항에 근거)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

-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 (변경)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
 - ※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날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

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

-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는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
고용보험홈페이지(<https://www.ei.go.kr>)
- 기존 방법으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4 근로내용확인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2)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신고함이 없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다만, 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 (1) 월별로 각각 신고(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
예) 2022년 5, 6월 근무 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5월, 6월분에 대하여 각각 신고(파일작성 시에도 동일, 해당 월이 다를 경우 다른 파일로 작성)
- (2)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동시에 작성(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인 건설업 및 별목업은 고용보험만 작성)
- (3) 외국인 일용근로자
 - ① 당연적용 대상인 외국인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국내근로자와 같이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
 - ②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함께 제출
-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4) 건설업의 경우에 한하여 고용관리책임자 기재,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 신고하여야 함

(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일용근로자란?

Answer

-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따라서, 임금의 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 단위 혹은 시간단위로 이루어진다 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 ☞ 일일단위 근로계약형태로 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간주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nswer

-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 되는 자를 말하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자임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시 근로자에 해당됨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란은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며, 국세청신고를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모두 필수 기재
따라서 국세청 통보를 원치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됨



일당 10만원 미만 근로자로 소득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표시를 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업장은 국세청에 모두 통보(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포함)됨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는 있고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자 동거친족 등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 대상이 아닌 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청 전송 대상은 고용산재보험 신고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전송되므로 고용산재보험 신고 대상자와 적용제외자를 함께 신고하기 원하는 경우 국세청에 별도 신고해야 함

제3장

근로자 전근(전보), 휴직, 변경, 정정, 취소

제3편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1 | 근로자 전근(전보)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한 경우 전근(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용어정리) 산재보험에서는 “전보”로, 고용보험에서는 “전근”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근(전보)일, 전근(전보) 사업장 명칭 및 관리번호
※ 전근(전보)신고서 상의 전근(전보)일은 발령일로 기재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 (1) 전근(전보)이란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함
- 일괄적용사업장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보험만 전근 신고
※ (주의)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전보신고 대상 아님
- (2)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 지회의 경우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상호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근(전보)으로 볼 수 없음
- (3) 전근(전보) 전 사업장과 전근(전보) 후 사업장이 동일한 지사 관할인 경우에도 전근(전보) 신고를 해야 함
- (4) 전근(전보)신고서는 전근(전보) 후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전근(전보)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서 처리함

[사업장의 흡수·합병 및 분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처리]

사업주 내에서 사업장이 통합·분리되거나, 사업장 그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흡수·합병·승계·분리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만 변동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기간의 단절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근』에 준하여 처리

2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나. 신고 내용 및 사유

(1) 신고 내용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업·휴직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휴직사유 등

(2) 휴직 등의 신고 사유

- ①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
- ②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
- ③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 ④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⑤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산재보험만 해당)
 - ※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휴직 등 신고대상이 아님
 - ※ (주의) 노조전임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만 부과되므로 신분변동(일반근로자 ↔ 노조전임자)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근로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3) 휴업·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과(노조전임자 제외)

구분	월별보험료 부과	정산보험료 부과	보수총액신고
고용보험	×	○	○
산재보험	×	×	×

3 | 근로자 내용(정보) 변경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나. 신고 내용

- (1)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2) 정보 변경 내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
 - (고용보험만 해당)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다. 신고 시 유의 사항

- (1)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전근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전보신고서」, 월평균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로 별도 신고
- (2)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부, 법원판결문, 변경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를 공단에 제출
- (3) 자활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 중 취득신고 후 보장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 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근로종사자 보장자격	보험료 부과범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 급여	고안 · 직능
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x	○	○
생계급여 수급자	○	x	x	○

3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4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 신청

가.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 신청 항목

-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일, 상실일, 전근(전보)일, 휴직시작일, 휴직사유, 보험료부과 구분
- (고용보험만 해당) 주소정근로시간, 직종 등 기타 취득신고 내용, 상실사유
 - ※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변경은 고용보험「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로 신고
 - ※ 근로자 가입정보의 정정은 4대 사회보험 공통으로 처리할 수 없음.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내역 정정은 각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나.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 신청 방법

- (1) 서면신고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근로자용)」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2)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대상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신고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공통사항) 취득일, 상실일, 전근일(전보일), 휴직시작일, 휴직사유, 보험료 부과구분
 - (고용보험) 주소정근로시간, 직종 등 기타취득신고 내용, 상실사유

다. 신고 시 유의 사항

- (1) 주소정근로시간, 직종 등 기타 취득신고 내용, 상실사유 정정은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2)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노조전임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는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신분변동(일반근로자 ↔ 노조전임자)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근로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 ※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는 보험료부과구분 정정신청 해당 없음(근로시간면제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모두 부과됨)
 - 변경일에는 일반근로자 ↔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신분변동일 기재
 - ※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신분변동 시에만 변경일을 기재. 그 외 정보(내역) 정정신청은 고용일부터 정정처리 되므로 별도로 변경일을 기재하지 않음

노조전임자 구분	보험료 부과범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 급여	고안 · 직능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x	x	0	x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	0	0	0	0

5 | 근로자 가입정보 취소 신청

가. 근로자 가입정보 취소 신청 항목

(1) 근로자 취득, 상실, 전근(전보), 휴직 등 신고

※ 근로자 가입정보의 취소는 4대 사회보험 공통으로 처리할 수 없음.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내역의 취소는 각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나. 근로자 가입정보 취소 신청 방법

- (1)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용 취소 신청서(근로자용)」서식에 취소하여야 하는 항목 체크
- (2) 취소신청 시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 내역, 출근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제4편

산재 · 고용보험 보험료

- 제1장 보험료 산정
- 제2장 부과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 제3장 자진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제1장 보험료 산정



1 보험료 산정기준

가. 보험료 산정 및 부담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 함(건설업과 별목업 제외)

-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 고용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실업급여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 ‘건설업’과 ‘별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개산보험료)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납부

- 산재보험료=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 고용보험료=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실업급여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 전년도 확정보험료(=확정보수총액×보험료율)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함께 자진 신고·납부(또는 총당·반환)

- 보험료의 부담 원칙

- 산재보험료 : 사업주 전액부담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부담
 - ※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만 부담(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보험료의 1/2)

나. 보수의 정의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¹⁾의 개념과 동일, “근로소득금액”²⁾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1)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근로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함

- 근로소득의 범위

-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 보험료율의 결정 및 특례

가.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로 구성
 -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매년 고시함
 -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를 결정 시 보수총액에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출퇴근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은 미포함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 2022년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1.0/1,000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에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정보공개 - 자료실 - 실무자료 - 산재보험료율에 게재(예: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상 용어가 아닌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사용된 용어를 인용
- 보험료율 적용방법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
 -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 ②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나. 고용보험료율

(1)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함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구 분		'99. 1. 1.이후		'03. 1. 1.0후		'06. 1. 1.0후		'11. 4. 1.0후		'13. 7. 1.0후		'19.10.1.0후		'22. 7. 1.0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5%	0.5%	0.45%	0.45%	0.45%	0.45%	0.55%	0.55%	0.65%	0.65%	0.8%	0.8%	0.9%	0.9%
고용안정			0.3%		0.15%		×		×		×		×		×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150명 미만 기업		0.1%		0.1%		0.25%		0.25%		0.25%		0.25%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3%		0.3%		0.45%		0.45%		0.45%		0.45%		0.45%
	150명 이상~ 1000미만 기업		0.5%		0.5%		0.65%		0.65%		0.65%		0.65%		0.65%
	1000명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7%		0.7%		0.85%		0.85%		0.85%		0.85%		0.85%

※ '06. 1. 1.부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 노무제공자의 경우 2021.7.1.부터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실업급여율 0.7%(2022.7.1.부터는 0.8%) 적용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의 결정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
 - 즉, i)우선지원대상 기업여부 ii)총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됨
 -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산 업 분 류*	분류기호	상시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분대]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분대]	N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M	200명 이하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00명 이하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 업종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A),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 부동산업(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산업분류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N76(부동산 이외 임대업)는 그 밖의 업종으로 분류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 위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개정 2013.1.25.)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다. 산재보험료를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1) 의의

-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2) 적용요건·대상

-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최대 20%까지 인상 또는 인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음
 - ①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 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 ※ 총공사금액 = [2년 전 사업개시 신고 공사금액(하수급인사업주 승인 받은 하도급공사 포함)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아 하도급 준 공사금액]으로 산정
 - ② 건설업 및 별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 ※ 사업주가 신고한 산재보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기준으로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건설업 중 일괄적용사업				100억원 이상 (‘95년)	60억원 이상 (‘08년)	40억원 이상 (‘11년)	20억원 이상 (‘16년~)	60억원 이상 (‘19년~)
건설업 및 별목업 제외사업	500명 이상 (‘64년)	200명 이상 (‘67년)	100명 이상 (‘76년)	50명 이상 (‘87년)	30명 이상 (‘96년)	20명 이상 (‘11년)	10명 이상 (‘16년~)	30명 이상 (‘19년~)

(3) 산정방법

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①보험수지율에 의한 ②인상 및 인하비율)

- ① 보험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 3년간의 보험급여 총액: 기준보험연도 3년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된 산재보험급여의 합산액
 - ※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천재지변·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외(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합산)
 - 3년간의 보험료 총액: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현재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기준보험연도 개산보험료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보험료액)
 - 기준보험연도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정산보험료액)의 합계액
 - 기준보험연도 3년 전 보험 연도의 확정보험료액 또는 정산보험료액 × 6 ÷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 인상 및 인하 비율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 백분율(보험수지율)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인하 비율
5%까지의 것	20.0%를 인하한다
5%를 넘어 10%까지의 것	18.4%를 인하한다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16.1%를 인하한다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13.8%를 인하한다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11.5%를 인하한다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9.2%를 인하한다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6.9%를 인하한다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4.6%를 인하한다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2.3%를 인하한다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0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2.3%를 인상한다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4.6%를 인상한다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6.9%를 인상한다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9.2%를 인상한다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11.5%를 인상한다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3.8%를 인상한다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16.1%를 인상한다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18.4%를 인상한다
160%를 넘는 것	20.0%를 인상한다

라. 산재예방요율(2015년 보험료율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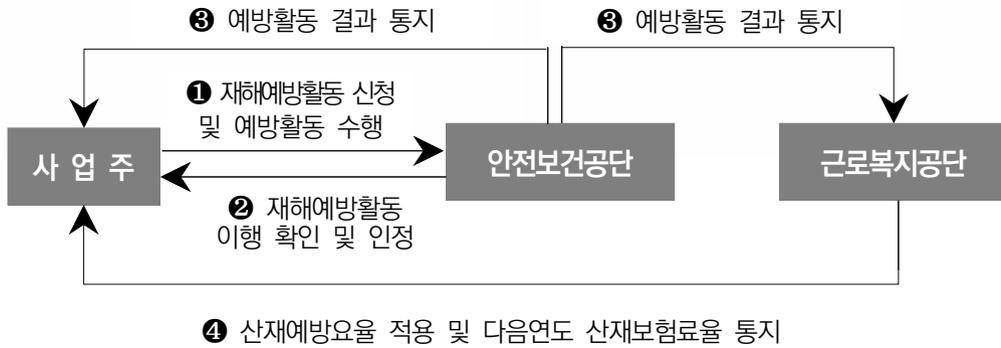
(1) 목적

-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체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함
- ※ 2014. 1. 1. 이후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 신청 및 수행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인정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2)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인 사업
- ※ 산재보험 가입기간 및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3) 재해예방활동 인정·보험료를 적용 프로세스



- ▶ 재해예방활동 신청 및 예방활동 수행(①) : 사업주
- ▶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 결과통지(②,③) : 안전보건공단
- ▶ 예방요율 반영 및 산재보험료율 적용·통지(④) : 근로복지공단

(4) 재해예방활동지표

구분	내용	인정 유효기간	보험료율 인하율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인정일로부터 3년	20%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인정일로부터 1년	10%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실시	인정일로부터 2021.6.30까지	10%
공휴일의 유급휴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 제외)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중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전환	인정일로부터 2021.12.31까지	10%

(5)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재해예방활동 인정일부부터 소급하여 취소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 재해예방활동 인정취소일 이후부터 취소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
 - ※ 다만,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재해는 제외
 - 그 밖의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 사업종류 변경적용일이 재해예방활동 인정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일부터 취소대상
 - 사업종류 변경적용일이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인 경우에는 사업종류변경적용일 이전까지 적용, 변경적용일 이후부터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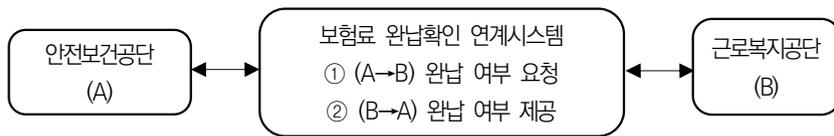
사례 산재예방요율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적용

1. 2017. 4. 1. 사업주 교육을 인정받은 경우 인하율= 10%①×[275일②/365일]=7.5%
 - ① 예방활동지표(교육) 최대 인하율 ② 2016년 예방활동 인정기간(4.1.~12.31. 동안의 일수)
2. 2018년도 일반요율 30/1,000인 경우로서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7.5%가 인하되어 최종 산재보험료율은 27.75/1,000
3. 2018년도 일반요율 30/1,000인 경우로서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따라 7%가 인하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4.5%(예방요율 7.5%+개별요율 7%)가 인하되어 최종 산재보험료율은 25.65/1,000

※ 산재예방요율과 관련하여 재해예방활동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1644-4544)으로, 산재보험료를 적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

사업장의 클린사업 지원금 신청 시, 완납증명원 첨부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 안전보건공단과의 보험료 완납확인 연계시스템으로 첨부 서류 생략(2018. 현재 시행 중)
 - 클린사업 지원금 신청 시,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보험료 완납 여부 확인



마. 임금채권부담금

(1)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의의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2) 임금채권부담금 적용범위

- 산재보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및 별정우체국은 적용제외

(3) 임금채권부담금 징수방법 및 비율

(가) 부담금 징수방법

-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 × 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함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을 보수총액으로 함
- 부담금 부담(납부) 주체는 사업주이며 공단은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을 통합하여 징수

(나) 부담금 비율

- 부담금비율은 업종에 관계없이 보수총액의 2/1,000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05년 ~ '09년	'10. 1. 1부터	'16. 1. 1부터
0.4 / 1,000	0.8 / 1,000	0.6 / 1,000

(4)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가) 경감대상

-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리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연금제도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업(장)은 그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경감

(나) 경감비율

- 퇴직연금 설정 등 사업장 : 부담금 비율의 50% ×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

(5) 임금채권 보장범위 및 신청방법

- 해당금으로 지급 보장되는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 수당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퇴직보험 등에 가입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부담금경감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나 공단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용산재보험도탈 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신청가능(첨부서류로는 퇴직보험 등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장 현황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바.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1) 목적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석면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환경부)하였고, 이에 2011.1.1.부터 건설업(건설업본사와 건설일괄유기사업장)과 건설업 이외의 사업장 중 전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함

(2) 부과대상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부과함
 1.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주(건설본사는 상시인원과 관계없이 부과)
 2. 건설업사업주(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
- 위 각 호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2021년도 분담금률 : 10만분의 3)

(3) 상시근로자 산정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보험 연도의 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해당 보험 연도의 전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로 함. 다만, 해당 보험 연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함
- 또한 사업주가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의 성립일로 보아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함

제2장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1 월별보험료 부과

가. 개념

-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징수를 위해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개인별 보험료 산출 후 이를 합산하여 사업장 단위로 매월 부과

$$\text{월별보험료} = (\text{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times \text{보험료율})\text{의 합계}$$

나. 업무 절차

수행주체	일정	처리업무
사업장	매월 15일까지	고용신고, 고용종료신고, 근로자정보변경, 월평균보수변경
↓		
우리공단 지사	매월 15일까지	신고접수 마감 및 처리
↓		
우리공단 본부	매월 15일~18일	월별보험료 산정 및 부과자료 구축
↓		
건강보험공단	매월 22일	고지서 출력 및 발송
↓		
사업장	매 익월 10일	보험료 납부

다. 근로자 유형별 보험료 부과 방식

(1) 일반(상용) 근로자

- 월별보험료는 고용일(자격취득일)부터 고용종료일(자격상실일) 전일까지 부과하며,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보험료를 더하여 사업장 단위로 부과

- 전보근로자의 경우 전보일을 기준으로 전보 이전 사업장과 전보 이후 사업장을 나누어 부과
- 노조전임자, 자활근로종사자 등 보험료의 일부만 부과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신고 시 또는 근로자정보 정정신고를 통해 부과부호를 변경하고, 부과부호에 따라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에는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보수를 다음년도 보수총액신고 시 신고하여 정산보험료로 납부
-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달의 근무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되는 경우
 - 근로자의 휴직 등 근무 변동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text{월별보험료 일할계산} = \text{월평균보수} \times (\text{근무 일수/월의 총일수}) \times \text{보험료율}$$

월별보험료 일할계산 시 근무 일수는 그달의 실제 근무 일수만을 산정하나요?

Answer 아닙니다. 사유발생일(고용일, 고용종료일, 전보일, 휴직시작일, 휴직종료일 등)부터 그달의 말일 또는 그달의 초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월력상의 일수**를 말합니다. 실제 근무일(출근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그 달에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

$$\text{일용근로자 월별보험료} = \text{그 달에 지급받은 보수총액}^1) \times \text{보험료율}$$

- 1) 그 달에 지급받은 보수총액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작성된 그달의 보수총액
- 사업주는 매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고,
 - 공단은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보수로 그달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단, 연도를 넘겨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연도 「보수총액 신고서」 또는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산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함

● 사례 **일용근로자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 일용근로자 김OO의 2022년 4월 일용근로자 근로자가입정보 내역(일당 100,000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1				1				1						1					1									

- ▶ 총 지급받은 보수총액: 600,000원
-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일: 5월 10일
- ▶ 사업장의 보험료율이 20/1,000인 경우
2022. 4월 김OO의 월별보험료 600,000원 × 20/1,000 = 12,000원
- ▶ 보험료 부과 및 납부: 5월 고지서에 김OO의 보험료 12,000원 포함, 6월 10일까지 납부

(3) 산재보험 근로자가입정보 신고의무 제외자(그 밖의 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근로자(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별도의 근로자가입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은 근로자는 전년도에 지급한 해당 근로자들의 보수총액 합계를 전년도 사업장 보험 가입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

$$\text{그 밖의 근로자 월별보험료} = \frac{\text{전년도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합계}}{\text{사업장 보험가입월수}} \times \text{보험료율}$$

- 따라서 그 밖의 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 입사 연도에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다음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보수총액으로 정산
 - 입사 다음 연도부터는 위 산식에 의해 월별보험료 부과
- ※ 그 밖의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없는 경우 해당연도에는 기 산정된 금액으로 부과되고 다음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보수총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향후 그밖의 근로자 채용 계획이 전혀 없어 월별보험료 부과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 신고서에 기재한 보수 변동 월부터 그 밖의 근로자 부과 조정 가능(그 밖의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는 999999-99999999로 입력)

부과고지사업장 월별보험료는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나요?

Answer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입·퇴사, 전보, 휴직 등 근로자가입정보 또는 월평균보수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매월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전월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변경신고

가.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적용

【고용일에 따른 월평균보수 산정·적용 및 신고방법】

고용일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전년도 12.12.이전	$\frac{\text{전년도 보수총액}}{\text{전년도 근무개월수}}$	2022년 4월 ~ 2023년 3월
전년도 1.1.~12.12.이고 고용월 근무 일수가 20일 미만	$\frac{\text{전년도 보수총액}}{\text{전년도 근무일수}} \times \frac{\text{전년도 근무일수} - \text{고용월 근무일수}}{\text{고용월을 제외한 근무개월수}}$	
전년도 12.13.이후	$\frac{\text{근로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12\text{개월}}$ 단,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의 보수총액 및 기간	고용일이 속한달 ~ 2023년 3월

● 사례 월평균보수의 산정

- 연간보수총액 10,000,000원, 전년도 근무개월수 12인 경우
 $10,000,000 / 12 = 833,333.333$ 월평균보수는 833,333원(원 단위 미만 절사)

나. 월평균보수의 변경

(1)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 공단에서 월평균보수를 착오 산정하거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를 착오 신고한 경우 등 월평균보수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2) 월평균보수 적용일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제출 시 기재한 보수 변경월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로 적용되어 월별보험료 산정
 - 단, 보수 변경 월이 연도 소급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 1일로 적용



근로자의 소득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Answer

- ◎ 보수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월평균보수변경 신고서에 기재한 보수 변경 월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 다만,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분은 다음 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 또는 퇴직시점에 퇴직정산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신청을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로 한다는데 맞나요?

Answer

- ◎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작성란에 체크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외에도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임금대장 등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88-0075) 또는 홈페이지(www.comwel.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시 보수 변경월을 접수일 기준 미래로 변경 가능한가요?

Answer

- ◎ 변경신고일이 속한 달 + 1개월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 예시) 월평균보수변경 신고일 2022.8.15.인 경우
 보수변경월 2022.9월 → 처리 가능
 보수변경월 2022.10월 → 처리 불가능(9월 이후 재접수 필요)

3 |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가. 개념

- 월별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별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확정된 보험료를 산정하는 절차
 - 월별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월평균보수 또는 해당연도 고용신고를 기초로 산출된 월평균보수로 우선 산정·부과
 - * 근로자에게 월별 실제 지급한 확정 보수총액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 중인 근로자의 경우 보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월평균보수로 부과 후 실보수로 정산하며, 당해연도 퇴직근로자의 경우 고용종료 신고시 신고한 연간 보수총액으로 정산
- 정산결과 납부한 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하고, 추가 부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고지함

나. 정산방법

- 보수총액신고 : 매년 3월 15일까지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을 신고
- 퇴직정산 :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을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시 신고하여 정산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대상)
- 부과지사업장 정산 : 매년 7월과 9월에 국세청 자료와 연계하여 공단 신고 보수총액 차액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 ※ 자진신고 사업장 : 매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신고
 - ※ 소멸사업장 : 부과지(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수총액신고), 자진신고(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료 신고)

다. 정산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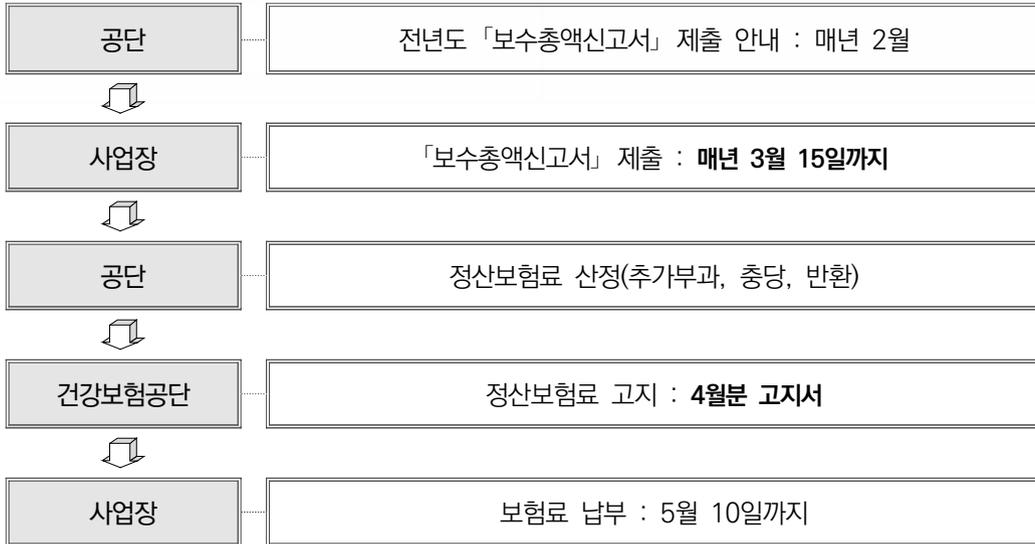
- 보수총액신고 : 매년 3월 15일까지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 연간보수총액을 신고
- 퇴직정산 :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
- 부과지사업장 정산 : (전전년도 수정·경정분) 8월 월별보험료에 반영
(전년도 정기분) 10월 월별보험료에 반영
 - ※ 소멸사업장 : (정산일)1~15일 : 정산을 실시한 달/(정산일)16~말일 : 정산한 달의 다음 달

라. 정산대상

- 전년도 또는 소멸일 전날까지 사업주가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개인별 정산) 근로자가입정보가 있는 상용근로자
 - (사업장 정산)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또는 산재 보험 고용정보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등), 단기예술인(보수총액신고 대상이나 보험료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의 연간 월보수합계액과 신고한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추가 처리하거나 정정하여 일치시키는 형태로 정산하여야 함.)
- ※ 단기 예술인은 월보험료 상한액 적용대상으로 개인별·월별 내역 없이는 보험료 정산 불가
- ※ 사업장 정산은 대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의 합계를 신고하고 보험료 부과·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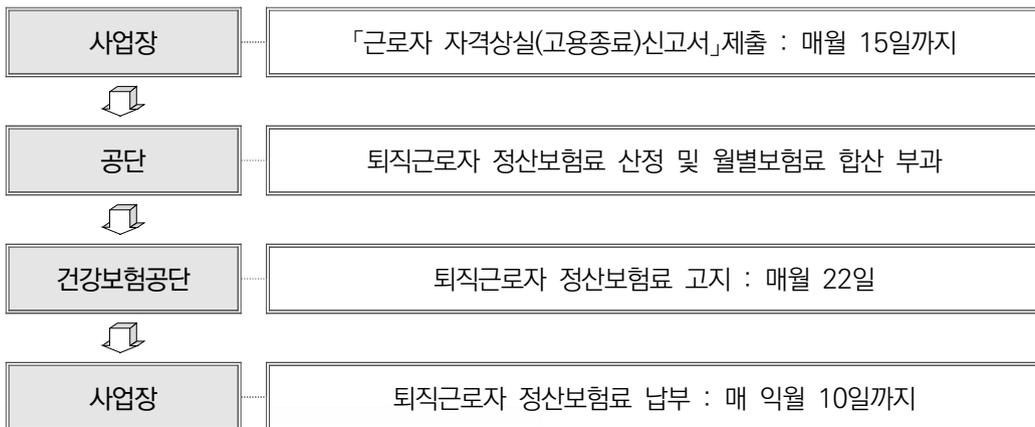
마. 업무절차

● 보수총액신고



※ 소멸사업장은 14일 이내에 정산

● 퇴직정산



●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 부과고지사업장 정산은 근로소득자료와 연계하여 차액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

바. 퇴직정산

(1) 퇴직정산의 기능

- 부과고지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절차
 -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보험료의 원천공제 편의 제고 및 정산보험료 일시납 부담 감소
- ※ 「보험료징수법」제16조의 9 제1항 개정(2019.1.15.공포, 2020.1.16.시행)으로 2020.1.16.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퇴직정산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인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및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
 -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신고 가능
 - 정보통신망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국민연금·건강보험 EDI서비스

-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어 보수총액을 기간별로 신고해야 하거나,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보수총액을 보험 사업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구분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

(3)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

- 「근로자 고용종료(자격상실) 신고」 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추가로 보수를 지급하게 되었거나 착오 신고한 경우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

(4) 보험료 퇴직정산 Q&A

Q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을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Answer 예.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의 산정기간이 다르거나 각각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Q 일용근로자는 퇴직정산 대상인가요?

Answer 아니요. 퇴직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부과고지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고용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상용근로자이며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는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에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합니다.

Q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한 외국인이나 별정직·임기제 공무원도 퇴직정산 대상인가요?

Answer 예.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한 임의가입 외국인과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종료(자격상실)신고」 및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사. 보수총액신고

(1) 보수총액신고의 기능

- 월별보험료의 정산
 - 월평균보수로 우선 부과된 보험료를 확정된 보수로 보험료를 정산(추가부과, 충당, 반환)

● 월평균보수의 산정

- 전년도 12.12. 이전에 고용(취득)된 근로자의 해당연도 월평균보수 산정

(2) 보수총액신고서 신고 방법

●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사업장

-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이용한 신고만 가능
 - 정보통신망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이용한 신고 : 전산처리 테이프, 디스켓 또는 CD(Compact Disc)를 이용하여 신고(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규정된 포맷 사용)

●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사업장

-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이용한 신고(10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
- 보수총액신고서 서면신고 가능(방문, 팩스, 우편 등)

(3) 보수총액신고서의 수정 신고

● 신고사유

-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보수총액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신고하여야하는 보수총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또는 그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을 누락하거나 착오 신고한 경우

● 신고기한

-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공단이 사업주에게 조사사실을 통지하기 전까지

(4) 보수총액신고 Q&A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했는데 보수총액신고서를 또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네. 그렇습니다. 우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적용단위 및 근로자 적용대상 등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공단에 별도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도 보수총액신고 대상인가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법인대표이사 포함)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대표자의 배우자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취득)신고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2020.1.16.부터 시행된 퇴직정산제도에 의하여 2020.1.16.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직한 근로자도 보수총액신고 대상인가요?

Answer 휴직한 근로자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휴업·휴직 및 보호휴가(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합니다 (단,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

2021년도 사업장에 근로자가 한명도 없었는데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네. 그렇습니다. 보험연도 중에 근로자가 한명도 없었다 하더라도 보수총액 신고서식의 「④ (2021)년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보근로자는 어떻게 보수총액신고하나요?

Answer 전보근로자의 경우 전보일 기준으로 전보이전 사업장과 전보이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를 각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 전보이전 사업장은 종료(상실)일이 전보일, 전보이후 사업장은 고용(취득)일이 전보일에 해당



예술인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예술인(단기 예술인 포함)은 보수총액신고 대상이며, 소득합산 신청 예술인만 보수총액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7.1. 기준으로 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요율이 변경(1.6% → 1.4%)되었으므로 기간을 구분하여 보수총액을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산정 하기 때문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정산대상이 아님) 단,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월보수액 통보 내역에 대한 확인으로서의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나요? 그럼 원천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Answer 네. 근로자도 고용보험료(실업급여)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매월 부과하는 월별보험료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보수의 0.8%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정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nswer 네.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산보험료가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단,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원하실 경우 경우 「 ①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에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산보험료를 납부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네.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토탈서비스에서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자주찾는서비스와 팝업존 또는 정보조회→보험료정보조회→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은 총당 등으로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중 보수의 인상 및 인하 없이 보수총액이 그 전년도와 동일하고, 보험료율도 변동되지 않았는데 보험료 정산 결과 차액분이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월보험료는 근로자 월별 보험료에서 10원 미만 원 단위 보험료를 버리고, 정산보험료는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에서 10원 미만 원 단위 보험료를 버리고 산출하므로,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부과지사사업장 정산(국세청 근로소득자료 활용)

(1) 부과지사사업장 정산의 기능

- 부과지사사업장 사업주의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와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신고내역을 근로자별로 비교하여 신고내역이 다른 근로자의 보험료를 추가 정산하는 절차
 - 근로소득 중의 비과세 등 차액 발생이 타당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단순착오신고 등에 의한 차액 발생은 추가부과

(2) 부과지사사업장 정산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
 - 신청 : 부과지사사업장 정산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이의신청서에 해당 사유 및 금액 기재 후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관할 소속기관 우편 제출 또는 토탈서비스 전자 신청
 - 유의사항: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서류 필수(토탈서비스에서 스캔파일 업로드 가능)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및 이의신청서 엑스폼수

2023년 귀속

관리번호	사업장명	고용요율	/1,000	고용요율	/1,000							
관할지사	작성일자 (연월)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기한								
구분	취득일 (산재) (고용)	상실일 (산재) (고용)	④공단 신고 보수총액		⑤국세청 신고 근로소득	⑥국세청신고 대비 보수차액(⑤-④)				⑦보수총액 이의신청(제외)사유 및 금액(⑤+⑥)		
			상계보통	고용보통		상계	고용	상계	고용	⑧사유 코드	상계	고용
수인(04-440) 동계번호			보수총액	상정근거	보수총액	상정근거	상계	고용	상계	고용	상계	고용
관리번호	사업장명	관할지사										
발동근로제 보수	공단 신고 보수총액	국세청신고 근로소득	국세청신고 대비 보수차액 (⑤-④)	보수총액 이의신청(제외) 사유 및 금액(⑤+⑥)								
상계				공단취득일 분리(통합) 신고	⑧ 사유코드	공 비근로소득 등 이의신청(제외)사유 및 금액						
고용	⑧ 사유 코드											
상계	상계											
고용	고용											
상계	상계											
고용	고용											

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 내역서

관리번호	사업장명	관할지사										
근무처별 관리번호	유사업종명	주인(외국인) 등록번호	종업명	발동유종간 대상 보수총액						고용보통		
				상계보통	상실보통	상계비근로소득	상계비근로소득	상계비근로소득	상계비근로소득	상계비근로소득	상계비근로소득	

● 신고항목

- 이의신청서: ④ 보수총액 이의신청(제외)사유 및 금액(⑤+⑥), ⑤ 근무처별 분리(통합) 신고금액, ⑥ 비근로소득 등 이의신청(제외)사유 및 금액, ⑦ 사유코드
- 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 내역서: ⑫ 근무처별 관리번호, ⑬ 사업장명, ⑭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⑮ 성명, ⑯취득일, ⑰ 상실일, ⑱ 연간보수총액

●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구분	취득일 (산재) (고용)	상당일 (산재) (고용)	①공단 신고 보수총액				②국제형 신고 근로소득	③국제형신고 대비 보수차액(고-①)				④근무처별 분리(통합) 신고				⑤비근로소득 등 이의신청 (제외사유 및 금액)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고용	산재	고용	⑦사유 코드	산재	고용	산재	고용			
			보수총액	산정근거	보수총액	산정근거											산재	고용	산재
후천(제1차)인 용액연도																			

- 이의신청 사유 및 금액 작성: “①, ②, ③”란은 안내사항으로 금액을 수정하면 안 되며, 이의신청 사유에 맞게 “⑤, ⑥, ⑦”란을 작성합니다.

※ 공단 신고 보수총액을 근무처별로 분리 신고하거나 하나의 근무처에 통합신고한 근로자의 경우 ‘⑥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란의 ‘산재’ 또는 ‘고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 ‘⑥비근로소득 등 이의신청’란은 ‘(사유1)비근로소득’, ‘(사유2)적용제외자’, ‘(사유3)비과세소득’을 작성하는 부분으로 이의신청서와 같이 송부한 “사유 코드표”를 참고하여 ‘⑦사유코드’와 사유코드별 제외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작성예시1)	총사유코드	산재	고용	작성예시2)	총사유코드	산재	고용
	221	2,000,000			106	10,000,000	5,000,000
	225		2,000,000		318	1,200,000	600,000

보수총액 상해내역 이의신청 사유 코드표									
보수의 정의					※ 보수를 부과하는 전담사업장(비사업장)에 한해 확인하여 고용장내(비사업장)를 결정 후 신고하시어 바랍니다.				
「보험료징수법」상 「보수」란 함의. 「소득세법」 제203조의 다른 근로소득에서 일한 일 제1조제1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다만, ①당시 소득세 과세 시 생략된 주거 위한 「주택임대차소득」상 「비과세 근로소득」인 소득세법 제203조제1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세법」상 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충된 W2000이 함의. W2000이산정 전산용 위해 국제형신고처리 「근로소득환급신청서」 제출, 상의 다음 항목을 접수하여 보충된 보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근로소득환급신청서」상 「소득」 과세금액으로 분류되어 있는 총합금액(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⑯⑰⑱⑲⑳㉑㉒㉓㉔㉕㉖㉗㉘㉙㉚㉛㉜㉝㉞㉟㊱㊲㊳㊴㊵㊶㊷㊸㊹㊺)									
※ 해당내역 전체: 항목과 「근로소득환급신청서」상 해당내역에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중 ①~⑪ 중 산정액 수천원 초과, ⑫~⑳ 중 천원 초과, ㉑~㉒ 중 만 원 초과, ㉓~㉔ 중 만 원 초과, ㉕~㉖ 중 만 원 초과, ㉗~㉘ 중 만 원 초과, ㉙~㉚ 중 만 원 초과, ㉛~㉜ 중 만 원 초과, ㉝~㉞ 중 만 원 초과, ㉟~㊱ 중 만 원 초과, ㊲~㊳ 중 만 원 초과, ㊴~㊵ 중 만 원 초과, ㊶~㊷ 중 만 원 초과, ㊸~㊹ 중 만 원 초과, ㊺ 중 만 원 초과.									
[EAP 11 비근로소득]					※ EAP 11 제외				
사유 코드	항목	사유 코드	항목						
101	이자소득	106	이자소득						
102	배당소득	107	배당소득						
103	사업소득	108	국제형 근로소득 환급신청 또는 수당신고						
104	연금소득	109	외국인 근로소득 환급신청 또는 전담 사업장 근로소득 환급 신청						
105	과세소득(주거임대차, 재산소득 등)	110	A근로자 보수를 B근로자 보수로 환산신고						
사유 코드	[EAP 12 적용제외사유] ※ EAP 12 제외			보충된 부과액					
				산재	고용	산재	고용		
200	실용근로자를 제외한 소규모사업장(60인 이하) 및 60인 초과 150인 이하(1인) 이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종사기간 1개월 초시는 고용보험(산재, 고용) 적용 제외(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12조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	○	○	○	○	○
201	실용근로자를 제외한 소규모사업장(60인 이하) 및 60인 초과 150인 이하(1인) 이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종사기간 1개월 초시는 고용보험(산재, 고용) 적용 제외(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12조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	○	○	○	○	○
202	실용근로자를 제외한 소규모사업장(60인 이하) 및 60인 초과 150인 이하(1인) 이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종사기간 1개월 초시는 고용보험(산재, 고용) 적용 제외(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12조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	○	○	○	○	○
203	실용근로자를 제외한 소규모사업장(60인 이하) 및 60인 초과 150인 이하(1인) 이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종사기간 1개월 초시는 고용보험(산재, 고용) 적용 제외(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12조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	○	○	○	○	○
204	실용근로자를 제외한 소규모사업장(60인 이하) 및 60인 초과 150인 이하(1인) 이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종사기간 1개월 초시는 고용보험(산재, 고용) 적용 제외(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12조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	○	○	○	○	○
205	실용근로자를 제외한 소규모사업장(60인 이하) 및 60인 초과 150인 이하(1인) 이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종사기간 1개월 초시는 고용보험(산재, 고용) 적용 제외(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12조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	○	○	○	○	○
206	실용근로자를 제외한 소규모사업장(60인 이하) 및 60인 초과 150인 이하(1인) 이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종사기간 1개월 초시는 고용보험(산재, 고용) 적용 제외(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12조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	○	○	○	○	○
207	실용근로자를 제외한 소규모사업장(60인 이하) 및 60인 초과 150인 이하(1인) 이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종사기간 1개월 초시는 고용보험(산재, 고용) 적용 제외(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12조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	○	○	○	○	○
208	실용근로자를 제외한 소규모사업장(60인 이하) 및 60인 초과 150인 이하(1인) 이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종사기간 1개월 초시는 고용보험(산재, 고용) 적용 제외(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12조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	○	○	○	○	○
209	실용근로자를 제외한 소규모사업장(60인 이하) 및 60인 초과 150인 이하(1인) 이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종사기간 1개월 초시는 고용보험(산재, 고용) 적용 제외(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12조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	○	○	○	○	○

4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적용방법

사유코드	【사유 3】 병과세 근로소득	● 과세 사유코드
301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의 병(病)이 되는 급여	
302	병중에 따라 동행비 사항이 그 동행 직장에서 받는 급여	
30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의료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위탁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애특별급여, 장제비 또는 근로의 재정으로 인한 부상·휴면 시정금 관련급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복리(慰禮)의 성질이 있는 급여	
304	「근로기준법」 또는 「선우법」에 따라 근로자·정년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환보상금(傷病補償金), 임시보상금, 정월보상금, 유족보상금, 장애특별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제비 및 장제비	
305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채대근로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원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306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연금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307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해임보상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법원공무원법」에 따라 받는 공무원연금에 상당하는 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과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과금·유족연금특별부과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과금·유족연금특별부과금·직무상유족보상금·유족직무상유족보상금·해당부과금 해납부과금 또는 연·월·금상환의 연월액·금상환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308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과금	
● 309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살위생장착(喪喪葬費) 성립지 급여	
310	외국출생(외국인 지병자)의 경우 해당국가의 국적의 지원금부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제기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는 급여. 다만, 그 외국출생자가 아니라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312	「전직대상법」에 따라 받는 전직금	
313	직장일부를 수습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314	종교한 군인·군무원이 전직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인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315	국외 또는 「보복교원특별법」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무를 재종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급여	
316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년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 317	생사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연봉으로 대근로 또는 휴직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318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과 또는 직과대	
● 319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6세 미만)의 과세기간 계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인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상의 금액	
320	「국군보훈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제금 또는 국군보훈이 받는 배우자 또는 유족일시금	
321	「교육지원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병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하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설치되는 대학병에 한정한다)	
322	「법정연봉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일당연봉 사용자 또는 소속 대학에 설치된 장학금(학사운영부담) 받는 보살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3)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Q&A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대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자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nswer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금액(급식비 등)을 제외한 근로 소득자료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보수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금액으로 산정될 경우 일부 비과세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세청 신고 근로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공단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3장

자진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제4편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1 개산보험료

가. 개산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그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text{개산보험료} = \text{해당 연도 추정보수총액} \times \text{보험료율}$$

-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 보수총액을 해당 보험 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보수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 보수총액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결정 (보수총액 추정액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text{개산보험료} = \text{총공사금액} \times \text{노무비율} \times \text{보험료율}$$

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사업주는 해당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 하여야 함
 -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보험료는 매년 사업주가 해당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 연도 중에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 계속사업장 또는 6월 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사업주의 신청(반드시 개산보험료 신고 시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가 가능함
 -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해당 보험 연도 3월 31일까지, 연도 중 성립한 경우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3%를 경감 받을 수 있음
 - ※ 개산보험료는 선납주의로 자진신고·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함

【분할납부시 납부기한(연간 적용사업장)】

기 별	산정대상기간	납부기한
제 1 기	1. 1. ~ 3. 31.	3. 31.
제 2 기	4. 1. ~ 6. 30.	5. 15.
제 3 기	7. 1. ~ 9. 30.	8. 15.
제 4 기	10. 1. ~ 12. 31.	11. 15.

● 보험 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 시 분할납부

-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연 4회로 되어 있으나,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는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동 횟수를 2회~3회로 조정
- 다만, 해당 보험 연도의 7월 이후에 성립한 사업 또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사업은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2 | 확정보험료

가. 의의

- 매 보험 연도의 초일(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확정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 해당 보험 연도 중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 건설공사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로 보수총액을 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음

$$\text{확정보험료} = [\text{직영인건비} + (\text{외주공사비} \times \text{하도급노무비율})] \times \text{보험료율}$$

※ 외주공사비는 원수급인이 「하도급 준 공사」의 총공사금액(외주공사비)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아 하도급 준 공사」의 공사금액(외주공사비)을 제외하고 산정

(3)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공사 : 하수급인이 보험료 신고·납부 주체

-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업체가 반드시 그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함
-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가산금과 연체금 부과

다.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관계가 보험 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선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할 수 있음

라. 직권조사징수

-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개선·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됨

3 | 2022년 산재·고용보험 보험료신고서 신고안내

가. 건설업 본사

$$\text{확정보험료} = \text{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times \text{보험료율}$$

- 산재보험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본사 소속 건설현장 근무자(현장소장, 기사 등) 보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 고용보험(실업급여)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보수)
- ☞ 예시) ① 산재보험 보수 =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제외,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인건비는 건설 현장으로 신고)
- ② 고용보험 보수 =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제외) + 원가명세서상의 본사소속근로자(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전체
-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대표자 보수를 제외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대표자 보수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보수를 제외

나. 건설업 현장(건설일괄, 개별건설공사)

- 건설공사(건설일괄 포함)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 공사비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

확정보험료 = [직영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 (외주공사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 ※ 하도급 노무비율 (2022년 30%, 2021년 30%)
- ※ 자기공사, 원도급공사,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는 포함하되, 원수급인으로서 하도급 준 공사(외주공사비)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는 제외
- ※ 산재보험은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소장, 기사 등)가 건설현장에 파견된 경우 건설현장 보수에 포함하여 산정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투입 시 산재보험료 납부 주체가 원수급인으로 변경(고용보험 제외)〉

- ※ 2018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원수급인과 건설기계사업주간 임대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며 확정보험료 신고 시 건설기계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는 실보수 또는 하도급공사 노무비율로 산정하여 신고·납부(전체 하도급 공사현장 실보수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실보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적용)
- ※ 2019년부터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 1인 사업주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확정보험료 신고 시 원수급인과 직접 계약한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는 기준보수로 "직접 고용한 근로자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수급인이 건설기계 특고와 계약한 경우 하도급공사금액에 건설기계 작업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기계 특고에 대한 보험료도 신고된 것을 봄)

● ③보험료

$$\text{③확정보험료액} = \text{①보수총액} \times \text{②보험료율}$$

※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고 ③번 확정보험료액란에 기재(고용보험은 각 사업별로 계산하여 합산)

(2) 2022년 개산보험료

● ⑧보수총액

- 2021년도 1년간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개산보험료 보수총액)
-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과 동일하게 기재

● 사례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의 산정

- ①번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1,000만원이고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 800만원이더라도 ⑧번 란은 1,000만원으로 기재
 800만원 / 1,000만원 × 100 = 80% (확정보수총액 대비 70 ~130% 사이)

● ⑨보험료율

$$\text{산재보험료율} = \text{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요율+출퇴근재해요율)} + \text{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text{석면피해구제분담금 비율}$$

-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 : 건설업 36/1,000, 건설업본사 9/1,000
- 2022년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 1.0/1,000
- 2022년도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0.6/1,000
-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비율 : 0.03/1,000

$$\text{고용보험료율} = \text{실업급여요율} + \text{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 ⑪일시납부 및 분납여부 선택

- ⑪분할납부 여부 항목에 일시납부 표시하고, 납부기한 내에 일시납부 하면 3%의 공제 혜택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 시 5천원 추가 경감)
- ⑪분할납부 여부 항목에 분할납부 표시하면 해당보험료를 4기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음

5 | 개선보험료 경정청구·감액조정 제도

가. 의의

-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내 개선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개선보험료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 ‘감액조정’은 보험 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선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선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임

나. 경정청구 요건

- 법정기한 내에 개선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개선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개선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다. 감액조정신청 요건

- 개선보험료의 감액사유가 사업규모의 축소에 의할 것
- 개선보험료 감소 규모가 이미 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 보험가입자가 감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것

라. 경정청구절차

-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선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개선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납부할 개선보험료에서 감액된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됨

마. 감액조정절차

-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선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하고 감액 결정될 경우 개선보험료에 대한 감액금액이 통지됨

- 감액신청사유 또는 감액조정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총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납부할 개산 보험료에서 감액된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됨

6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 제도

가. 의의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임

나. 경정청구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다. 수정신고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할 것
- 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

라. 경정청구절차

-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함
-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액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확정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총당 또는 반환을 받고, 미납된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대하여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게 됨

마. 수정신고절차

-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납부
 - 법정기한 내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해야할 확정 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 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까지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결과 추징금에 대한 가산금 50/100을 경감

7 | 건설업 확정정산

가. 개요

- 확정보험료의 정산은 공단과 보험 가입자 간에 당해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액과 확정 보험료액과의 차액에 대해 추가징수·반환 관계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의 확정정산 전담부(팀)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정산 업무임

나. 정산절차

-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확정보험료 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정산 사업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을 지역본부장에게 시달
- 지역본부장은 선정된 정산대상 사업장을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선정사유와 정산 실시일자, 조사자 등을 서면으로 해당 사업장에 통지(서면정산 실시 결과 적정할 경우 현지 조사 제외 가능)
- 지역본부장은 서면정산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금(또는 보수)총액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현지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한하여 현지정산 실시

다. 정산대상

- 보험료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의 보수(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 확정보험료신고서의 전년도 개산보험료신고액 대비 반환 또는 충당금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
- 보험료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보수(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 세무비리 등 각종 신고에 있어서 잡음이 많은 사업장
- 최근 3년 동안 조사대상사업장에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장
- 그 밖에 보수(임금)총액이 불명확하거나 조사 및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에 확정정산결과 성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다음연도 선정대상에서 제외

라. 정산기준

- 확정정산은 전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 분담금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지만 정산계획에 따라 정산 대상 사업장 선정 후 다음연도에 실시하는 사업장은 전전년도에 대하여 실시
-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실시 결과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추가징수 합계액이 신고액 대비 10%이상 발생하거나 추가징수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끝나는 기간까지 정산. 다만, 추가징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서 식 마 당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comwel.or.kr) 메인 - 자료실 - 서식자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도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전자로 신고·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 [고용보험·산재보험(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 [고용보험·산재보험(월별보험료·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 (고용보험·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

제5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제1장 사회보험료 지원
- 제2장 부당지원금의 환수



제 1 장 사회보험료 지원



1 목적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 2012. 7월부터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2 2022년도 주요 변경 사항

가.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주요 변경 사항

- 지원대상 보수 상향
 - ('21년) 220만원 미만 → ('22년) 230만원 미만
- 일용근로자 지원요건 완화
 - ('21년)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 ('22년)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나. 지원기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2021년)	변경 후(2022년)
보수 기준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지원대상 규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규모 판단 시 미포함)	
지원수준	신규가입자*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기가입자*	미지원
지원 기간	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제외 대상기준	재 산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일용근로자의 경우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3 | 부과고지사업 지원기준

가. 지원 대상

(1) 사업 기준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일용근로자는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 산정
 - 사업규모는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단

가입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판단 기준

- (성립일이 해당년도 이전인 사업)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가 10명 미만이고 신청 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간(매월 말일 기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에 따른 기한 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고용보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
-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 연도 중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 이면 4개월째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개월 연속(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연도 말까지 재지원(신청) 불가
 - 다음연도 지원 신청시 지원대상 여부 재판단
- 사업이 보험 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 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 계속 지원

- 매년 12월 말 기준 지원중인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단본부에서 사업에 지원제외 통지하면서 이후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보험료지원 신청 가능함을 안내
-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월에 당해연도 보험료지원 신청서 제출

다음 연도 계속지원 사업에 월평균보수 220만원 이상 230만원 미만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

- 지원중인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지원대상 보수 수준인 월평균보수(월별 보수총액) 23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료를 지원

(2) 근로자 보수 기준

- (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지원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이 해당 연도 보수기준의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구 분	2021년	2022년
지원 보수기준	220만원 미만	230만원 미만

* 보수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3) 지원 제외 사업 및 지원 제한 근로자

- (사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 (근로자) 근로자의 재산 또는 소득이 고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 시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한

구분	지원제한 기준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원 이상
종합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

* 제한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나. 지원 금액 및 방법

(1) 보험료 지원 금액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지원 수준		적용시기
월평균보수액 또는 월별보수총액 23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100 지원	2022년
	기가입자	미지원	

- ※ 고용보험료: 사업주 1.0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0.8%), 근로자 0.8%(실업급여)
 - '22.7.1.부터는 실업급여 요율 인상으로 사업주 1.1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0.9%), 근로자 0.9%(실업급여)
- ※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 사업규모 판단: 해당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매월 판단

-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업별로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 사업주 지원금(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 지원금(실업급여)을 산정한 후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기준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일용근로자 경우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자
 - 기가입자란 신규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일용근로자가 지원받고 있는 기간 중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직한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가입자로 분류
 -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
 - 다른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

(2) 보험료 지원기간

-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 지원
 - 2018.1.1. 이후 근로자별로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2018년 지원대상 월부터 적용)

(3) 보험료 지원 방법

- 월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고지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보험료 완납 여부는 사업 단위로 판단)
 - 보험료 고지서에 보험료 지원금을 “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명시
- 해당연도에 신규 입사한 지원 대상근로자의 경우 지원 당시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상한액 기준 110% 범위(2022년도 기준 253만원)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 지원제외신청 시에는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제외, 사후 적발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하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지원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연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보수총액 미신고시 월평균보수를 알 수 없으므로 신고를 지연한 개월 수 만큼 지원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간 내에 제출한 근로자만 지원
 - 연도 중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지원*
 - *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폐업·휴업·근로자 없음 등으로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
- 다음 달 부과될 보험료가 지원금보다 적어 미지원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환수금과 상계하거나 고용보험료에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계·지원은 환수금, 고용보험료 순으로 함. 잔여 미지급 지원금은 사업주로부터 지원금 수령 계좌를 제출 받아 지급

다. 지원절차

(1) 지원 신청서 접수

-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신규 입사자(피보험자격 취득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보험료 지원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기존사업)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신규사업)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지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또는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우리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중 한 곳에 신청(전자신청 : <http://www.4insure.or.kr>)

(2) 지원사업 해당·비해당 결정 통보

- 전산자료를 기초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 근로자 가입신고 누락, 소득 축소 신고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받았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보험료지원 신청서에 대해 공단본부에서 결정통지서 DM발송
 -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사업이더라도 지원신청 다음월에 지원금 산정(매월 20일경) 시 신청월 말일 기준 가입자수가 10명 이상으로 확인되는 등 지원기준 미충족 시 공단본부에서 일괄하여 지원 제외 통지
 - 추후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다시 지원신청(신청월부터 지원가능)

(3) 보험료지원금 산정·통보

- 월보험료 자료구축 이후(매월 20일경) 실제 산정된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 내역을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통지
 - ※ 최초 지원금 지급시 1회에 한하여 안내하고 이후에는 신규 입·퇴사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안내
 -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인증서로 로그인(보험료 정보)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화면에서 개인별 지원금 확인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에 대한 지원

- 보험료지원 대상 근로자 중 이중취득자는 지원금 산정 시 보류 되었다가 이중취득이 해소되면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3 | 자진신고사업 지원기준

가. 지원 대상

(1) 사업 기준

- 건설업·별목업 본사와, 건설공사 및 별목현장을 포함하여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
 -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규모 판단 기준을 사업장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변경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 등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요건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로 다른 사업과의 일원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2017.6.28. 시행)
 - ※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지원제외 기준은 미적용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가 10명 미만인 사업
 -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인 근로자」는 제외
 - 일용근로자는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 산정

(2) 근로자 보수 기준

- (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지원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이 해당연도 보수기준의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구 분	2021년	2022년
지원 보수기준	220만원 미만	230만원 미만

* 보수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지원 대상 근로자의 보수총액의 합이 국내의 모든 사업의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신고시 기재한 보수총액을 초과할 경우 전체 미지원

자진신고사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보수총액을 그 보험 연도 중 해당 근로자의 근무 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산정

(3) 지원 제한 근로자

- (근로자)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 시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구분	지원제한 기준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원 이상
종합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

* 제한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나. 지원 금액 및 방법

(1) 보험료 지원 금액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지원 수준		적용시기
월평균보수액 또는 월별보수총액 23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100 지원	2022년
	기가입자	미지원	

※ 고용보험료: 사업주 1.0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0.8%), 근로자 0.8%(실업급여)

- '22.7.1.부터는 실업급여 요율 인상으로 사업주 1.1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0.9%), 근로자 0.9%(실업급여)

※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사업규모 판단: 해당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매월 판단

-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업별료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 사업주 지원금(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 지원금(실업급여)을 산정한 후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기준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일용근로자 경우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자
 - 기가입자란 신규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일용근로자가 지원받고 있는 기간 중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직한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가입자로 분류
 -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
 - 다른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

(2) 보험료 지원기간

-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 지원
 - 2018.1.1. 이후 근로자별로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2018년 지원대상 월부터 적용)
- 기가입자는 2020.12.31.까지만 지원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지원

(3) 보험료 지원 방법

- 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 계좌로 지원금 입금
 - 본사(주된사업장) 관할 지사에 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신청 해당연도의 국내 모든 사업의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완납)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연 1회)

다. 지원절차

(1) 지원 신청서 접수

-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본사(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모든 사업의 확정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후 법정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제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지원 신청 근로자”란에는 고용보험 자격취득된 지원 대상 근로자만 기재
 -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므로 기재하지 않음
- 자진신고사업은 월평균보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금 산정을 위해 근로자 인적 사항, 보수 총액, 월평균보수 등을 기재하도록 함
 - 월평균보수 = (보수총액/해당연도 총근무 일수) × 30일

(2) 지원금 산정 및 지급 방법

- 보험료 납부 확인
 - 지원 대상 연도의 국내의 모든 사업의 법 제19조에 따른 기한 내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완납)
 - (건설공사 및 벌목업) 지원신청 해당 연도의 공사종료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확정 보험료 신고·납부(완납)
- 보험료 지원금 산정·지급
 - 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 지원 대상 결정 후 지원금 산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늦게 신고한 경우 신고일부터 지원
- 일용근로자는 법정신고기간 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산정
-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사업주 계좌(법인의 경우 법인계좌)로 지급

(3) 보험료 지원금 지급 통보

-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보험료지원 신청서에 대해 공단본부에서 결정통지서 DM발송
- 지원금 지급 결정·통보 시 근로자용 통지서가 함께 동봉되므로 사업주는 지원대상자에게 근로자용 통지서를 배부

서 식 마 당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comwel.or.kr) 메인 - 자료실 - 서식자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달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전자로 신고·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예술인·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제2장 부당지원금의 환수



1 환수대상

- 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가 허위·착오신고 및 피보험자격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기준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 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보험 연도 중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한해 사업주가 다음연도에 신고한 보수총액 또는 상실신고 시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이 상한액 보수기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월평균보수 인하를 신고하여 지원을 받은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고시된 해당연도 보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 전부
5. 그 밖에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 3천원 미만 환수금 면제(2014. 9. 25. 시행)

- 환수금 산정 방법
 - 전액환수 :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지원한 지원금 전액
 - 일부환수 : 기 지원된 지원금 - 실 지원될 지원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련 신고를 적기에 하지 않거나 보수를 과소신고 하는 등 보험료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았음이 추후 확인되면 기 지원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

2 | 환수절차

- 환수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공단이 환수결정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환수금 체납 시 사업주(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재산(신용카드매출채권, 거래대금, 공사대금,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있으니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보험자격신고 기한 준수
 - 지원금의 환수결정 및 통지는 사업장관리번호 단위로 이루어지며, 환수결정 통지 시 최초 납입고지 병행 처리

3 | 환수금 납부방식 및 방법

- 환수금 납부방식
 -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로(OCR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

지로(OCR고지서)납부 및 가상계좌 이용 납부

인터넷 지로 (뱅킹)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은행 : 시중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농협, 국민은행 등) 및 우체국 - 납부방법 : 「인터넷지로홈페이지(www.giro.or.kr)(일반지로납부 선택)」 및 「거래은행 홈페이지(지로 납부 선택)」로 접속 후 지로번호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납부 - 인터넷지로홈페이지 이용가능시간 : 월~금 00:30~23:30 (다만,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금융회사별 납부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거래은행별 인터넷뱅킹 이용방법·가능시간은 각 은행 홈페이지 참조
공과금 수납기 이용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과금수납기에 고용보험료 환수금 고지서를 절취하여 사용 - 이용가능은행 : 각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이용가능시간 : 월~금 09:00~16:00 (거래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CD/ATM기 이용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ATM기에서 「공과금 납부창」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입력·납부 - 이용가능시간 : 월~금 07:00~22:00 (거래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토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인터넷 지로홈페이지로 연계 납부
가상계좌 이용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은행의 인터넷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능 - 이용가능시간 :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은행영업일 09:00~23:00 - 고지서 상 가상계좌로 고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 입금 가능

제6편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 1. 고용보험 적용
- 2. 피보험자격 관리
- 3. 보험료 산정·부과
- 4. 실업급여
- 5. 출산전후급여 등



1 | 고용보험 적용

가. 적용대상

- ❶ 근로자가 아닌「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❷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❸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❶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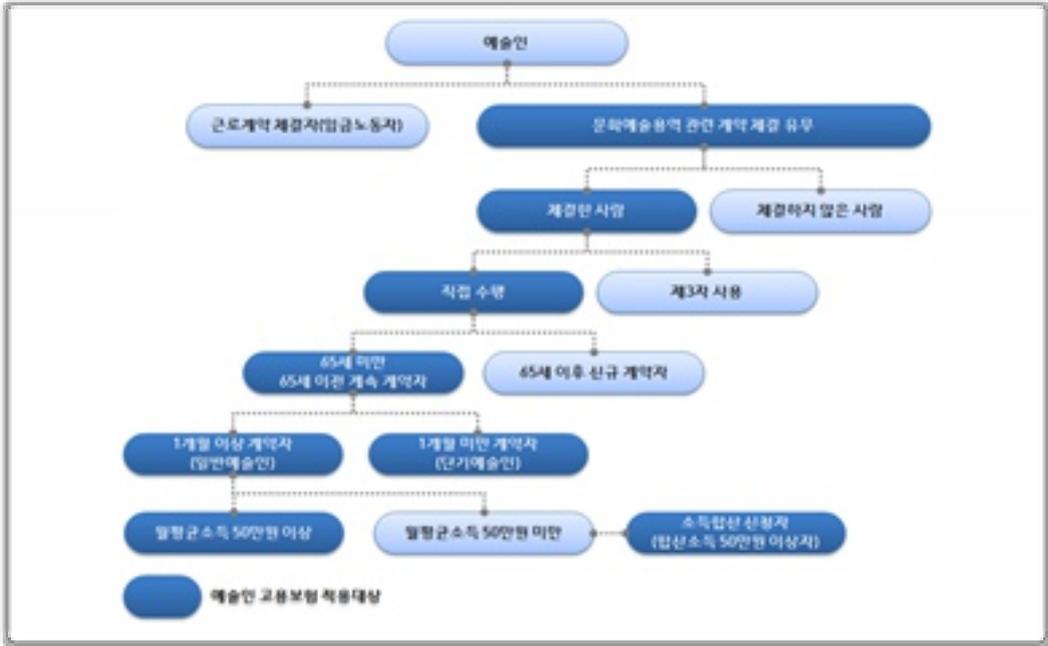
용어의 정의

- ❖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 ☞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기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 ☞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 12개 분야

- ❷ 문화예술용역계약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고용·도급·위임·업무위탁·파견 등 그 형태와 무관
- ❸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이행을 제3자를 통해 대행하게 하지 않고, 직접 노무제공 등을 해야 함

나. 적용방식 및 보험가입자

- (적용방식)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면적용**
- (보험가입자) 예술인과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다. 적용제외

-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연령과 소득으로 한정**
 - ① **(연령)**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제외**
 - ② **(소득)**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다만,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와 합산소득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신청에 한함)인 경우 당연 적용,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음

라. 적용사업

-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미적용. 한편,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적용**

마. 보험관계의 신고

- 사업주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등으로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함(보험료징수법 제11조)
 -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멸신고 필요

-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2)
- 한편, 예술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관리번호와 구분한 별도로 관리번호 성립 필요
 - 근로자 또는 특고(노무제공자) 고용 등으로 보험관계가 기 성립된 사업장에서 예술인을 추가 사용하는 경우 예술인 관리번호를 별도 성립신고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해야함
 - ※ 성립신고 없이 취득신고 한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성립처리하여 예술인 전용 관리번호 부여

2 | 피보험자격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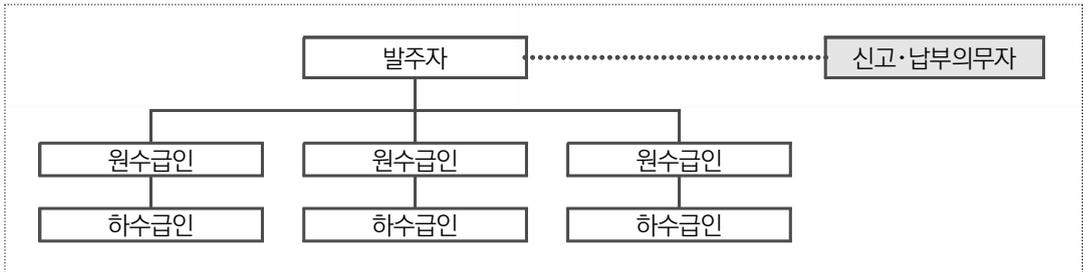
가. 피보험자격의 구분 및 신고 의무

- (구분)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
 - 일반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 단기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 (신고)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
 - 원칙 : 수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예술인과 직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 부담
 - 예외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인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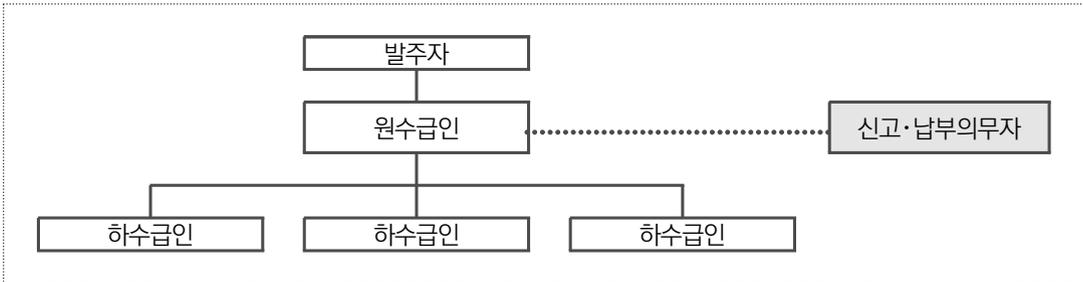
나. 도급사업의 특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발주하는 사업이 ①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또는 ②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 ①발주자 또는 ②원수급인이 원·하수급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원천징수·납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하도록 함

- ❶ ○○사가 □□문화예술용역사업을 시행하면서 미술업체(A), 음향업체(B), 조명업체(C) 등과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❷ ○○사가 □□문화예술용역사업을 A기획사(원수급인)에 음향, 조명 등에 관해 모두 도급하고 A기획사가 음향 분야를 B음향업체(하수급인)에 하도급계약한 경우



● 도급사업 특례의 발주자·원수급인 업무 처리 절차

업무 내용	발주자·원수급인 사업장 성립	⇒	원·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	피보험자 신고	⇒	보험료 납부
행정의무자	발주자·원수급인		발주자·원수급인		발주자·원수급인		발주자·원수급인
신고·납부기한	사업개시 후 14일 이내		사업개시 후 14일 이내		노무제공 개시한 다음 달 15일		매월 10일

다. 피보험자력의 관리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술인이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함
- (일반예술인)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자격 관리(취득·상실 등)
 - (단기예술인)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유사하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

라.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

- 예술인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허용
 -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및 근로자·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 ①예술인 ↔ 예술인, ②예술인 ↔ 근로자
 - 다만, 현행과 같이 근로자로서 이중취득 및 임의가입 방식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제한
 - ☞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 가능
- 종사자 지위에 따른 이중취득 가능 여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임의가입)
		상용	일용	일반	단기	일반	단기	
근로자	상용	×(①)	×(②)	○	○	○	○	△(④)
	일용	×(②)	×(①)	○	○	○	○	×(③)
예술인	일반	○	○	○	○	○	○	△(④)
	단기	○	○	○	○	○	○	×(③)
노무 제공자	일반	○	○	○	○	○	○	△(④)
	단기	○	○	○	○	○	○	×(③)
자영업자(임의가입)		△(④)	×(③)	△(④)	×(③)	△(④)	×(③)	×(③)

- ①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에 따라 월평균보수 → 월소정근로시간 多 → 근로자(가입자) 선택 순으로 취득
- ② 상용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 취득
- ③ 일용/단기 또는 자영업자 중 선택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 ④ 당연가입(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우선 취득,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유지 신청 시 이중가입 가능

마. 소득합산(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

- 예술인이 하나의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다른 계약의 소득을 합산하여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의 신청에 의해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
 - 월합산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한달 다음 달 15일 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월합산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중복기간이 피보험자격 기간
 - ☞ 예술인이 신청한 사업장에 한하여 가입대상이며, 사업주 동의 없이 자격 취득
 - 예술인의 소득합산 신청일이 아닌 ‘사유발생일’로 소급해서 고용보험 적용
 - 합산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예술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 및 예술인에게 통지

· 사례 각각의 계약이 모두 적용제외 소득기준(5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합산

예술인A가,

- ▶ 사업주 “가”와 ‘XX.3.1. ~ 4.30. 월평균보수 30만원 계약
- ▶ 사업주 “나”와 ‘XX.4.1. ~ 6.30. 월평균보수 30만원 계약
- ▶ 사업주 “다”와 ‘XX.5.1. ~ 7.31. 월평균보수 35만원 계약
- ☞ 이 경우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기간은 4.1. ~ 6.30.

구분	계약기간	3월	4월	5월	6월	7월
계약1	3/1~4/30	월평균소득 30만원				
계약2	4/1~6/30	월평균소득 30만원				
계약3	5/1~7/31	월평균소득 35만원				
합산소득		30만원	① 60만원	② 65만원		35만원

①구간 60만원 적용(취득기간: 4/1~4/30, 신청기간: 4/1~4/30)

☞ 계약1과 계약2의 합산신청기한은 합산소득이 50만원을 넘은 월의 다음달 15일인 5/15까지이지만 계약1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적용 가능하므로 4월 소득합산에 대한 실제 신청 기한은 4/30까지임

②구간 65만원 적용(취득기간: 5/1~6/30, 신청기간: 5/1~6/15)

☞ 계약2과 계약3의 합산신청기한은 합산소득이 50만원을 넘은 월의 다음달 15일인 6/15까지임
 ※ 소득합산에 의한 취득은 보험료 부과시 기준보수 80만원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바. 피보험자(보험관계) 변경 신고 및 확인 청구

- **(변경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에는 변경일이나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사업주는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월평균보수 변경 등 발생시 보험관계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확인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은 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예술강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Answer

아닙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적용되며, 여기서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용역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면 계약서 작성 없이 않고 구두로만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nswer

아닙니다. 구두계약에 의한 경우라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계약기간, 계약금액, 제공하는 용역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복지법」에서 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상호의 주장을 입증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먼저 서면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료 산정·부과

가. 보험료 부담주체 및 보험료율

- 근로자와 동일하게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7%(2022년 7월부터 0.8%) 균등 부담
 - ※ 실업급여 요율 1.4%(2022년 7월부터 1.6%)

나. 보수의 정의

- (원칙) 예술인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 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경비는 실제 발생하는 경비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보수의 일정 비율(25%)로 고시

☞ 예술인의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 × 25%

다. 월별보험료 산정 보수

- (원칙) 근로자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보수 산정
 - 당해연도 처음 피보험자격 취득하는 사람은 계약기간 중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신고한 금액)
 - 단기예술인은 노무제공내용신고서 상 월 보수총액을 월평균보수로 적용
- (예외) 기준보수(하한액) 적용
 - 기준보수 :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원(=하한액) 적용
 - ☞ (하한액) 예술인은 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 하한액이 없어 월평균보수가 낮은 경우 실업급여가 낮게 지급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하한액을 설정하여 보험료 부과하고 하한액의 60%를 기초일액으로 산정
 - 다만,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 미적용
- (소득합산)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둘 이상의 소득을 합산하여 피보험자격 취득하는 경우, 실제 각각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각 소득별 기준보수 적용하지 않음)

라. 보험료 원천공제 및 부과·납부

- (원천공제) 사업주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 및 납부
- (부과·납부) 공단은 예술인의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모든 예술인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직접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납부하고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제6·7항에 따른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원천공제·납부의무 부여

마. 보험료 정산

- (보험료 정산)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정산

- 예술인의 개인별 신고 보수총액이 월별보험료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하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하한액의 합계액으로 보험료를 정산
 - ☞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 시 단기에술인도 보수총액 신고 및 정산대상에 포함.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하는 예술인과 소득합산 신청 예술인은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 정산 제외
-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고용보험 적용제외(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을 유지

바.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요건

- (지원대상 사업 규모) 근로자 10인 미만(사업 규모 판단시 예술인은 미포함)

참고) 지원대상 규모 판단

-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 (지원대상 보수 수준)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수 합산 금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지원 제한) 재산 또는 소득이 고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시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한

구분	지원제한 기준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원 이상
종합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

* 제한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해당 예술인의 이전 고용보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
 - ※ 근로자·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4 | 실업급여

가. 수급요건

● 실업(피보험자격 상실)하였을 것

-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 다만, 단기예술인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인정신청일 이전 14일 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

-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충족여부 판단
 - ☞ 예시) 이직 전 24개월 동안 예술인 6개월, 근로자 100일(유급근로) 종사한 경우: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3/9 미충족,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60일(=3/9×180일) 이상이면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다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 인정
 - 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 ②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유지하였을 것

● 단기예술인이 2개 이상의 사업에 종사 시 실업의 신고 외의 사업에서 90일(3개월)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3개월)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나. 대기기간

●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 부지급

- 다만, 예술인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는 4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 부지급

다. 지급수준

●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

- 수급자격 인정 관련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다만, 이직 당시의 기준보수 일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보수 일액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하게 설정, 하한액은 별도 규정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 하한액

라.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수급자격 인정 관련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유지기간으로 산정(이직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하되,

- 단기예술인에 대한 피보험기간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

● (소정급여일수)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마.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등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병행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이 ①당연가입대상(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 또는 적용제외 소득 이상의 예술인 종사, 단기예술인 종사)인 경우 또는 ②자영업활동을 한 경우 지급 중지
- 수급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전액 지급,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감액 후 지급
 - ☞ 최저임금월액의 20%까지는 구직급여 전액 지급, 해당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된 금액 공제

5 | 출산전후급여 등

가. 수급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다만,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질병·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의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
-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제2021-109호)
- (지급기간)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근로자와 예술인 고용보험 비교

구분		근로자	예술인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주요 적용제외	주 15시간 미만자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문화예술용역 계약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자 (단, 소득합산 신청에 의한 50만원이상시 적용)
		65세 이후 신규자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급여 1.6%(1.8%, 2022.7.~)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0.85%	· 실업급여 1.4%(1.6%, 2022.7.~)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미적용
실업급여 지급	수급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지급수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일 ~ 270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인정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수급요건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출산(유산, 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일부	출산일 전후 90일

예술인 고용보험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 전국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산정 및 부과
- 연락처: 공단대표 1588-0075, 예술인가입부 02-6946-0650, 팩스 0502-223-3203
-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25(수송동, 연합뉴스빌딩) 11층

서 식 마 당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comwel.or.kr) 메인 - 자료실 - 서식자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전자로 신고·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등

-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 고용보험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도급사업 가입신고서
- 고용보험 예술인 문화예술용역사업 하수급인 명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예술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예술인)
-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단기 예술인)
- 예술인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 신고내역 변경·정정·취소

- 고용보험 예술인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 피보험자 고용정보 및 입·이직정보 내용 취소 신청서(예술인)
- 피보험자 고용정보 및 입·이직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예술인)
- 단기노무제공내용 정정·취소신청서(예술인)

❖ 보험료 부과·정산

-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수정신고서
- 고용보험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 기타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 고용보험 예술인 휴업 등 신고서
-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일반)

제7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제1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2장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 1 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함

제도(법) 시행일

- (2008. 7. 1.)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 (2012. 5. 1.)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 (2016. 7. 1.)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2019. 1. 1.) 건설기계조종사
- (2020. 7. 1.)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 (2021. 7. 1.)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방문강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골프장 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전속퀵서비스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 (대출모집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전속대리운전기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기존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포함)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27종)

불도저	롤러	콘크리트믹서트럭	천공기
굴삭기	노상안정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항타 및 항발기
로더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자갈채취기
지게차	콘크리트벙칭플랜트	아스팔트살포기	준설선
스크레이퍼	콘크리트피니셔	골재살포기	특수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살포기	쇄석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공기압축기	

- (방문판매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화물차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관련 신고 및 신청

가. 보험관계 성립

● 일반(부과고지) 사업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 ☞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특고를 고용한 경우 **특고 관리번호 부여를 위한 별도 성립 신고 필요**
 - ※ 2021. 7. 1.부터 고용·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관리번호를 근로자 관리번호와 구분하여 운영

● 건설업 및 별목업(자진신고) 사업장

- 일반 근로자 고용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 ☞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불필요**
 - ※ 단, 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에도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별도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 필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 기존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사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입이직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Answer

2021. 7. 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지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전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함께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신고서는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및 산재보험 입·이직 신고서는 관할 특고센터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장이 자진신고사업장인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산재보험 입·이직신고서는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서는 특고센터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부과고지사업장 담당)

- 서울(강원), 부산(대구), 경인, 대전(광주) 등 4개 지역본부 관할 부과고지 사업장 종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지원, 보험료 산정 및 부과
- 문의 : 공단대표전화 1588-0075
 - 서울특고센터(서울·강원지역본부 관할): 대표전화 02-6946-0500, 팩스 0502-223-3102 등
 - 부산특고센터(부산·대구지역본부 관할) 대표전화 051-790-0300, 팩스 0502-661-1102~3
 - 경인특고센터(경인지역본부 관할): 대표전화 032-712-0500, 팩스 0502-451-1102~3
 - 대전특고센터(대전·광주지역본부 관할): 대표전화 042-718-0600, 팩스 0502-870-1102~3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자진신고사업장 담당)

- 각 지역본부 및 지사 관할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및 별목업) 종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종사)의 산재보험 가입지원, 보험료 산정 및 부과(근로자 사업장 동일)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및 이직 신고

● **신고 사유 및 시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부과고지사업장의 경우 관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입·이직신고를 하여야 함

● **입직일**

-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
- 법 시행일 이전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법 시행일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으로 주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이직일의 다음 날

● **이직일**

- 이직 또는 사망에 의한 경우: 이직 또는 사망한 날
-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폐지 또는 끝난 날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게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나중에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중에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 입직일의 전날

● **신고 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직신고서, 이직신고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입·이직신고서(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종사자)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보변경 신고

-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변경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적용제외시작일, 적용제외종료일 등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정보 취소 및 정정 신청

-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이직 등 정보가 착오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처리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취소 또는 정정 신청 가능
- 입·이직 등 정보의 취소 및 정정의 효과는 사실관계에 맞는 일자로 소급하여 발생
- 정정 정보: 입직일, 이직일, 휴업시작일, 휴업종료일, 주소, 휴대폰번호 등

마.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 결정

- **주된 사업장 결정의 의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하나의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관계를 적용하여야 함

● 주된 사업장 결정 기준

- 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노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결정
- 계속하여 둘 이상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종사자가 소득·시간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장을 변경 신청 할 수 있음

● 주된 사업장의 변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의 계속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노무를 제공하게 된 사업장에 처음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계속 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신의 종사 시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장 변경 신청가능
- 변경 전 사업장의 이직일은 변경신청일, 새로운 주된 사업장의 입직일은 변경신청일의 다음날이 됨

● 둘 이상의 사업에 중복 적용

- 나중에 입직한 사업장의 종사 직종과 먼저 입직한 사업장의 종사 직종이 서로 다르고 노무 제공 시간과 장소 등이 구분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각각 직종을 모두 적용(중복 입직)
 - ※ 중복 입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서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 하나의 직종이 금융보험업 업종과 방문판매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2022년 퀵서비스 기사 소득 및 종사시간의 기준(안)

1. 월 기준 소득 및 종사시간

가. 과반 소득 : 1,150,000원 (2021년 1,164,400원)

나. 과반 종사시간 : 93시간 (2021년 97시간)

2. 소득 및 종사시간 적용기준

가. 소득 및 종사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소득은 소속(등록)업체 사업주가 지급하는 배달 수수료를 합하여 산정한다.
- 종사시간은 업무에 종사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배송업무를 개시한 시점부터 최종 배송업무를 마친 시점까지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 배송업체별 종사시간은 해당 업체의 배달(콜)을 시작한 시점부터 다른 업체의 배달(콜)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나. 소득이나 종사시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 단위로 산정하며, 해당 월에 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2022. 1. 1.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 **퀵서비스 기사의 전속성 기준**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 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
 - 라.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 마. 소속(등록)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속(등록)업체의 업무 개시 또는 종료시간이 있는지 여부, 배달(콜)배정 등 소속(등록)업체의 배달업무 규칙이 운영되어 해당 규칙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1.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소속(등록)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 나.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이란 대리운전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말함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 **적용제외 신청 가능 사유 및 사유별 증빙서류**

신청 가능사유	증명 서류
① 부상·질병, 임신·출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②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③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	국세청 휴업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
④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한 1개월 이상 휴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사유 소멸 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당연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사유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유 소멸신고

적용제외 신청기간에 제한은 없나요?

Answer 적용제외는 1개월 이상의 휴업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1회 신청시 최장 신청가능 단위기간 1년)
 휴업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제외 신청이 아닌 ‘휴업 등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실제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이지만 신청이 늦어 적용제외 신청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 미만의 기간도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신청을 늦게하였습니다. 실제 휴업일부터 소급하여 적용제외할 수 있나요?

Answer 적용제외 기간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개시되며, 실제 휴업 사유 발생일이 과거이더라도 소급하여 적용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개시일부터 신청일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실제 휴업한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용제외 신청을 늦지 않게 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 및 상담센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종사자에 대한 입직신고 기피, 적용제외 신청 강요, 허위 날인 후 적용제외 신청 등의 위법 사례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신고센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 및 상담센터”로 신고 가능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4 | 보험료 산정

가. 보험료 산정 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 (월 보수액)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을 적용
 - ※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582,500	86,083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401,300	80,043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479,444	82,648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1,016,300	33,87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699,994	90,000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420,000	80,667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599,400	53,31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083,300	69,44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400,000	80,0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여성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931,600	64,387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537,500	51,250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597,500	53,250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392,000	46,400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2,932,000	97,73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 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4,310,000	143,66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3,937,500	131,250

나. 보험료 부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번호에 매월 부과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월 중간에 입직하거나 이직한 경우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함

다. 보험료 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가입자 판단 및 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개정으로 2019.1.1.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 포함)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기존) 콘크리트믹서트럭 →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전체

❖ **전속성 및 보험가입자 판단 기준**

- (전속성)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건설현장)에 대하여 전속성 인정
 - 여러 사업(건설현장)에 종사하는 특고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현장별/일자별로 전속성 판단
- (가입자)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원수급인

❖ **보험료 산정**

- 총 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징수법 제13조)
- 개별실적요율: 여러 사업(건설현장)에 종사하는 특고에 대한 보험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건설공사(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의 산재보험료 산정(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 개선보험료는 「총공사금액 ×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 × 산재보험료율」로 산정
- ※ 건설기계 특고의 작업비용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신고된 것으로 봄
- 확정보험료: 「[직접 고용한 근로자 보수총액+(하도급공사금액×하도급 공사 노무비율)] × 산재보험료율」
- ※ 건설기계 특고의 작업비용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신고된 것으로 봄
- ※ 단, 원수급인 건설기계 특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고용한 근로자 보수총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액을 일할계산하여 산입

■ 부과고지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액을 일할계산하여 해당 업종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라.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한 산재보험료 면제

● **제도개요**

- 미신고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직 및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의 소급신고 독려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면제해주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2021.1.5.부터 2022.12.31.까지 운영

● **면제대상**

- **(부과고지사업장)** 2021. 1. 4.까지 사유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직 또는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50% 면제
- **(자진신고사업장)** 2020. 12. 31.까지 사유발생한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50% 면제

※ 참고: 연도별 면제율

구 분	2021.1.5.~2021.12.31.기간 중 신고	2022.1.1.~2022.12.31.기간 중 신고
면제비율	100% 면제	50% 면제

● **면제방법**

- (부과고지사업장) 공단이 해당 보험료를 면제하여 사업장에 월별 보험료 부과
- (자진신고사업장) 사업장이 해당 연도 보험료 확정신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총액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에서 50% 감액하여 부과

마. 산재보험료 경감

-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일부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50% 경감
 - (대상직종)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 (적용기한) 2021. 7. 1. ~ 2022. 6. 30.(1년간 한시운영)
 - ※ 기간 내 입직신고 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 경감 적용

5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

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 단,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산재보험에 미적용 중인 사람은 대상이 아님
 - ※ 근거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2017.1.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6호)
- (혜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시중 전세 시세의 60~80% 수준,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 갱신하며 최장 30년까지 계속 거주 가능)
 - ※ 상세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나. 신청 확인서 발급 절차

- 신청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소속기관으로 확인 신청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서 식 마 당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comwel.or.kr) 메인 - 자료실 - 서식자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도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전자로 신고·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과고지사업장용

1.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등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2. 산재보험 입·이직정보 관리

- 산재보험 입직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이직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입·이직신고서(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신고내역 변경·정정·취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된사업장 계속적용·변경 신청서
- 단기노무제공내용 정정·취소신청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피보험자 고용정보 및 입이직 정보내용 취소 신청서
- 피보험자 고용정보 및 입이직 정보내용 정정 신청서

4. 기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소멸 통지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서

❖ 자진신고사업장용

- 건설업 및 별목업 사업장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이직 신고서
- 건설업 및 별목업 사업장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이직 등 정보 취소 신청서
- 건설업 및 별목업 사업장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이직 등 정보 정정신청서

제2장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7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1 고용보험 적용

가. 적용 대상

-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②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③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④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① 동일한 노무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노무제공(근로)하는 경우 근로자로 적용
 - ② ③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제3자를 통해 대행하게 하지 않고 직접 노무제공
 - ④ 적용대상 직종: 14개 직종

2021.7.1.부터 적용	2022.1.1.부터 적용
① 보험설계사, ②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교사, ⑤ 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 방문판매원, ⑩ 화물차주,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⑬ 퀵서비스기사, ⑭ 대리운전기사 (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포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설계사

☞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설계사란 전속설계사만 해당되며, 교차모집설계사(보험업법 제8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님

2. 방문강사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가정 방문에 한하며 가정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는 적용대상이 아님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3. 택배기사

-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4. 대출모집인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
 - ※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회원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전업 모집인은 적용대상이고, 제휴업체 모집인은 적용대상이 아님

6. 방문판매원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① 단단계 방문판매원 ② 일반·후원 방문판매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자가소비형(등록)방문판매원은 대상이 아니며,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이 방문판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2호(방문강사) 또는 제7호(대여제품 방문점검원)으로 적용

7.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8.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9.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호 초등학교, 제2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제3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제4호 특수학교, 제5호 각종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의 강사
 - ※ 돌봄활동교사 및 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적용대상이 아님

10. 건설기계조종사

-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등록하고 직접 운전하며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노무제공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11. 화물차주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수출입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나.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 사업주와 고정적인 화물운송 계약 외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한 일회적 계약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12. 퀵서비스기사 ★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포함

-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 다만, 택배기사에 해당하는 사람 및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제외

13. 대리운전기사 ★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포함

- ☞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보험설계사) 전속된 보험사 외에 교차모집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신고대상인가요?

Answer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전속설계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교차모집인은 같은 법 제85조로 등록하는 설계사로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모집인) 제휴업체 모집인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인가요?

Answer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신용카드모집인은 전업 모집인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회원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제휴업체모집인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학습지방문강사) 가정 외 다른 장소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인가요?

Answer 학습지강사 및 방문강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와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과 같이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지 등을 이용하여 아동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학교·학원 등 교육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는 방문강사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단, 방과후학교 강사는 해당 직종으로 별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화물차주)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화물운송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요?

Answer 사업주와 고정적인 화물운송 계약 이외의 화물정보망 등의 알선에 따른 일회적인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한 건설기계운전자만 적용되는지?

Answer 건설기계 본인 소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기계를 직접 운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고에 해당하며, 이 기준은 산재보험 가입시에도 적용됩니다.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방과후학교강사) 보험사무를 포함한 행정업무가 각 급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교육청 또는 재단으로 보험관계를 성립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nswer

비록 각종 행정업무는 각 급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공립의 경우 교육청, 사립의 경우 재단(법인)**입니다. 근로자와는 달리 노무제공자는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데, 하나의 노무제공자가 같은 교육청 또는 같은 재단 소속 2개 이상 학교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 단위로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총 보수액을 합해보아야합니다. 학교별로는 강사가 다른 학교에 노무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총 소득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며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 또는 재단의 경우 각 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사 내역을 받으면 신고대상 여부 및 보험료 원천공제 금액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므로 각 급 학교를 보험가입자로 해도 노무제공자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적용방식 및 보험가입자

- (적용방식)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연적용**
- (보험가입자) 노무제공자와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원천징수 등 의무를 짐



외국인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신고대상인가요?

Answer

외국인 노무제공자는 체류자격 코드 영주(F-2), 거주(F-5), 결혼이민(F-6)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신고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적용제외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연령과 소득으로 한정**
 - ① (연령)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적용제외**
 - 특고 고용보험 시행일(2021.7.1.) 이전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일 현재 기준 연령(65세)으로 고용보험 적용여부 판단
 - * 다만, 65세 전부터 근로자나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노무제공자는 시행일(2021.7.1.) 현재 65세 이상이라도 그 외 요건 충족시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례 연령기준에 따른 적용제외 판단

- ① 노무제공자가 2021.1.1. 노무제공계약 체결하고 2021.4.1. 65세가 된 경우
 ☞ 고용보험 제도 시행일(2021.7.1.) 기준 65세 이상이므로 적용제외
- ② 2021.1.1. ~ 2022.12.31.기간에 대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2021.7.1. 현재 65세 미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노무제공자의 경우, 2021.9.10. 65세 도달하고 2021.10월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으로 피보험자격 상실한 후 2021.11월 다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면,
 ☞ 해당 노무제공계약이 끝나기 전인 2022.12.31.까지 피보험자격 재취득 가능

- 65세 이전 고용보험 당연가입 후 노무제공계약에 단절은 없으나 소득감소로 인하여 피보험 자격 상실한 경우 → 해당 노무제공계약 종료 시까지 다시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피보험자격 재취득

② (소득)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 월보수액(노무제공자의 소득합산 신청에 따른 월보수액 포함) 80만원 이상인 경우
 * 월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중 노무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하는 보수액
-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기준 없이 모두 당연적용
-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동일)

라. 적용사업

-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미적용. 한편, **모성보호급여는 출산 전후휴가급여만 적용**

마. 보험관계의 신고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를 사용함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최초의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를 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함(보험료징수법 제11조)
-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멸신고 필요
-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2)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관리번호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번호 성립 필요
 - 근로자 또는 예술인 고용 등으로 보험관계가 기성립된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자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특고 관리번호를 별도 성립신고한 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해야함

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관련 특례 (2022.1.1.시행)

❖ **노무제공 플랫폼사업 특례란?**

- 고용보험 적용 직종인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노무제공계약 체결사업주가 아닌 플랫폼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특례**

	일반 노무제공자	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보험가입자	노무제공계약 체결 당사자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의무자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플랫폼사업자
보험료 납부의무자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플랫폼사업자

※ <참고> 용어의 정의

- ① 노무제공플랫폼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 ②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신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플랫폼이용계약을 처음 체결한 경우 계약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에 대한 신고
- **(노무제공플랫폼 계약/계약종료 사실 신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신고
- **(자료의 제공/보관)**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며,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할 경우 제공

❖ **보험사무 및 보험료 지원**

-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피보험자관리 및 징수사무대행 지원금 지급
-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각각 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

2 | 피보험자격 관리

가. 피보험자격의 구분 및 신고 의무

- (구분) 노무제공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 노무제공자와 단기 노무제공자로 구분
 - 일반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
 - 단기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
 - ※ 단,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 킥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 외 타 직종은 단기 노무제공자로서 신고하지 않음에 유의
- (신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의 변동·상실 등 관리

나. 피보험자격의 관리

● 피보험자격취득일

- ① 노무제공 시작일
 - 노무제공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한 월의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노무제공을 시작한 첫 날
- ② 소득기준(월보수액 80만원) 충족월의 초일
 - 노무제공 개시 당시(월중 계약 체결 포함)에는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어서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월보수액이 80만원을 넘어 적용대상이 된 경우 해당월의 초일

● 사례 피보험자격 취득일자의 판단

노무제공 시작일: 2021.7.25.이며, 7.25.~7.31.기간에 대한 보수 20만원, 8.1.~8.31.기간에 대한 보수 150만원인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는 2021.8.1.**

● 피보험자격상실일

- ① 실제 이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하는 경우
 - (이직월의 월보수액 80만원이상) 노무제공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날
 - (이직월의 월보수액 80만원미만)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달의 초일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사례 실제 이직으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일자 판단

- ① 2022.7월 보수액 100만원, 8월 보수액 100만원, 9월 15일 계약종료, 9월 보수액 85만원인 경우
 ☞ 피보험자격 상실일 : 9월16일(상실사유 : 계약만료, 상실사유코드 23)
- ② 2022.7월 보수액 100만원, 8월 보수액 100만원, 9월 15일 계약종료, 9월 보수액 75만원인 경우
 ☞ 피보험자격 상실일 : 9월1일(상실사유 : 소득감소, 상실사유코드 43)

② 이직하지 않았으나 월 보수액 80만원미만으로 피보험자격 상실하는 경우

- (피보험자격 상실일)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달의 초일*

* ①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이 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거나, ②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이 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월보수액 신고(월보수액 신고로 상실신고 같음)

사례 소득감소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일자 판단

- ① 2022.7월 보수액 100만원, 8월 보수액 70만원, 9월 보수액 60만원, 10월 보수액 100만원인 경우
 ☞ 상실일 : 8월 1일(상실사유 : 소득감소, 상실사유코드 43)
 ※ 실제 이직 없이 소득감소로 상실만 한 경우 월보수통보를 통한 재취득 가능: 재취득일 10월 1일
- ② 2022.7월 보수액 100만원, 8월 보수액 70만원, 9월 보수액 75만원이며 9월 15일 계약종료한 후, 11월 15일 동일 사업장에서 노무제공 개시하여 11월 보수액 100만원인 경우
 ☞ 상실일 : 8월 1일(상실사유 : 소득감소, 상실사유코드 43)
 ※ 이 때 상실 후 월보수통보만 할 경우 재취득일 11월 1일이 되므로, 정확한 노무제공 개시일자인 11월 15일자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월보수통보 전 취득일 기재하여 별도 취득신고 필요

월보수액이 80만원을 넘었다 안 넘었다 반복하는 경우 매월 취득상실신고를 반복해야 하나요?

Answer 아닙니다. 최초 취득 신고를 한 후 매월 노무제공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월보수액을 통보하면 그 결과에 따라 공단이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합니다. 다만 공단이 직권 처리하는 것은 실제 이직은 하지 않았으나 소득감소로 인해 피보험자격만을 상실하는 경우(상실사유코드: 43) 뿐이기 때문에, 실제 새로운 노무제공 개시에 따른 취득, 실제 이직으로 인한 상실 등은 별도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취득·상실처리한 노무제공자 확인

❖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로그인 → 정보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20103) → 관리번호 '특고번호' 선택 → 보험구분 '고용보험' 선택 → 근로자 구분 '특수' 선택 → 고용상태 '전체' → 보험료구분 '전체' → '조회'버튼 클릭

라.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

-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노무제공자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 종사자 지위에 따른 이중취득 가능 여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임의가입)
		상용	일용	일반	단기	일반	단기	
근로자	상용	×(①)	×(②)	○	○	○	○	△(④)
	일용	×(②)	×(①)	○	○	○	○	×(③)
예술인	일반	○	○	○	○	○	○	△(④)
	단기	○	○	○	○	○	○	×(③)
노무 제공자	일반	○	○	○	○	○	○	△(④)
	단기	○	○	○	○	○	○	×(③)
자영업자(임의가입)		△(④)	×(③)	△(④)	×(③)	△(④)	×(③)	×(③)

- ①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에 따라 월평균보수 → 월소정근로시간 多 → 근로자(가입자) 선택 순으로 취득
- ② 상용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 취득
- ③ 일용/단기 또는 자영업자 중 선택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 ④ 당연가입(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우선 취득,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유지 신청 시 이중가입 가능

마. 소득합산(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

-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의 월평균소득(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나, 같은 기간 내 다른 계약의 소득을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일 경우 노무제공자의 신청에 의해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
 - ☞ 노무제공자가 신청한 사업장에 한하여 가입대상이며, 사업주 동의 없이 자격 취득
- 소득합산 신청 조건
 - ① 합산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이 되는 달의 다음 달 1~15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 ② 신청일 현재 합산 신청한 모든 사업장에서 이직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 소득합산으로 취득한 경우 피보험자 관리
 - 합산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중복기간이 피보험자격 기간이 됨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 신청일이 아닌 '사유발생일(합산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중복기간의 초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 합산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노무제공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소득합산으로 인한 피보험자격 취득사실을 해당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에게 통지
- 소득합산으로 인한 피보험자격 취득 통지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월보수액이 8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취득일의 다음월부터 상실통지를 받기 전까지 매월 월보수액을 통보해야함(일반 취득자에 대한 월보수액 통보와 동일)

사례 노무제공자 소득합산에 의한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 여부 판단

	노무제공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A사업장	2022.1.16. ~ 3.31.	20만원	40만원	40만원	-	-	-	-
B사업장	2022.1.1. ~ 5.31.	10만원	90만원	60만원	60만원	65만원	-	-
	2022.7.1. ~							20만원
C사업장	2022.3.1. ~	-	-	20만원	30만원	20만원	20만원	70만원
총 소득		30만원	130만원	120만원	90만원	85만원	20만원	90만원
합산신청 가능 여부 (신청 가능 월보수액)		X	X	○ (80만원)	○ (90만원)	○ (85만원)	X	○ (90만원)

❖ 소득합산 가능월: 3월, 4월, 5월, 7월

❖ 월별 소득합산 신청 가능 여부 세부 검토

- (1월분 월보수액) 합산액이 8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 소득합산 신청대상 아님
- (2월분 월보수액) 노무제공한 A, B사업장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장(B사업장)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므로 B사업장만 당연적용 ❖ 소득합산 신청대상이 아님
- (3월분 월보수액) A, B, C 세 사업장 중 A사업장의 노무제공은 신청일(4.1. ~ 4.15.) 현재 종료되었으므로 합산 불가 ❖ 소득합산 신청은 가능하나 합산액은 B, C사업장의 합산소득인 80만원(취득일 3.1.)
 ※ 소득합산결과 및 피보험자격취득 통지를 통해 사업장 소속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적용되었음을 확인한 각 사업장(B,C)은 취득일이 속한 월의 다음월인 4월분 월보수액부터 월보수액통보서 제출
- (4~5월분 월보수액) 각 월 월보수액 통보 결과 합산 소득 여전히 80만원 이상이므로 취득상태 유지
- (6월분 월보수액) 합산액이 80만원 미만이 되었으므로 취득한 모든 사업장(B, C)에서 상실(상실일 6.1.)
 ※ 월보수액 통보만 하면 그 결과를 통해 공단이 직권 상실처리하므로 상실신고 불필요
- (7월분 월보수액) 상실된 후 B, C사업장 합산액이 다시 80만원을 넘은 경우 7월분 월보수액에 대하여 합산신청 가능하나, 이 경우 소득합산신청서를 새로이 제출해야함

바. 피보험자(보험관계) 변경·정정 신고 및 확인 청구

- (변경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에는 변경일이나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확인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는 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 공단은 확인청구서를 접수하면 실제 노무제공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취득·상실·변경·정정 등 확인 결과에 따른 직권처리 후 결과를 통지

3 | 보험료 산정·부과

가. 보험료 부담주체 및 보험료율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 0.7% 균등 부담
 - ※ 2022년 7월 1일 이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각 0.8% 균등 부담(실업급여요율이 1.4%에서 1.6%로 인상)

노무제공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왜 다른가요?

Answer 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적용하고 육아휴직급여 등은 적용하지 않아 고용보험 요율이 근로자보다 낮습니다.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14/1,000,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16/1,000(단, 2022년 7월 1일부터 각 2/1,000씩 인상)

나. 보수

-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text{보수액} = (\text{사업소득, 기타소득}) - \text{비과세소득} - \text{필요경비}$$

- (필요경비)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text{필요경비} = \{(\text{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text{「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times \text{직종별 공제율}$$

- 직종별 공제율(국세청 기준경비율과 동일)

직종	공제율(%)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3.9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24.4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0.2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23.5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3.5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4.4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4.4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26.8
9.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8.4
10.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0.4
11.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21.4

●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

-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려운 두 직종(건설기계종사자·화물차주)에 대해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
- 월 기준보수 : 건설기계조종사 2,479,444원, 화물차주 4,310,000원
- ※ 월중 취득·상실의 경우 일할 계산: 월별보험료 = 월 기준보수 × (노무제공일수/월의 총일수) × 보험료율
- 일 기준보수(단기노무제공자): 건설기계조종사 82,648원(월 기준보수액 ÷ 30)

(참고) 기준보수 적용 직종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 사업장에 취득되어 있는 경우 기준보수 적용 방법
 ☞ 월 기준보수액을 사업주 수로 나누어 적용(법정신고기한 내 취득신고한 경우 실제 중복월부터 적용하고 지연하여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월부터 적용)
 예) 화물차주가 2개 사업주와 계약한 경우: 사업장별 기준보수는 각 2,155,000원(4,310,000원/2개소)

다. 월별보험료 산정 및 부과

- 노무제공자 개인별 월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을 곱하여 개인별 보험료 산출 후 이를 합산하여 사업장 단위로 매월 부과

$$\text{월별보험료} = (\text{노무제공자 개인별 월보수액} \times 1.4\%^*) \text{의 합계}$$

* 2022년 7월 1일부터 1.6%로 실업급여 요율 인상

- 업무수행 절차

수행주체	일정	처리업무
사업장	매월 15일까지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
사업장	매월 말일까지	전월보수액 통보
		↓
공단	매월 15일~18일	월별보험료 산정 및 부과자료 구축
		↓
건강보험공단	매월 22일	고지서 출력 및 발송
		↓
사업장	매 익월 10일	보험료 납부

예) 7월 월보수액 8.31.까지 통보 → 9.15. 보험료구축 및 고지 → 납부기한 10.10.

- (보험료 부과 하한 기준보수) 133만원
 - 신고 소득이 80만원~133만원인 경우 기준보수(133만원)로 보험료 부과
 - ※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80만원)보다 적은 경우 적용제외 대상으로 보험료 미부과
- (보험료 상한액) 월 441,150원(연 5,293,800원)
- (월보수액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최종 통보한 보수액으로 부과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이후 일부 월에 대해서 월보수액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최종 통보한 월보수액으로 부과
 - 예) 2022년 5월 월보수액 통보, 6월 이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5월 통보 월보수액으로 6월 보험료 부과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만 하고 월보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취득신고서 상의 월보수액으로 부과
 - 예) 2022년 3월 1일 취득한 노무제공자 김○○의 월보수 통보를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 취득신고 시 기재한 월보수액으로 3월 보험료 부과('22년 5월 부과, 납부기한-'22.6.10.)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취득신고 시 월보수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면 이후 월보수액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아닙니다. 취득신고 시 기재한 월보수액은 적용 대상여부(월보수액 80만원 이상)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월평균보수가 아닌 실제 지급 받은 월보수액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매월 보험료를 정산하며, 그만큼 정확한 월보수액을 노무제공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 통보한 월보수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Answer 월보수액을 수정하는 서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정이 필요한 노무제공자의 해당 월 보수를 재 통보하면 수정된 금액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감액 됩니다.



토탈서비스로 월보수액 통보 시 월보수액과 월보수총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보수액은 사업장 신고금액(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이며, 월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토탈서비스로 월보수액 80만원을 입력한 경우, 하한액 기준보수인 133만원이 월보수총액으로 표기됩니다.

라. 보험료 원천공제 및 부과·납부

- (원천공제)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 및 납부
- (부과·납부)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마. 보험료 정산

- (월보수액 통보에 따른 정산) 매월 사업주의 월보수액 통보로 매월 정산 실시
 - (보수총액신고) 매년 3월15일까지 사업주는 전년도 월보수액 통보 내역 확인 신고
 - 통보 누락 월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는 경우, 해당 월보수액 통보 후 확인서 제출
 - 신고방법: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 ※ 단, 신고대상 노무제공자의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서(서면제출)로 미신고(누락)월에 대한 월보수액 통보 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도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nswer 그렇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실제 월보수액을 매월 통보하기는 하나,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전년도 월보수 통보 완료자 명단 및 통보금액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신고(누락)자나 신고 누락월이 있는 경우 해당 월보수액 통보를 완료한 이후에 전년도 통보 내용을 확인하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요건**

- (지원대상 사업 규모) 근로자 10인 미만(사업 규모 판단시 노무제공자는 미포함)

참고) 지원대상 규모 판단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 (지원대상 보수 수준) 월보수액 또는 직종별 기준보수 230만원 미만
 - ※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보수액(직종별 기준보수 포함) 합산 금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 사업주가 월보수액을 기한 내 통보한 노무제공자에 한하여 지원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지원
- (지원 제한) 재산 또는 소득이 고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시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한

구분	지원제한 기준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원 이상
종합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

* 제한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해당 노무제공자의 이전 고용보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
 - ※ 근로자·노무제공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노무제공자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증취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4 | 실업급여

가. 수급요건

- 실업(피보험자격 상실)하였을 것
 -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충족여부 판단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다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 인정
 - 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30% 이상 감소
 - ②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나. 대기기간

-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 부지급
 - 다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 부지급

다. 지급수준

-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
 - 수급자격 인정 관련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다만, 이직 당시의 기준보수 일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보수 일액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하게 설정, 하한액은 별도 규정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 하한액

라.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수급자격 인정 관련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유지기간으로 산정(이직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하되,
 - 단기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기간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
- (소정급여일수)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5 | 출산전후급여등

가. 수급요건

- (수급요건) 출산(유·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유·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유·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지급기간)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 (지급수준) 출산(유·사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액의 100%(상한 월 200만원)

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상한액 2022년 기준 월 20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1호)
- (지급기간)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서울, 부산, 경인, 대전 등 4개 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부과고지사업장에 한함) 고용보험 가입지원, 보험료 산정 및 부과
- 연락처: 공단대표전화 1588-0075
 - 서울특고센터(서울·강원지역본부 관할): 대표전화 02-6946-0500, 팩스 0502-223-3102 등
 - 부산특고센터(부산·대구지역본부 관할) 대표전화 051-790-0300, 팩스 0502-661-1102~3
 - 경인특고센터(경인지역본부 관할): 대표전화 032-712-0500, 팩스 0502-451-1102~3
 - 대전특고센터(대전·광주지역본부 관할): 대표전화 042-718-0600, 팩스 0502-870-1102~3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비교

구분		근로자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포함)
	주요 적용제외	주 15시간 미만자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월평균소득(월보수액) 80만원 미만자(단, 소득합산신청에 의한 80만원 이상시 적용)
		65세 이후 신규자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급여 1.6% (2022.7.1.부터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0.85%	· 실업급여 1.4% (2022.7.1.부터 1.6%)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미적용
실업급여 지급	수급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지급수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일 ~ 270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인정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수급요건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출산(유산, 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일부	출산일 전후 90일

서 식 마 당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comwel.or.kr) 메인 - 자료실 - 서식자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전자로 신고·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등

-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
-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 개시신고서
-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 종료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단기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 신고내역 변경·정정·취소

-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 피보험자 고용정보 및 입·이직정보 내용 취소 신청서(노무제공자)
- 피보험자 고용정보 및 입·이직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노무제공자)
- 단기노무제공내용 정정·취소신청서(노무제공자)

❖ 보험료 부과·정산

-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
-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서

❖ 기타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노무제공사업 사업주,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제8편

산재 · 고용보험 적용 특례

- 제1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제2장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제3장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제4장 중·소기업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특례
- 제6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 1 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 특례

가. 적용대상

-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당연 및 임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 (일부 지급 포함) 받는 경우
 - ※ 국내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고 해외파견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채용과 동시에 해외 현지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 불가
 - ※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나. 판단기준

- ▶ 【지휘·명령】 주체가 해외사용자인 경우 ⇒ 파견
- ▶ 【지휘·명령】 주체가 국내사용자인 경우 ⇒ 출장

■ 지휘·명령 주체 판단 기준

지휘·명령 주체는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되,

①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①에 의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②, ③을 순차적으로 판단

- ① (업무지시) 해외 업무 수행과정에서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음
 - * 문서, 메일, 전화 등 지시의 방법은 불문하고 주로 누구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지에 따라 결정
 - * 업무 지시의 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근무자로부터 업무 관련 정기 또는 수시 보고를 받는 사용자가 업무 지시 관련성이 큰 것으로 봄(보고 형식에 관계 없음)
- ② (취업규칙) 해외 근무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 등을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가 결정·시행
 - 명문화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근무 중 출장업무 수행 또는 휴가 사용 시 승인 등 복무관리를 누구에게 받는지에 따라 결정
- ③ (인사관리) 해외사업장 내에서의 부서 이동 등 인사관리가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짐

2 |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가. 신청단위

- 해외파견 사업장, 고용주체, 계약단위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 파견 사업이 건설업 및 별목업인 경우와 그 외 사업인 경우 보험료 신고 및 납부방식을 달리하므로 각각 구분하여 보험가입 신청 필요
 - ※ 해외파견 건설업의 경우 국내 건설업의 적용과 달리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보험가입을 신청해야 함이 원칙이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소속 해외파견자를 포함하여 보험 가입 신청도 가능

나. 신청방법

-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해외파견자의 명단
 -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해외파견기간

다. 가입승인

-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닌 경우 승인 가능

3 | 보험관계 성립·변경 및 소멸

가. 보험관계 성립

-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임
 - ※ 단,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 현재 파견예정자의 경우에는 출국일이 성립일
 - 파견예정자 : 출국일
 - 파견된 자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나. 보험관계 변경

- 해외파견자 보험관계 성립 후 승인받은 해외파견자의 명단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바로 제출해야 함
- 변경신고사항: 보험 가입신청시 기재사항에 대하여 변경 신고

다. 보험관계 해지

-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승인 이후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단,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 보험관계의 소멸일
 - 해외파견 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 날
 - 해외파견자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으로 공단이 해지를 승인한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해외파견자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 보험료 산정

가.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 및 산재보험료율

-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 국내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료율) 사업의 종류 및 국가(지역)에 구분 없이 단일 요율을 적용
 - ※ 2022년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건설·별목업 포함한 전 사업) : 15.0/1,000(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1.0/1,000 포함)

나. 보험료의 신고·납부

- 부과지 대상 : 건설업 및 별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

$$\text{월별 보험료} = \text{월평균 보수} \times \text{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 자진신고 대상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별목업

$$\text{연간 보험료} = \text{연간 보수총액} \times \text{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 보험료신고서 신고(제출) 후 자진 납부

제2장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6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1 제도취지

- 산업현장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현장실습 및 작업을 동시에 행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현장실습생의 적용범위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고교, 대학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상 학교에서 시행하는 국내 모든 현장 실습을 이수 중인 사람을 말함
 - 근로자 없이 1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적용제외 사업에서 일하는 현장실습생은 적용 대상 아님. 단, 보험료징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제적용 사업장은 적용 대상
 - ※ (제외) 학교 외 학원 등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 단순 견학,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등
-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현장실습생의 성명,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수당, 직업교육훈련기관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3 보험료 산정

-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가입자가 지급한 훈련 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봄



'훈련수당 등 모든금품'의 산정방법?

Answer

사업주가 현장실습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이든 지급하는 일체의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학교 등 사업주가 아닌 자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됩니다.

제3장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 학생연구자의 정의 및 범위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음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 참여 활동 포함)하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 수료생 및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을 포함
- * 공학·자연·의약계열과 일부 교육계열(공학·자연) 포함

2 학생연구자의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성립

- 학생연구자가 소속한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 등*을 보험 가입자로 적용
 -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대학원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 대학 등의 기존 산재보험관계와는 분리하여 학생연구자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하고 관리번호를 부여
 - 다만, 대학본부와 위험권이 달라 캠퍼스 등이 이미 별도 성립되어 있는 경우 캠퍼스 등 소속 학생연구자는 본교 소속 학생연구자와 분리하여 적용

3 학생연구자 관련 신고

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

- 3월·9월 말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을 다음달 15일(1학기 4월 15일, 2학기 10월 15일)까지 제출
- ※ 2022. 1. 1. 제도 시행 당시의 학생연구자는 2022. 2. 15.까지 신고

나.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 신고

- 신고 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학생연구자 추가 해당·비해당)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중단, 학적 변동(휴학 등), 질병 등 개인사정 등
 - * 학생연구자 '비해당일'은 학생연구자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의 다음날

산재보험 가입기간

- 3월말 기준 학생연구자(1학기): 3.1. ~ 8.31.
- 9월말 기준 학생연구자(2학기): 9.1. ~ 다음 연도 2월 말일

다. 학생연구자 정보 변경 신고

- 학위과정 등 학생연구자 개개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정보 변경 신고
- ※ 보험료 산정 보수는 고용부가 고시하는 학위과정별 기준보수이므로 '석·박사통합과정 → 석사과정' 등 학위과정이 변경된 경우 필수 신고

4 | 보험료 산정

가. 보험료 산정 기준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대학·연구기관 등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 월 보수액 (단위 : 원)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1,250,000	41,660
석사·전문기술석사, 학·석사통합과정	1,000,000	33,330
전문학사·학사과정	300,000	10,000



- 산재보험료율: 학생연구자가 소속한 대학·연구기관 등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7/1000(출퇴근재해요율 포함, '22년 기준) 적용
- ※ 대학 등이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인 경우 학생연구자도 동일 요율 적용

유의사항

국·공립대학 학생연구자의 경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닌 ‘교육서비스업’의 요율 적용

나. 보험료 부담

-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전액 부담

다. 보험료 납부

- 대학·연구기관 등은 학생연구자의 월 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

제4장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8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1 제도취지

- 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포함)등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적용범위

가. 중·소기업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 ※ 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 대상

나. 가족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¹⁾으로, 특례가입대상 사업장²⁾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³⁾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1)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법률상 배우자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민법」제767조, 제777조)
 - 2)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3)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을 것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 적용 대상 확대 경과

●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특례의 적용 대상 확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시행일: 2021.6.9.)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의 요건을 갖춘 노무제공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금속제조업 등 12개 업종 국한	전체 업종으로 확대	

3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 제출서류

-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 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

※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퀵서비스업자(비전속 퀵서비스기사)'는 가입 신청서 상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에 답변 필수

-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등은 보험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주(명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실제 사업주)이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 배우자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실제 사업주 여부 확인: 실제 사업주 확인서(자필 확인서)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중·소기업사업주중 관련 법에 따른 면허 보유가 필수인 직종은 자격요건을 추가 확인

- ① 명의 사업주가 관련법에 따른 사업자 해당 여부
- ② 실제 사업주가 관련법에 따른 운전(조종) 등 면허 보유 여부

● 가족종사자의 경우 「가입신청 확인서」 및 가족관계를 증빙할 서류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확인, 신청인이 사업주의 동거친족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 중·소기업 사업주가 둘 이상(공동 대표인 경우)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하여야 산재보험 보호가 가능
 - 동일 사업장에서 다수의 가족종사자가 보험가입 신청 시 보험가입자별로 성립
- 중·소기업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하여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 보호가 가능
 -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면서 하나의 사업에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보호되지 않음
 - 가족종사자도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 모두 가입하여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 보호가 가능
- 공단은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 보험관계 성립일 :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건강진단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 등이 특정 업무(분진·진동·납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 종사자인 경우 아래 절차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됨

※ 특수건강진단 절차: (중·소기업 사업주등) 건강진단대상 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등 산재보험 가입신청
 ⇒ (공단 소속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검진 의뢰 ⇒ (진단기관) 검진 시행 후 10일 이내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및 건강진단 비용 청구 ⇒ (공단 소속기관) 건강진단 비용 지급(공단이 별도 부담)

4 | 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일

-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공단이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음
- 보험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근로자를 사용하였던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 해당 사업에서 가족종사자가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하게 된 날
 - 가족종사자가 혼인관계(사실혼 포함) 종료, 파양 등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봄

5 | 보험료 산정

● 월 보험료 = 월 단위 보수액* × 보험료율

*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 보험료율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포함). 따라서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면 중·소기업 사업주의 요율도 변경됨
 -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예.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각의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
 -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소멸하는 경우와 등급 변경 신청 기간 내 등급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그 월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
-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 등은 보험 연도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보험 연도의 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월 보수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받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함
-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함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 지급제한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통상적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1. 개요: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아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2. 직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퀵서비스업자(비전속 퀵서비스기사)
3. 기준: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차량 등의 차고를 보유한 경우 적용 제외
4. 적용: 주거지 내 차고를 보유한 경우 이외에는 통상적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이 적용
5. 비교: 적용 제외일 경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만 부과(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1.0/1,000 미부과)

6 | 관련 고시

2022년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116,740
5등급	3,936,900	131,230
6등급	4,371,600	145,720
7등급	4,806,300	160,210
8등급	5,241,000	174,700
9등급	5,675,700	189,190
10등급	6,110,400	203,680
11등급	6,545,100	218,170
12등급	6,979,800	232,660

2022년도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116,740
5등급	3,936,900	131,230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특례



1 제도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산재보험법 특례 적용

가. 적용대상 및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나. 보험가입자

- 자활급여 수급자에 자활급여를 지급하는 자활보장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등
 - 한편, 비영리법인은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의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보험가입자임

- 또한, 광역자활공동체 또는 지역자활공동체 중 자활수급자 스스로 사업체를 형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동체가 보험가입자가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12. 8. 2.부터는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변경

다.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산정 기초

-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

3 | 고용보험법 특례 적용

가. 적용대상 및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고
 -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됨
 - 다만,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자활근로사업 미참여시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적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타 사업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타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우선하며,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활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가 타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통상 순위에 따름 (자활사업 및 타 사업 중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우선)

구 분	피보험자격 취득 사업
차상위계층 자활급여 수급자 & 타 사업 근로자	자활사업 및 타 사업 중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활급여 수급자 & 타 사업 근로자	타 사업

나. 보험관계 적용 및 보험료 산정·부과 등

● 보험가입자

- 자활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자체 수행) 또는 지역자활센터 등 (위탁 수행)이 보험가입자임
 - ※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장기관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위탁기관을 사업주로 봄

● 보험료 산정·부과

- 자활급여 수급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자활급여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활센터 단위로 가입된 고용보험 관리번호에 대하여 월별 보험료를 부과·고지

● 사업주의 보장자격 변경신고 제도

- 자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자격(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외 수급자)에 따라 실업급여 사업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보장자격 변동 여부 관리 필요
- 이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가 사업 참여 도중 소득변동 등에 따라 보장자격이 변동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변경된 보장자격을 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지사(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함

제6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6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

가.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

-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개인 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 ③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
 - ※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 ※ 2021.7.1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등 포함)와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이중취득가능
- ④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내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봄

나. 가입요건

-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경우에는 가입 불가
- ②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 ※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법인 아닌 자의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등)에서 소속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 ⇒ 임의가입 고용보험 소멸시 자영업자 보험관계도 소멸 됨

2 | 보험관계 성립 및 변경

가. 보험관계 성립

- (보험가입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 가입대상 자영업자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
 - ※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 불필요
 - 가입신청서에는 보험료 및 본인이 원하는 혜택 수준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보험관계 성립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며, 보험관계 성립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됨

나. 보험관계 변경

- 보험가입 자영업자는 가입 승인 후 보험관계(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

3 | 보험관계 소멸

가. 보험관계 소멸 사유

- ① 당연 소멸
 - 폐업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19.1.15.부터 적용)
 - 임금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희망시 포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신청 시 자영업자 보험관계도 해지
- ② 임의 소멸
 - 자영업자의 보험관계 해지 신청(가입연도 중에도 해지 가능)
 - 보험관계에 대한 공단의 소멸 결정·통지

나. 보험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일 당일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마지막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

4 | 보험료 산정

가. 보험료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 보험가입 자영업자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 불가
-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희망하는 기준보수액을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이 그대로 유지됨

나. 보험료 산정방식

- 월 보험료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0.25%)

다. 보험료 납부방식

- (부과고지 방식)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

라. 관련 고시

2022년도 등급별 자영업자 월 고용보험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6178호)

(단위 : 원)

등급	기준보수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0.25%)	합계 (2.25%)
1등급	1,820,000	36,400	4,550	40,950
2등급	2,080,000	41,600	5,200	46,800
3등급	2,340,000	46,800	5,850	52,650
4등급	2,600,000	52,000	6,500	58,500
5등급	2,860,000	57,200	7,150	64,350
6등급	3,120,000	62,400	7,800	70,200
7등급	3,380,000	67,600	8,450	76,050

※ 성립일이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 2012. 1. 21. 이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경우의 2022년도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월)은 2,600,000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별로 30~50% 지원합니다.
 - 신청 및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go.sbiz.or.kr)
- 각 지자체
 - 지자체별 지원 대상, 지원액 상이
 - 지원사업 시행 지자체: 경상남도, 대전시, 서울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부산시, 충청남도, 울산시

5 | 실업급여 지급

가. 실업급여 수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 하였을 것(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
 - ※ 신청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함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나. 실업급여 일수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60%)을 정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지급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가입기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다. 신청절차

- 폐업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서 식 마 당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comwel.or.kr) 메인 - 자료실 - 서식자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달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전자로 신고·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일반사업·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 일반사업·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청서

❖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
-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

❖ 중·소기업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신고서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

제9편

벌칙 등

1. 과태료
2. 가산금
3. 연체금
4. 보험급여액의 징수



1 과태료

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 제44조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 제45조 제1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16조의 10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근로자 고용·종료·전보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단, 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경우는 100만원 이하

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관련 과태료

- 위반행위의 종류
 - 미신고 : 취득 등의 신고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해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도 미신고에 포함
 - 거짓신고 : 신고한 취득 등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상시근로자수 :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의 전월 말일 피보험자수
※ 단, 미신고 및 지연신고의 경우 누락되어 있던 피보험자수를 합산
※ 건설현장은 노동보험시스템의 사업장 정보상의 공사금액 기준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경과]

구 분	1000인 이상 (공사금액 2000억원이상)	300인 이상 (공사금액 500억원이상)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이상)	5인 이상 (공사금액 5억원이상)	5인 미만 (공사금액 5억원미만)
1년 이상	'11.1월	'11.1월	'11.1월	'11.1월	'11.1월
6월 이상~1년 미만	'11.1월	'11.1월	'11.7월	'12.1월	'12.7월
3월 이상~6월 미만	'11.1월	'11.7월	'12.1월	'12.7월	즉시 부과 유예
1월 이상~3월 미만	'11.7월	'12.1월	'12.7월	'13.1월	

● 위반행위의 발생일 및 위반횟수

-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의 행위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의 행위일은 거짓으로 신고한 날

2 | 가산금

- 가산금은 사업주에게 확정보험료 성실신고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반한 경우 범칙금적 성격으로 보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임(자진신고 사업장에 적용)
- 가산금 산정방식
 -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다음 보험연도 3월31일 또는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달라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징수 보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에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금의 50% 경감
- 가산금 부과 예외
 - 가산금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 연체금

- 연체금이란 사업주가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법상의 지연이자 및 벌과금적 성격으로 보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임

● 연체금 산정방식

구 분		현 행 (납부기한 2021.1.25.까지의 보험료)	개 정 (납부기한 2021.1.26.이후 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 30일까지	일단위로 미납 보험료의 1/1,000 가산	일단위로 미납 보험료의 1/1,500 가산
	31일 ~ 210일까지	일단위로 미납 보험료의 1/3,000 가산	일단위로 미납 보험료의 1/6,000 가산
	최대	9% 이내	5% 이내

※ 고용·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비율 및 상한을 동일하게 하면서, 보험료 미납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 위 표는 2021.1.8.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으며, 2021.1.26. 공포

● 연체금 부과 예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가 있는 경우
- 연체금, 가산금 및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 금액이 체납된 경우
-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 보험급여액의 징수

가. 의의

-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함

나. 징수요건

-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대상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급여징수액 :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의 50/100 해당액

- 징수금 상한액 설정 :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함
-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대상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급여징수액 : 재해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10/100 해당액
 - 징수금 상한액 설정 :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50/100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함
 -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함

다. 보험급여액의 징수

- 가입을 게을리한 기간과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징수금을 각각의 요건에 맞게 징수하나, 그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상한액을 설정
 - ※ 상한액 설정으로 보험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며,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에 유의
 - ☞ 상한액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료가 월별 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은 최초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봄
- 징수사유 경합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

제10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 제1장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추진 배경 및 기본원칙
- 제2장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 제3장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 제4장 지급액 산정 및 지원금 지급
- 제5장 이의신청
- 제6장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처리
- 제7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지원 기준
- 제8장 신청서 접수
- 제9장 참고사항



제 1 장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추진 배경 및 기본원칙



1 | 사업 추진 배경

-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
 - * (2018년) 7,530원 → (2019년) 8,350원 → (2020년) 8,590원 → (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

2 | 2022년 사업 기본 원칙

-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일괄 다시 제출받아 요건 재검증
 -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을 현행화
 - * 2019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 신청 내용을 토대로 지원 (최저 임금 준수 확인서만 징구)
- 지원기간 조정
 - 2022년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2022년 5월 근로분까지 지급
- 지원대상 조정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원규모를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정
 - 100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타 사회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더라도 고령자·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에서 제외
- 2018~2021년 지원기간 도중 고용조정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사업(주), 부정수급 자진신고, 자진반납 사업(주) 등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재신청 가능
 - 다만,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하여 2018~2021년도 지원금에 대해 제재부기금이 부과된 사업(주)는 2021년도에도 신청 및 지급을 제한

제2장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제9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1 |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개요

- (지원)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사업주 및 법인
- (지원 제외) 30명 미만 기업인 경우에도 다음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고소득 사업주 ②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이거나 임금체불 발생 사업주 ③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④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재정지원 받는 사업주 ⑤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⑥최초 지원대상일 이후 고용조정 사업주(불가피한 고용조정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 (예외) ①공동주택 경비·청소원 ②55세 이상 고령자 ③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 근로자, ④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취약계층은 30인 이상도 지원

2 | [사업주 요건1] 30명 미만 사업주

가. 정의

- 지급을 희망하는 월(이하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일 것
 -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근로수를 산정할 수 없는 사업장(사업운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급희망월 전월까지의 평균 근로자수로 산정
- *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급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일 이전 특정월을 지급희망월로 선택하면 해당하는 달부터 지원금이 지원됨

나. 산정방식

- 상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 중인 피보험자
 - 휴직근로자를 포함하되,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는 제외
- * 상용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이고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고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

10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 일용근로자: 해당월 근로내용 신고된 일용근로자 연인원을 22.3으로 나눈 수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 사업주 신고(근로계약서 확인)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3개월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0.5명으로 산정, 지원이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은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다. 산정단위

- (일반원칙)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
- (예외)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제1호에 따름
 - 법인의 지사·지부·지회·협회 등이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독립성 여부는 '비영리법인 회원단체 독립성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
 - ① 지사에서 독립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해당 근로자와 지사의 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경우 → 해당 내용을 소명(입증)하는 경우 해당 지사 단위로 산정
 - ▶ 위와 같이 규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지(점)사 단위로 30인 미만이어야 하며, 고소득 사업주 요건은 해당 법인 단위별로 적용하여 고소득 법인은 지원 제외하고, 고용보험이 별도로 성립(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관리번호 별도 성립)되어 있어야 함
- 지급희망월 기준 사업규모가 지원기준(30명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희망월을 재선택하여 다시 신청 가능

라. 지원 제외

- (인위적 감원 기업 제외) 사업규모 판단기간 중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거나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상실코드 23번)등 인위적 감원 인원(지급희망월 이전 3개월간, 퇴사일 기준)을 포함하여 30인 이상인 경우 → 인위적 감원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제외
- (인위적 분할 기업 제외) 지원기준 사업규모를 맞추기 위하여 기존 30명 이상의 사업을 2개 이상의 사업으로 분할한 경우 지원 제외

마. 지원 이후 근로자수 변동시 지원 기준

- 지원대상이 된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명 이상이 되더라도, 29명까지는 계속 지원
 - 30명 이상 신청시 [지급금액이 많고 → 월평균보수가 낮고 → 입사가 빠른 →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3 | [사업주 요건1-1] (예외)취약계층 중심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 대상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 사회적기업 등 종사자, 고용위기지역·산업 위기대응지역 종사자

나. 지원범위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하되, 지원한도는 99인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주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하되, 지원한도는 99인까지 지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100인 이상 기관(타 사회서비스 병행 제공기관 포함)은 **고령자·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 (300인 미만) 대상에서 제외**
- (55세 이상 고령자)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하되, 지원한도는 99인까지 지원
 - 1967.12.31. 이전 출생자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종사자)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하되, 지원한도는 99인까지 지원
 - (고용위기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2021.12월 현재)
 - (산업위기대응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7조에 따라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는 특정 시·군·구에 대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 * 현 고용위기지역 + 전남 해남군(2021.12월 현재)

10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다. 지원한도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한도 제한 없이 지원, 이외 지원대상 확대 사업(주)에 대해서는 99인까지 지원

라. 30인 이상, 100인·300인 미만 판단기준

- (30인 이상)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노동자수가 30인 이상
- (100인·300인 미만)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노동자수가 100인·300인 미만
 - 100인·300인 미만 여부는 최초 신청(심사) 시 1회 확인하고, 지원기간 도중 100인·300인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
 - * 1개 사업(주)별 매월 지원한도는 99인까지로 제한

마.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 이미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
 -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사업 지원내역과 지원근로자를 특정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나의 시설이 사회적기업·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활동지원을 중복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한도는 최대 매월 99인으로 제한

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의 경우

- 본사 또는 지사의 고용보험 관리번호(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최초 신청 당시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 본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지사가 위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지사는 해당되지 않음
- 타 지역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 다음달부터 적용(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종사자) 300인 미만까지 지원
-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전북 지역 내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도 동일하게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하되, 지원한도는 99인까지 지원

- 연도 중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한해서는 30인 이상도 지원
 - 기 지원받고 있거나, 신청하여 심사 중인 사업(주)도 연말까지 계속 지원

4 | [사업주 요건2] 고소득 사업주가 아닐 것

가. 정의

- 개인: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법인: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고소득 사업주 판단 기준

- 고소득 사업주 요건은 최초 신청 또는 재신청 심사시 1회 판단하고, 개인사업자가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합산한 과세소득금액으로 확인
 - 2022.1.1.~6.30. 신청자 → 2020년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 심사단계에서 사업주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 (개인사업주) 2020년도분 국세청 신고 자료(국세청 확인필)를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 (법인사업주) 2020년도분(3월·6월·9월 결산 법인은 2020년도에 신고 의무가 있는 당기분) 국세청 신고 자료(국세청 확인필)을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 판단예시

- 2022년 6월 이전 지원금 신청한 6월 결산 법인이 이의제기 하는 경우, 2019.7.1.~2020.6.30. 기간(당기)을 2020.9월말 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요건 판단

10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5 | [사업주 요건3]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가. 정의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 (개인) 공동사업주를 포함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공개된 명단 지원 제외
 - (법인) 법인등록번호 기준 공개된 명단 지원 제외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제도 개요

- ◇ 명단공개대상(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명단공개 기준일(매년 8.31)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
- ◇ 내용 및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 3)
 - ① 내용: 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3년간 체불총액
 - ② 방법: 관보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관서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
 - ③ 기간: 3년 (8.31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 후 매년 1~2회 공개)

나. 임금체불 사업주 처리 방법

- 2022년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공개된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2022년도 중 임금체불로 명단공개기간이 종료하더라도 2022년에는 지원 배제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월(지원월분)부터 지원 중단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 중 2018년 이후 임금체불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고용노동부는 공단으로 통보하고 공단은 통보된 달(전산입수달 지원월분)부터 연도 내 계속 지원 중단
 -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은 안정자금이 실질적 부담주체인 입주자(시설주) 등에게 지원되므로 용역업체 사업주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계속 지원

6 | [사업주 요건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지원 제외되는 공공기관 기준 동일)

7 | [사업주 요건5]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가. 정의

-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중복지원 방지차원에서 지원배제

나. 지원배제 범위

- **(재정지원 사업주 배제)** 국가 등의 재정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주)는 동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원에서 제외
 -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대다수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직접지원 + 바우처)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주)의 경우, 그 사업(주) 지원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주)>

- ① 정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 * 노인·아동·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일반·결핵한센인·한부모가족·여성·다문화가족 등
- ②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 인력개발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국방취업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설인력종합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재향군인회, 생활체육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농업인 종합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지방문화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관, 청소년수련관 등
- ③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 ④ 기타 위에 준하여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 **(재정지원 근로자 배제)**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및 사회적기업·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경우, 재정지원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의 최저임금 이상 여부에 관계 없이 지원 배제
 - 국가 재정지원과 더불어 사업(주)의 경영활동에 따른 이윤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자체 재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바,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인건비 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를 첨부하여 제출 시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지원

10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 2020년 30인 미만으로 지원이 조정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복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타 사회서비스기관 지원 시 재정중복 여부 확인 필요
- 30인 이상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우선 배제하고, ①노인장기요양 이외에 가사·간병방문지원 기관 및 사회적기업·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 등을 수행할 경우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인건비 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를 첨부하여 제출 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지원
 - ②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확인 후 지원
- 2022년부터 100인 미만으로 지원이 조정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타 사회서비스제공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100인 이상 사업장은 지원 배제
- (사업 참여자 배제) 위 재정지원 사업주 배제 및 재정지원 근로자 배제 이외에 국가 등에서 인건비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
 - 국가 등의 인건비 재정지원은 전액 또는 일부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배제
 - 국가 등으로부터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방지 차원에서 지원 배제
 - * 재정지원사업 참여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시 확인 후 지원

〈인건비 전액 지원 판단 예시〉

- ① 월급제: 매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시간을 곱한 금액
 - * 예시①)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시: 최저임금(2022년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이상
 - * 예시②) 1일 4시간 주5일 근무 시: 최저임금(2022년 9,160원) × 104시간 = 952,640원 이상
- ② 시급제: 시급으로 판단
 - * 매년도 시간당 최저임금(2022년 9,160원) 이상

다. 배제 방법

- (원칙)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은 위 기준이 마련된 '19.9.1.자로 소급 적용되며, 2020년~2022년에 새로이 인건비 전액 지원 사업이 확인되거나, 추가로 인건비 재정지원 노동자가 발견될 경우, 지원 중단과 병행하여 '19.9.1.부터 지원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
- (예외) 예산지원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8 | [사업주 요건6]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

가. 정의

-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정액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 *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동일

나. 근로자별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방법

(1) 확인방법

- 최초 신청기업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서류를 통해 주소정근로시간,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판단
 - 신청서에 기재된 정액급여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9,16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준수 인정(시간급으로 판단)
 - 월급근로자 = 월정액급여/월소정근로시간, 주급근로자 = 주정액급여/주소정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 = 시간급 임금

(2) 상용·단시간 근로자

- 신청 세부내역상 기재된 정액급여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9,160원 이상일 것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입력이 불가함에 유의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한 후 재신청이 가능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

- 월급제(주40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 209시간
 ex)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시 월급 1,914,440원인 경우 : 1,914,440원 ÷ 209시간 = 9,160원
- 주급제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8시간
 ex)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시 주급 439,680원인 경우 : 439,680원 ÷ 48시간 = 9,160원
- 시급제 : 시급으로 판단(최저시급 9,160원)

(3) 일용근로자

- 일당이 (일평균근로시간 × 9,160원) 이상일 것(8시간 이상 근무 시 일당 73,280원 이상)

10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 (일당)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보수총액(과세소득)’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 월보수 및 월근로일수는 매월 초일 ~ 말일 단위로 산정
- (일평균근로시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일평균근로시간’
 - 일평균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 8시간으로 계산

(4) 수습근로자

- (기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습근로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지급 → 이 기준을 충족한 수습근로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 근로자 일 것

(5)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 (기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①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②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반하므로 해당 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지원 제외(적용제외 미인가자는 요건 충족 시 당연히 지원)
 - 다만,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리 방법

-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자 요건이 아닌 사업주 요건
- 최초 심사를 통과하고, 지원도중 최저임금 위반자가 확인된 경우
 - 우선 시정기한을 정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토록 보완 조치, 시정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급중단 및 기 지원된 전체 지원 금액 환수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 중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고용노동부는 공단으로 통보하고 공단은 통보된 달(전산입수달 지원월)부터 연도 내 계속 지원 중단 및 최저임금 위반 사유 발생월부터 기 지원된 전체 금액 환수
 -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은 안정자금이 실질적 부담주체인 입주자(시설주) 등에게 지원되므로 용역업체 사업주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계속 지원

라. 유의 사항

- 2018.6.12.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생활보조,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식비, 교통비 등 일부가 산입범위에 포함되었음에 유의

최저임금법 개정(2018.6.12) 주요내용

- 20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金的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 통화로 지급하는 임金的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월 지급 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 사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관련

- A 근로자 월급명세서: 기본급 1,800,000원, 직무수당 50,000원, 식대 50,000원, 교통비 50,000원, 시간외 수당 100,000원, 상여금 150,000원 급여 계 2,200,000원
 -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1,800,00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
 - *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임
-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800,000원, 직무수당 50,000원, 상여금 0원, 식대·교통비 61,712원
 - ☞ 상여금 150,000원은 2022년 월환산액 1,914,440원의 10%(191,444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없음
 - ☞ 식대·교통비 100,000원은 2022년 월환산액 1,914,440원의 2%(38,288원)를 61,712원 초과함
- ➔ (1,850,000원+61,712원) ÷ 209시간 = 9,147원 < 9,160원(최저임금 위반)

9 | [사업주 요건기] 지원금 지급기간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신청월 이후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자(신청하여 승인받은 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고용보험 상실사유 중분류 23번)를 행한 경우임
 - ▶ 소명되지 않으면 해당 월(상실일 기준) 다음달부터 지급 중단(공동주택은 현장단위로 중단)
 -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상실일 기준) 소명절차 없이 연도 내 지원중단
 - * 상실사유 23번 세분류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고용조정 비해당 사유서와 입증자료 제출받아 확인 후 지원재개 가능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통상 상당기간 지속하여 발생하므로 연도 중 1회만 해당 사유 소명하면 고용유지 의무조항 면제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범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범위

- ① 고용조정 이전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기준달의 직전 3개월 평균보다 재고량이 10% 이상 증가, 생산량 5% 이상 감소, 매출액 5% 이상 감소한 경우
 - ② 사업의 일부부서 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해당업무의 폐지, 축소,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③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업종전환이 있는 경우
 - ④ 기타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⑤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23번 세분류 ①~⑥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기타 사업 환경이나 경영사정상 고용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고용유지의무 면제) 지역경제 및 고용상황 악화로 고용위기지역(전북지역 내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 포함)이나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해 고용유지 의무부과 조항 면제

제3장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제9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1 |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개요

- (지원대상 근로자) ①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일 것(일용근로자는 일당 105,600원 이하) ②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일용근로자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일 것) ③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닐 것 ④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할 것 ⑤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2 | [근로자 요건1] 2022년도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 일 것

가. 근로자별 지원대상 기준

(1) 상용근로자(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로자)

- 2022년도 지급되는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일 것
 - * 보수(보험료징수법 제2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 * 보수총액(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
 - * 월평균보수(2022년도 월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 연간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 다만, 입·퇴사월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함

$$\begin{aligned}
 \text{보수총액} &= \text{소득세법상 총급여(근로소득-비과세소득)} \\
 &= \text{총급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계)}
 \end{aligned}$$

- 월평균보수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비과세소득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 단시간근로자(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
 - 월평균보수 230만원은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이어야하며, 주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일 것

10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3) 일용근로자

- 일당이 105,600원(최저임금의 120% 수준) 이하일 것
 - 일당은 [보수÷월근로일수]로 산정
 - 건설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인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지원기준을 상회하므로 지원 제외

(4)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자(외국인, 초단시간, 5인 미만 농림어업 등)

-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보수내역 확인(근로계약서 추가 첨부)
 - 최소한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별도 서류를 통해 확인 필요

나. 신청이후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인 경우 처리방법

- 지원금 신청이후 기본급 인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갱신(변경)하여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지원중단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적정 지원 여부 검증
 - 다만, 월평균보수 변경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종료 이후(6월 근로월)에는 '고용·산재 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로도 신고 가능
 -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확정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환수 조치 예정(이 경우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의 110% 수준인 253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요건 미준수로 환수)

3 [근로자 요건2]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상용·단시간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반드시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시점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 대상
 - 신청 당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 E-8, F-1 중 계절근로 참여, G-1)의 경우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도 지원
-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지원
 -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지원 제외
 - 1개월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 단위로 산정
- (적용제외) 고용보험 적용제외(5인 미만 농림어업, 외국인, 초단시간)는 e-나라도움(건강보험DB)과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 [근로자 요건3] 사업주의 특수관계인 지원 제외

- 사업주 및 대표이사과 그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 (개인) 공동사업자 포함,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특수관계인 지원 제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특수관계인 지원 제외
- 동거여부,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

5 | [근로자 요건4]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지원기준) 지급 대상 근로자 중 2022.1.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는 전년도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다만, 2021. 10월 이후 입사자는 해당 기준 적용하지 않음
- (확인방법) 고용보험DB에 신고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월평균보수 확인
 - 신청시 최초 1회 확인하되, 2022.1~4월은 전전년도 월평균보수, 2022.5월부터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로 확인
-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예외)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을 임의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연장근로 축소, 연차사용 촉진, 경영악화에 따른 변동 상여금의 감소 등 정당한 사유로 전년도 보수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음
 - 위와 같은 정당한 임금수준 저하사유에 대해 '보수수준 유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6 | [근로자 요건]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5인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이나 적용제외 근로자(합법외국인, 3개월 미만 초단시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지원
- 고용보험 등 가입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보다 강화된 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등 병행 지원예정

고용보험 등 가입에 따른 지원제도

- ▲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사업) 지원
 - * 10인 미만 사업체, 월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신규 가입자 80%)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50~10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100%, ▲ 신성장서비스업 75%, ▲ 나머지: 50%

제4장

지급액 산정 및 지원금 지급

제9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1 | 지급액 산정

가. 보수수준 230만원 미만 상용근로자

- (원칙)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정액 지급
- (일할계산) 근로자가 월 중간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산식) 지급액 = 3만원 × (근무일수/해당 월 일수)
 - (근무일수) 입사(복직): 입사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일수
 - 퇴사(휴직): 해당월 초일부터 퇴사(휴직)일까지 일수

나. 단시간근로자(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 (원칙)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 2022년 1월 지급분은 기 신고된 소정근로시간 및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2022년 2월 지급분부터는 세부내역 신청 이후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20년 월평균보수	'21년 월평균보수	'22년 월평균보수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343,720원 이상 ~1,795,310원 미만)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364,050원 이상 ~1,822,480원 미만)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432,880원 이상 ~1,914,440원 미만)	26,000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895,810원 이상 ~1,343,720원 미만)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09,370원 이상 ~1,364,050원 미만)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55,250원 이상 ~1,432,880원 미만)	22,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73,250원 이상 ~895,810원 미만)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78,900원 이상 ~909,370원 미만)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98,020원 이상 ~955,250원 미만)	18,000원
10시간 미만 (373,250원 미만)	10시간 미만 (378,900원 미만)	10시간 미만 (398,020원 미만)	미지원

10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 (일할계산) 근로자가 월 중간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신청 이후 기본급 인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으로 지급구간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기존 신고된 월평균보수보다 감소한 경우 환수 조치
 - 소정근로시간 구간별 월평균보수 하한액의 80% 미만일 경우 해당연도 지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차액만큼 환수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환수관련)〉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2022년 월평균보수	
40시간 이상(1,914,440원 이상)	30,000원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1,432,880원 이상~1,914,440원 미만)	26,000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955,250원 이상~1,432,880원 미만)	22,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398,020원 이상~955,250원 미만)	18,000원
10시간 미만(398,020원 미만)	미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 안내

- 2022년 지원 근로자별 세부내역 신청에 따라 월평균보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 미변경 시 보수총액 신고자료 확인 등으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되지 않는 근로월에 변경 사유가 발생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 필요

다. 일용근로자(월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 (지원기준) 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3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26,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22,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18,000원

- (일평균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평균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일평균근로시간 비례 지급
 - (산식) 지급액 = 월근로일수 구간별 지원액 × (일평균근로시간/8)

2 | 지원금 지급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시 기재한 계좌로 직접 펌뱅킹 입금하는 지원방식
 - (최초 지원금) 지급희망월부터 심사월 전월분까지 지원금 일괄 지급
 - (2회차 이후 지원금) 전회차 지급월 다음달부터 정기 지급일 전월까지 지원금 매월 지급
- 지원금 지급 계좌 명의
 - (개인) 개인 사업주 명의 계좌
 - (법인) 법인 명의 계좌
 - (공동주택 위탁업체) 입주자 대표 명의 계좌

3 | 지원금 지급 후 절차

- 사업장의 최초 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결정시 지급결과 통보
 - 2회차 이후 지원금 지급내역은 신청인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 지원금 지급 후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급 결과 통보
 -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지원금 지원정보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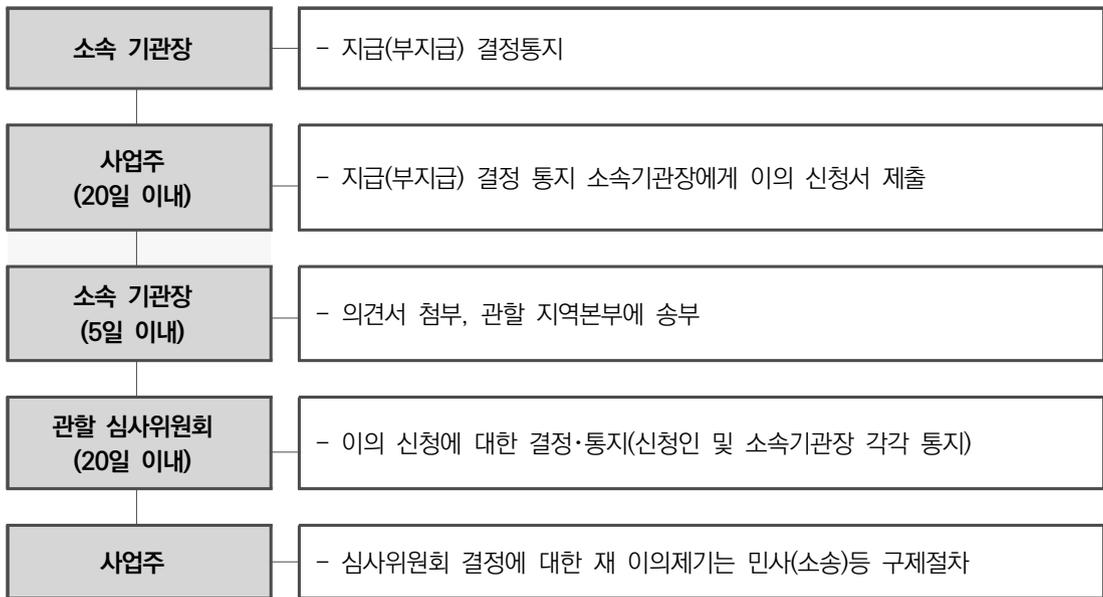
제5장

이의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결정을 한 소속기관 (복지사업부·경영복지부)을 거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 이의제기 업무 프로세스 】



※ 공단 이의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 이의제기는 민사(소송) 등 절차에 따름

- 이의신청 대상
 - 지원비대상 결정, 지원금 부지급(일부 부지급 포함) 결정, 지원중단 결정, 지원종료 결정,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납입고지, 부당이득 환수결정 및 지원금 상계, 부당이득 환수결정 및 납입고지

제6장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처리

제9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1 부정수급 처리

가. 부정수급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 부정수급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나머지는 부당이득으로 처리)
 - (유형 1) 근로사실이 없거나, 임금지급 사실이 없는 허위의 근로자를 신청하거나, 지원금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 (유형 2) 노사가 담합하여 사업장 분할 설립, 실 급여내역 조작, 실 근로일수 조작 등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맞추어 지원 신청한 경우
 - (유형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장이 부정수급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공단은 ①부정수급 의심기업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②정기 및 수시점검 ③부정수급 신고 온라인 사이트 개설 ④부정수급 전담반 신설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보험사무대행기관 제재 조치 강화

- 사무대행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환수금 발생시 1회 경고(경고 시 추가적인 발생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명시)하고, 다음연도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2020년 시행 이후 최초 발생부터 적용)
- * 2021년 지도·점검 결과 환수금이 발생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2022년 점검 대상에 포함
- 2회차 환수 발생시 그 사유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부정수급으로 처리하고 5배 제재부가금 부과

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분

- (반환명령)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령
- (강제징수) 공단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제재부가금 부과)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 (환수금 등의 분할납부)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의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 (형사고발) 부정수급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고발
 - ▶ 보조금 수령자의 고의·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지원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 ▶ 사업주가 근로자와 담합하여 부정수급 의도가 뚜렷한 경우로서 공단 소속기관장이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급제한) 2021.12.16. 이후 적발된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에 추가하여 부정수급사업장으로 확인된 시점부터 5년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제한
 - 부정수급사업장은 보조금법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지급제한 정보를 행정정보망 연계를 통해 기재부 및 타 행정부처에 실시간으로 송신, 다른 부처 지원금 5년간 지원 배제 실시
 - ※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주체와 지급주체가 상이하여 지급제한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송신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월 단위로 송부받은 타 보조금 수급 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송부받은 달(근무월)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제한
 - ※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전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지급 제한

2 | 부당이득금 처리

가. 부당이득

-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을 주는 일 또는 그 이득(민법 제741조)
 - (유형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신청인의 착오, 지연신고, 담당자 착오 등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형2)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지급절차에 의해 사업주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뒤, 경비·청소원의 임금인상에 반영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 부당이득금 환수방법

- 환수사유가 발생한 지원대상 인원에 대해 착오 지급된 지원금 환수 결정(환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 지원금부터 환수)

- 해당 사업장에 다음회차 지원금이 있는 경우, 다음회차 이후 발생하는 지원금에서 차감
- 해당 사업장에 다음회차 지원금이 없는 경우, 환수명령 후 납부고지 및 미납시 강제징수
- 사업주별 월 단위 환수 대상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환수결정 대상에서 제외

3 | 신고포상금 제도

- (신고포상금 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
 - * 2021년에 부정행위로 신고된 건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용
- (부정행위 신고) 부정행위 신고자는 '부정행위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 (신고기한) 국가재정법상의 소멸시효를 준용하여 부정수급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가능
- (부정행위 확인 및 결과 통보) 공단은 접수된 부정행위 신고 건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통보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조사결과 통보기한에 산입하지 않음
 1. 조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구금, 수사기관 등의 관련 증거자료 압수, 천재지변 등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조사를 보류하는 기간
 2.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
 3. 부정수급 확인에 필요한 조사 대상자의 자료 제출 등 관련 증거자료 보관에 필요한 기간
 4. 조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관련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
 5. 그 밖에 부정수급 확인에 필요한 기간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소요되는 기간
 - 결과 통보는 사업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실시하되,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결과 통보는 부정행위로 확인된 건에 한함
- (포상금 지급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하여 공단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자
 - 2021년에 부정행위로 신고된 건에 한해 신고포상금 지급
- (포상금 신청방법)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인은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10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 (포상금 지급) 지방노동관서는 접수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되, 지급기한은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함
- (지급기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하되, 신고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달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
 - *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각각 300만원, 하한액은 1만원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3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 (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지급제한) 신고를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부정행위 신고자가 관련 공무원이거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경우에는 부지급
 - * 기존 신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부지급,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 지급
- (이의신청 등)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신고포상금 환수) ①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포함)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 행정심판, 소송 등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의 환수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된 신고포상금 환수
- (부정수급심의회) 지방노동관서는 포상금액 및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해 부정수급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부 훈령) 상의 부정수급심의회를 의미
- (비밀유지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직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

제 7 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지원 기준



1 | 공동주택 특별지원 개요

- 해고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2년도에도 특별지원절차 지속 운영
- 고용안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보완

2 | 공동주택 개념

- 「주택법」 제2조 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이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3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판단

- 공동주택 사업규모가 30명 미만이면 직종에 상관없이 지원대상 근로자 전부 지원, 30명 이상이면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지원
- 공동주택 사업규모 판단방법
 - 공동주택 사업규모는 원칙적으로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함
 - 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공동주택)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용단위(공동주택)별로 30인 여부 판단
 - ②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전문주택관리업체가 아닌 일반 용역회사에 경비·청소원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업체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적용단위(용역업체)별로 30인 여부 판단
 -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여 자치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적용단위(공동주택)별로 30인 여부 판단

4 | 지원금 특별지급 절차

- 신청은 사업주가 하되, 위탁업체(용역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
 - 용역(위탁)업체 소속 근로자 중 경비·청소원이 아닌 경우(시설장비·조경 등)에도 동일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 임금 부담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등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관리유형	관리방식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주체
자치관리 (직영)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여 관리	• (신청)입주자대표회의 • (지급)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 (용역위탁)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청소 등 위탁관리	• (신청)위탁업체 •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분리 위탁관리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 여러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청소, 시설·장비 등 분리 위탁	• (신청)각 위탁업체별 •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관리 +위탁관리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일부는 직접고용하고, 일부는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	• (신청)입주자대표회의+ 위탁업체 •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 특히, 경비·청소원 고용안정을 위해 법상 사용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지원금을 특별히 지원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 필요
 - 지원받은 지원금은 경비·청소원 등의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민들이 부담한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 등)와 위탁업체 간 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표준협약서 제출(필수)
 - 표준협약서에 지원금 신청내역 기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확인

5 | 신청방법

- 신청주체와 지원금 수령주체가 다른 점 등 특수성을 감안, 공동주택 관련 신청서류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 ① 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②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공동주택용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에 유의
 - *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등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오프라인 접수(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에서 접수 시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서류 이송 처리)
- 용역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별로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지급대상 입주자대표회의 계좌 구분 기재
- 30인 이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지원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비·청소원 여부(직종)를 신청 서식에 체크

6 | 기타 유의사항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사업주 요건 중 최저임금 준수 기준 외에는 적용하지 않음
 - 단, 지원금을 지급받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를 부과
 - * 지원대상자에 대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피보험자격상실 코드23번)시 지원종료(별도 소명 불가)
- 해당 근로자의 지급요건은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심사(월평균보수 230만원미만, 1월 이상 고용유지, 특수관계인 제외, 최저임금준수, 고용보험 가입, 최소 전년 보수수준 유지 등)
-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부당이득·부정수급금 반환 책임 발생시에는 보조금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반환책임이 있음
 - 다만, 실제 지원금을 수령한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므로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자진반납'토록 조치하고, 미반납시에는 사업(주)에게 반환조치 하되, 사업(주)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

10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제8장

신청서 접수



1 신청 개요

- 회계연도 개시 이후(2022.1.1.~) 접수마감일까지(2022.6.15.)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지급을 희망하는 월부터 연내 계속 지원
 - 단, 회계연도 마감 등을 고려하여 6.15.까지만 신청서 접수
 - *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6.30.까지 신청 가능
- 2022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2022.5.1.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원칙(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등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서 하여야 함
- 기존 지원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 취득자(공동주택 포함)는 동 고유서식을 활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 2021년 기존 지원사업장도 신규 신청 방식 준용하여 2022년 신규 지원 신청 사업주와 동일하게 세부내역이 포함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공단 고유 서식) 제출

2 신청 서류 및 첨부서류

가. 신규 신청

(1) 공통사항

-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자별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

(2) 근로자별 신청 서류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 2021년 기 지원 사업장 및 2022년 신규 지원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 +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서
 - 2022년도 신규 성립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확인서

- 건설업·별목업의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 사업장용 별도 신청서 제출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위 대상자별로 각각 해당 신청서식으로 신청하고, 신청서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체크란에 체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작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 서류 제출
- 퇴사자
 - 신청 당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유지확인서는 매 익월 15일까지 제출

나. 근로자 추가 지원 신청

- 최초 신청 이후 신규입사 등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신고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으로 신고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신고

다. 지원 사업장 및 근로자 변경사항 신고

-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
 - * 지원 종료 이후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변경 신고 필요
- 신청 후 2022년 내에 사업장 정보 변경(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등), 근로자 정보 변경(보수 총액,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신고서(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제13호)’로 신고
- 다만, 월평균보수 변경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종료 이후(6월 근로월)에는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로도 신고 가능
- 지원 대상 근로자 자격 변동사항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 단, 감시단속, 경비·청소 여부 등 고용보험 신고내용이 아닌 경우와 적용제외사업장 및 근로자의 변경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고
- 신청 이후 기본급 등 보수총액,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제출 →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 지원구간별로 월 지원금이 변경됨
 - * 미변경시 보수총액 신고자료 확인 등으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음

-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신고(접수일 기준, 사업주 단위)하여 과오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 과오지급금은 환수하고 2022년도 확인 다음달부터(확인월분) 3개월간 해당 사업장 지원 중단(2022년 1회 실시, 3월)
 - * 6개월 이상 신고 지연 기준 시점: 2021.9.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식 및 작성 요령 2

②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기존근로자는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청서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최초 신청이후 근로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동일)

서식개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내 안정자금 지원신청 대상 근로자 신청
서식(세부)	기 가입근로자에 대한 월평균보수변경 신고 및 안정자금 신청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존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보 보험의 종류사양 및 적용방법을 참고 작성하기 바라며, 국공립의 의무를 받은 신청인(신고인)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당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일
사업장관리번호	영점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후대문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국민연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될 자관 신청)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자리안정 자금 지원 신청	
	현재 기본소득월액	변경 후 기본소득월액	변경 후 근로자 동의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보수월액	보수 변경 월	변경 사유	변경 후 고용보험 소득보험	고용보험 소득보험		보수 변경 월
2							3			4

신정인(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기재사항 설명	①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여부 체크 ※ 타 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시 타 보험에도 체크 가능 ②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대상 근로자명 및 주민번호 등 기재 ③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변경 후), 보수변경월 기재 ④ 변경신고 대상 근로자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여부” 체크
유의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의 월평균보수(④)는 2022년도에 지급받을 보수*의 총액을 해당 개월수로 나눈 금액임 *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3호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 ▶ 신청 근로자에 대한 세부내역서 별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식 및 작성 요령 5-1

5-1 고용보험 신고서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부속서류를 추가로 제출
 (필수 부속서류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부내역)

※ 최초 지원신청하는 사업장만 제출, 이후 근로자 지원추가 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서식개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별 지원요건 확인 자료
서식(세부)	사업주 지원금 지급관련 정보 및 지원대상 근로자별 기재사항 기재

기재사항 설명	① 사업장(본사) 관련 필요사항, 입금계좌 등을 기재
	② 최초 지급희망월 체크(해당 지급희망월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30명 미만 여부 판단)
	③ 수습/감시단속 근로자 여부 체크 및 주소정근로시간 기재 ※ 주소정근로시간: 1주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임
	④ 급여 산정방법(월급제, 주급제, 시간급제) 체크 및 그에 따른 정액급여 기재 ※ 월급제는 월정액급여, 주급제는 주 단위 정액급여, 시간제는 시간급으로 기재
	⑤ 최저임금 준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등 여부 체크(필수)
	⑥ 개인사업장인 경우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동대표자 내역
유의사항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도 제출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식 및 작성 요령 5-2

⑤-2 필수 부속서류 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부내역(공동주택)>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근로자 지원 추가 시 동일 서식 이용).

서식개요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시
서식(세부)	사업주 지원금 지급관련 정보(계좌번호, 수령방법, 지급시작월 등) 지원대상 근로자별 기재사항 기재

기재사항 설명	① 입금 계좌번호(공동주택 위탁관리하는 경우는 공동주택별 ⑤에 기재)
	② 최초 지급희망월
기재사항 설명	③~④, ⑥ 수습/감시단속 근로자 여부 체크 및 주소정근로시간 등 기재 * 주소정근로시간: 1주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임 * 급여 산정방법(월급제, 주급제, 시간급제) 체크 및 그에 따른 정액급여 기재
	⑤ 공동주택별 사업장내역 기재,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지급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명의 계좌 기재
기재사항 설명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체크(필수)
	⑧ 개인사업자인 경우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동대표자 내역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등과의 “표준협약서” 첨부 필요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도 제출필요

제9장

참고사항



1 | 2022년도 주요 개정안

구분	2021년	2022년																				
월평균보수 지원기준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 (일용) 1일 기준 100,500원 이하 ▶ (선원) 월평균보수 27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 (일용) 1일 기준 105,600원 미만 ▶ (선원) 월평균보수 284만원 미만 																				
지원금액 조정	▶ 5인 미만 7만원, 5인 이상 5만원	▶ 전 사업장 1인당 3만원																				
단시간 및 일용근로자 지원수준 합리화	▶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주소정 근로시간</th> <th>월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td> <td>4만원</td> </tr> <tr> <td>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td> <td>3만원</td> </tr> <tr> <td>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td> <td>2만원</td> </tr> <tr> <td>10시간 미만</td> <td>미지원</td> </tr> </tbody> </table>	주소정 근로시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4만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3만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2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주소정 근로시간</th> <th>월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td> <td>2.6만원</td> </tr> <tr> <td>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td> <td>2.2만원</td> </tr> <tr> <td>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td> <td>1.8만원</td> </tr> <tr> <td>10시간 미만</td> <td>미지원</td> </tr> </tbody> </table>	주소정 근로시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2.6만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2.2만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8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주소정 근로시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4만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3만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2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주소정 근로시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2.6만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2.2만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8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월 근로일수</th> <th>월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22일 이상</td> <td>5만원</td> </tr> <tr> <td>19일 이상~21일 이하</td> <td>4만원</td> </tr> <tr> <td>15일 이상~18일 이하</td> <td>3만원</td> </tr> <tr> <td>10일 이상~14일 이하</td> <td>2만원</td> </tr> </tbody> </table>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5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4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월 근로일수</th> <th>월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22일 이상</td> <td>3만원</td> </tr> <tr> <td>19일 이상~21일 이하</td> <td>2.6만원</td> </tr> <tr> <td>15일 이상~18일 이하</td> <td>2.2만원</td> </tr> <tr> <td>10일 이상~14일 이하</td> <td>1.8만원</td> </tr> </tbody> </table>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3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2.6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2.2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1.8만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5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4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3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2.6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2.2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1.8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월 근로일수</th> <th>월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22일 이상</td> <td>5만원</td> </tr> <tr> <td>19일 이상~21일 이하</td> <td>4만원</td> </tr> <tr> <td>15일 이상~18일 이하</td> <td>3만원</td> </tr> <tr> <td>10일 이상~14일 이하</td> <td>2만원</td> </tr> </tbody> </table>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5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4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월 근로일수</th> <th>월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22일 이상</td> <td>3만원</td> </tr> <tr> <td>19일 이상~21일 이하</td> <td>2.6만원</td> </tr> <tr> <td>15일 이상~18일 이하</td> <td>2.2만원</td> </tr> <tr> <td>10일 이상~14일 이하</td> <td>1.8만원</td> </tr> </tbody> </table>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3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2.6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2.2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1.8만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5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4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3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2.6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2.2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1.8만원																					
지원기간 조정	▶ 12개월(11월 근로분까지 지원)	▶ 6개월(5월 근로분까지 지원)																				
지원신청 시기 조정	▶ 지원 신청 마감시기 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신청 마감시기 6.15. -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2회차 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6.30.까지로 신청 마감시기 조정 																				

구분	2021년	2022년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지원규모 조정	▶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1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100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타 사회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더라도 고령자·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에서 제외
신고포상금 제도 제한 운영	▶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에 따른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 마련	▶ 2021년에 부정행위로 신고된 건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부정수급 사업장 다른 부처 보조금 사업 지원 배제 실시	(신설)	▶ 2021.12.16. 개정 보조금 법령 시행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를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기재부 및 다른 부처와 공유하고, 타 부처 보조금 5년간 지급 제한 실시 ▶ 다른 부처에서 공유한 타 보조금 지급제한 사업장 정보를 반영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제한 실시

2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조치

□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집행

- 2021년 신청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21년도 예산으로 집행
 - 따라서 2021년 회계연도 마감과 함께 교부금액 잔액과 이자를 고용노동부로 반납 조치 (2022년 지원금은 2022년 1월중 교부 예정)
 - 정산·마감조치 이후 근로자 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2022년 지원금에서 차감(상계) 후 지급
 - * 2022년 지원금에서 차감(상계)하더라도 동 금액은 2021년 지원금에 대한 환수금이므로 차감된 금액은 국고로 세입조치

□ 2022년 1월 지급분 유의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 해당월의 계속 근로 확인 후 다음달에 지원되는 특성 및 요건 재검증(2021.4분기) 절차로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제출을 통해 지원 요건이 확인된 사업주(재검증 비대상 사업주* 포함) 에 대하여 지원
- * 재검증 비대상 사업주 : 2021.6.30.이후 신규 사업장(상용근로자 기준 전체 지원근로자에 대한 세부 내역 제출)

10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 따라서, 2022년 지원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 소속으로 2021년 지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일용 및 적용제외 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2022년 지급금액 기준으로 지원
※ 지급대상 기간이 2021.11월 이전은 2021년도 기준에 따라 지급

□ 적용제외 및 일용근로자 지원

- 2회차 이후 2021년 12월 근로분에 대한 고용유지확인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 등은 예외적으로 2022.2.3.까지 접수하여 처리

제11편

보험사무대행기관

- 제1장 보험사무대행제도
-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 제3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 및 폐지
-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등
-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제6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 제7장 보험사무대행기관 토탈서비스 이용 매뉴얼



제 1 장 보험사무대행제도



1 보험사무대행제도

-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촉진 및 보험료의 정확한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 제공(1971년~)
- ※ 노무·세무 전문가, 각종 협회 등 전국 약 5,4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무대행 서비스 제공
특히,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무료로 대행

2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신청을 원하는 모든 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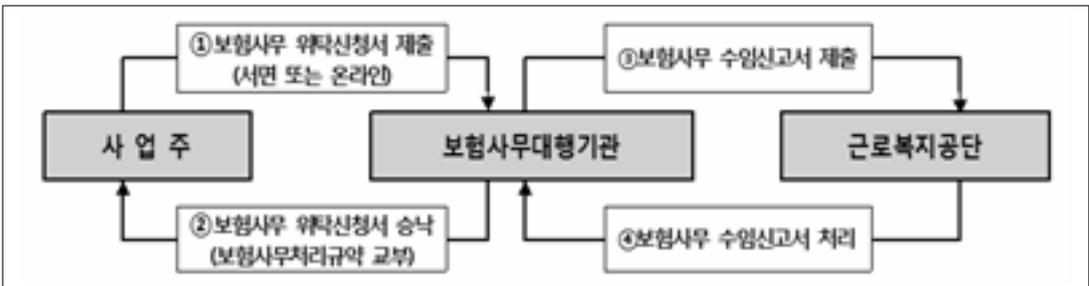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신고에 관한 사무
-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의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에 관한 사항
- 고용정보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 등 관리 규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이직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 보수총액 등 법 제16조의10에서 정하는 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신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없는 보험사무

- 「산재보험법」의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
 - 보험료의 임의수령 및 대행납부 등 수납대행 사무
 -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신청, 각종 지원금 신청 및 수령(실업자 취직훈련, 교육훈련 수강 신청 등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심사, 재심사 청구 등
- ※ 다만,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보험사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서류 작성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 절차도



①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하여 “보험사무 위탁 신청서” 제출

(서면) 보험사무대행기관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센터 → 민원조회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 위탁 신청서

②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승낙(불승낙) 통보 및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교부

※ 불승낙 통보: 보험사무대행 가능 사업장수 초과 등 보험사무대행기관 사정에 따라 불승낙 통보될 수 있으며, 불승낙 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다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하여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위탁계약에 관한 세부약관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와 보험사무 위탁계약 체결 사실을 공단에 신고(보험사무 수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사무 수임신고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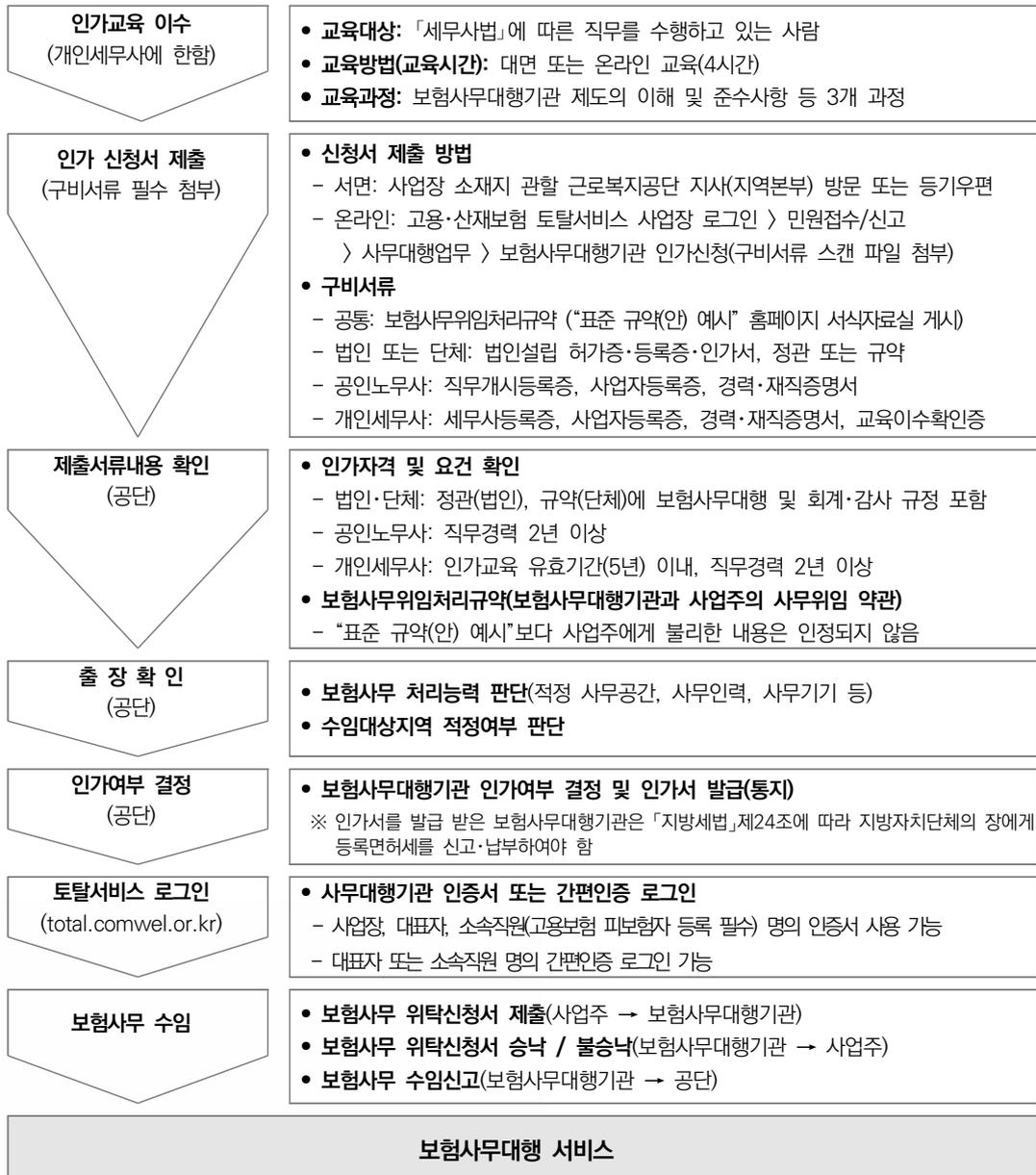
④ 공단의 “보험사무 수임신고서” 처리와 함께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 개시

11 보험사무대행기관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절차



2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

-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우회, 산재재해자단체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노무·세무·회계법인, 법무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 공인노무사
-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개인세무사

3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개인세무사에 한함)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9호) -

가. 인가교육 실시기준

- (교육대상)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 (교육방법·시간 등) 인가교육은 대면 또는 온라인 방법 중 선택 가능, 전체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진행하되 대면 교육은 수강률 80% 이상, 온라인 교육은 진도율 100%인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시간의 인정 등) 인가교육 신청일 이전 1년 동안에 받은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인가 교육 세부과정과 동일한 과정이 포함된 경우 4시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인가교육의 세부과정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다만, 온라인 교육의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1. 「세무사법」 제18조의2제1항의 연수교육
 2. 「변호사법」 제85조의 연수교육
 3. 「공인회계사법」 제46조제1항의 연수교육

《 인가교육 세부과정 》

연번	세부과정 구분	시간	교육방법
1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및 준수사항	1시간	대면 또는 온라인
2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1시간	
3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의 이해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최저임금법·일자리안정자금 등)	2시간	

※ 교육대상자는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세부과정명, 교육일자 및 시간 등을 한국세무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확인받아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인가교육의 실시

- **(교육기관)** 인가교육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 위탁교육기관 :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교육계획 공고 등)**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확정된 교육계획 또는 변경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1. 교육대상에 관한 사항
 2. 교육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신청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비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주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온라인 교육은 연중 상시)
- **(교육신청)** 교육대상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시작 7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2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강신청(온라인 교육은 온라인 수강신청으로 같음)
 1. 교육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2. 교육대상자의 세무사등록증 사본
 3. 교육대상자가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을 받은 경우 당해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수강결정)**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5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교육시작 전일까지) 수강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
- **(교육이수의 확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

- (교육이수 유효기간) 교육이수의 유효기간은 인가교육을 마친 날부터 5년
※ 유효기간 내에 인가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가교육 이수 효력 상실
- (교육비용) 한국세무사회 무료, 한국공인회계사회 1인당 16,000원

4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

가. 신청방법

- 서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작성 →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

나. 첨부서류

(1) 공통

-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대표자 및 보험사무대행 업무담당 직원 보안서약서 포함)
※ 아래의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 보다 사업주에게 불리한 규약은 인정되지 않음

1. 위임받은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하지 않는다는 사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운영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3.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통지 등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4.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납부책임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험사무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6.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및 근로자고용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험사무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 법인 또는 단체

-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 받거나, 단체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법인 설립 허가증·인가증, 민간단체 등록증 등)
- 법인은 정관, 단체는 규약 사본

(3)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을 하고 해당 직무를 2년 이상 행하고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직무개시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재직증명서 등)

(4) 개인세무사

- 기획재정부에 비치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 하고 해당 직무를 2년 이상 행하고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세무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재직증명서 등)
- 인가교육 이수 확인증

5 | 인가신청시 유의사항**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처리기관 및 인가일자**

- **(처리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장이 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전국적·지역적으로 구성되어 수개의 소속기관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
- **(인가일자)** 공단이 인가를 결정한 날

나. 법인·단체의 지점 또는 지부의 인가

- **(인가요건)** 법인·단체가 각 지역별로 지점 또는 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사·회계 등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지점 또는 지부별로 인가 가능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으로 명시
 - 단체: 규약 등에 지회·지부로 명시
 - 공통: 지점 또는 지부(지회) 운영규정 등을 통해 인사·회계 등의 독립성 확인
- **(신청방법)** 인가신청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하며, 「상법」 제13조에 따라 등기된 지배인이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신청 가능
 - ※ “대표이사 또는 등기된 지배인”이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신청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청으로 인정하되,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고**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점 인가시 수입사업장 승계 가능 여부

보험사무 위탁계약은 보험료징수법의 규율을 받아 보험가입자와 특정한 보험사무대행기관(법인이 아님)간에 체결되는 법률관계이므로 동일 법인 내에서 기존 인가된 본점 보험사무대행기관(A)과 보험가입자간에 체결한 보험사무 위탁계약의 효력은 별도 인가된 지점 보험사무대행기관(B)에 승계되지 아니하며,
 또한, 보험사무위탁계약의 승계와 관련하여 3자간(A, B, 보험가입자)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령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바,
 별도 인가된 보험사무대행기관(B)이 기존에 지점으로서 관리하였던 사업장들에 대한 보험사무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보험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수입대상지역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사무인력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수입대상지역(특별시·광역시·도 등)을 지정하여 인가신청
 - 보험사무 처리능력에 비추어 과도한 지역은 수입대상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음
 - ※ 보험사무 처리능력 : 보험사무의 적정한 수행이 가능한 사무공간, 사무기기, 사무인력 등
 - 다만,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지부 또는 지점이 있는 등 보험사무를 원활히 대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을 수입대상지역으로 인가 가능

라. 등록면허세 납부

- 공단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는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에 해당하므로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르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는 “제4종” 면허에 해당
 - (신고 납부) 새로 인가를 받거나 변경인가를 받은 사무대행기관은 인가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등록면허세가 재부과됨

11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 및 폐지



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

가. 변경인가 신청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공단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 신청서” 제출
 - ※ 변경인가 신청 사항 : 1. 수입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나. 변경신고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단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신고서” 제출
 - ※ 변경신고 사항 :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법인의 대표자(법인에 한함)
 -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 보험사무대행기관 합병시 승계 여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흡수합병 하는 경우나, 서로 다른 두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자동 승계는 불가한 바, 기존 수입사업장은 사무수임 해지신고 후 신설(흡수합병) 법인으로 새로이 사무수임 신고하여야 함

참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조직변경에 따른 기관으로서의 존속여부

공단으로부터 인가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A)의 대표자가 다른 보험사무대행기관(B)으로 이동한 경우, 각각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서로 별개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A)으로 보험사무를 위탁하였던 사업장의 보험사무를 대표자가 이동한 보험사무대행기관(B)의 명의로 계속하여 대행할 수 없음

2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등

제10편 보험사무대행기관



1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공단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며, 통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
 - ※ 위탁사업장 중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별목업)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와 2,3,4분기 납부서는 공단 본부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위탁 자진신고 사업장 10개 이상일 경우)으로 발송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장에 납부서 전달 및 납부 독려
 - ※ 위탁사업장 중 부과지 사업장(건설업·별목업 외)의 월별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
-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자료, 신고·보고 사항 등을 요청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함

2 | 보험사무대행기관 귀책사유에 의한 납부책임

- 가산금, 연체금, 보험급여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함

3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의무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함
 1.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2.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서류
 3.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서류
 -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음

4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의 규정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해당 사무대행기관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담당 직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함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인가취소” 대상에 해당

참고 개인정보의 정의 및 처리방법

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함

- 개인정보의 주체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연인’을 의미
-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은 타법률에 의해 보호
 - ※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 임원 현황, 자산 또는 자본의 규모, 주가, 영업실적, 납세실적, 영업비밀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가.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

나.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함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개별 ‘업무 담당자’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

다.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본원칙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② **(개인정보의 저장·관리)**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저장·관리하여야 함

- 관리적 측면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최소화 및 교육
- 물리적 측면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기술적 측면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비밀번호 관리,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 보유 관리수칙

- 비밀번호는 분기 1회이상 변경
- 인사이동 시 PC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는 즉시 비밀번호 변경
-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해 9자리 이상 사용
- PC 등에 보관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나 파일 전송 시 암호화

■ 개인정보 수기 문서 보관시 유의사항

- 일과 후 개인정보 기록 서류를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 장소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보관
- 사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수기 문서는 즉시 파기(이면지라도 사용 불가)

③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불가
 - 고객의 개인정보의 과도한 조회 등 이용을 최소화하여야 함
- ※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것도 모두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므로 업무 범위를 넘는 열람 불가

④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 |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점검

- 공단 소속기관은 관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업무처리, 인가기준에 따른 운영, 장부·서류의 보관 및 작성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 매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실시
 - ※ 지도·점검 관련 세부사항(실시기간, 대상선정, 점검항목 등)은 매년 별도로 계획 수립
- 지도·점검 결과 보험사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게을리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가취소, 경고, 주의, 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실시

2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행정처분

가. 인가취소

- (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5항)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8조)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 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23조 제3항 [별표 5]) 보험사무대행기관 처분기준

처분내용	처 분 기 준
인가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를 대행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3. 경고를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나. 경고·주의

●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23조 제3항 [별표 5]) 보험사무대행기관 처분기준

처분내용	처 분 기 준
경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별표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기준 구분의 “부정인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과 관련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외에 별도 대행 수수료를 수수하는 경우 (단,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6월 이상 수임사업장이 없는 경우 4. 당해연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는 위탁사업장 중 법정 신고기한 내 보험료를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단, 당해연도 3월31일까지 보험사무를 수임받은 사업장에 한한다) 5. 당해연도 1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하는 위탁사업장 중 신고기한 내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단, 당해연도 3월 15일까지 보험사무를 수임받은 사업장에 한한다) 6. 위임사업주와 별지 제43호 서식의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목의 하자 있는 사무위탁서를 첨부하여 사무수임 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로 해당 건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임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한 사무위탁서 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임의로 서명하거나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한 사무위탁서 다. 보수총액신고서(보험료신고서) 등 임의로 작성된 사무위탁서 7. 주의를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주 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별표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기준 구분의 “부정인가”인 경우 제외)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2월 이상 6월 미만 기간 동안 수임사업장이 없는 경우 3. 당해연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는 위탁사업장 중 법정 신고기한 내 보험료를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단,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보험사무를 수임받은 사업장에 한한다) 4. 당해연도 1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하는 위탁사업장 중 신고기한 내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단, 당해연도 3월 15일까지 보험사무를 수임받은 사업장에 한한다) 5. 처분기준 경고 제6호와 동일한 사유에 해당되나 그 건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각각 처분함

※ 처분 횟수에 따른 처분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날과 그 이전 2년 동안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함

11 보험사무대행기관

3 |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회수

●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23조 제2항 [별표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기준

구 분	회 수 기 준
부정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부정운영	1. 보험사무를 위임받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허위로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3자와 사업주 간에 체결된 사무위탁서를 넘겨받아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여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기타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착오지급	지원금이 착오 지급된 경우

제6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제10편 보험사무대행기관



1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 관리 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산재정보통신망(토탈서비스)을 이용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 다만, 특례(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사업장은 근로자 사업장과 통합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지원금 지급하되,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산재보험은 특례 적용자를 근로자로 보아 합산하고, 고용보험은 특례 적용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합산하지 않음
 - ※ 사례1) 근로자 1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15명, 예술인 2명인 사업장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25명으로 산정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27명이 아닌 10명으로 산정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 ※ 사례2) 근로자 2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15명, 예술인 2명인 사업장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35명으로 산정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아님
 -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37명이 아닌 20명으로 산정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종류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적용 촉진장려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등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6호)

가. 징수사무대행지원금

- (지급기준) 자진신고 사업장 위임사업주의 보험료를 신고하고, 100분의 80이상 납부하도록 한 경우 지급

11 보험사무대행기관

- (지원금액) 위임사업주 1명당 16,000원
 -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8,000원
- (지급시기) 반기별(연 2회)
- (납부실적 산정) 해당 반기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징수금의 납부액으로 하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개산보험료를 상반기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봄

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1)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 (지급기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의 근로내용·노무제공 확인신고,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 통보,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명세변경신고(이하 '피보험자신고등'이라 함)을 한 경우 지급
- (지원금액) 위임사업주 1명당 12,000원(6건 이상 신고시 15,000원, 15건 초과 신고시 18,000원)
-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연 4회)
- (신고실적 산정) 해당 분기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피보험자신고등의 신고실적이 있는 경우만 지급하되, 동일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와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 실적은 1명으로 봄
 - ※ 동일 사업장에 동일 분기, 동일인에 대한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 별건으로 산정
 - ※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의 근로내용·노무제공 확인신고서'는 근로(노무제공) 일수와 관계없이 월에 1명으로 산정
 - ※ 근로자 사업장과 특례(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사업장에 대한 보험사무대행 실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합산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한 후 각 사업장별로 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

(2) 보수총액신고대행지원금

- (지급기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보수총액신고를 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지급하며, 같은 법 제16조의10 제2항에 따라 소멸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 추가 지원금 지급
 - ※ 단,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는 지원 제외

●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구분	규모	신고기한	지원금액	지급시기
일반 근로자	5명 미만	매년 3월 15일까지	18,000원	연 1회
	5-30명 미만	매년 3월 15일까지	24,000원	연 1회
예술인	10명 미만 (단기예술인 제외)	매년 3월 15일까지	5,000원	연 1회
	10-30명 미만 (단기예술인 제외)	매년 3월 15일까지	10,000원	연 1회
소멸보수총액신고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10,000원	소멸시 1회

(3) 일자리안정자금대행지원금

- (지급기준)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병행한 경우 지급
 -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 제1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22호의5서식, 제16조의7 제2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22호의7서식을 이용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병행한 경우에 한함
- (지원금액) 위임사업주 1명당 6,000원(10명 이상 신고시 10,000원)
-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연 4회)
- (신고실적 산정) 해당 분기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병행 신청하고 정상 지급결재된 사업장에 지급
 - ※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별로 월에 1명으로 산정

다. 적용촉진장려금

- (지급기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모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만을 사용하면서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의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사용하면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경우 지급
 -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한쪽만 성립신고 하는 경우는 지원금 지급대상 아님
 - ※ 단, 특수형태근로자만 사용하여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대상이 산재보험만 가입하거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만 사용하여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대상이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지원금 지급대상
 - ※ 근로자 또는 특례 적용자(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를 사용하여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이 특례 적용자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어 추가로 성립신고하는 경우는 지원금 지급대상 아님
- (지원금액) 위임사업주 1명당 40,000원
- (지급시기) 최초 성립시 1회

11 보험사무대행기관

라. 중·소기업사업주등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1)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 (지급기준) 해당 보험연도의 1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사업주등의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신고를 한 경우 지급
- (지원금액) 위임사업주 1명당 18,000원
- (지급시기) 연 1회

(2) 적용촉진장려금

- (지급기준) 중·소기업사업주등이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경우 지급
- (지원금액) 위임사업주 1명당 10,000원(최대 40,000원까지)
-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가입일로부터 해당 보험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분기별로 총 4회까지 지급)

마.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우선순위

- 공단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할 때 예산 부족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지급
(1순위) 피보험자신고등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을 병행하여 신청한 경우
(2순위)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경우
(3순위) 상시근로자 10명~29명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경우

바.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에 의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과세소득(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제한(2022. 1. 1. 시행)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6호)

- 지원금 산정 기준년도의 전전년도 다음 각목에 따른 과세소득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위임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
 - (위임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사업소득금액

- 시행령 시행 이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행한 보험사무에 대한 지원은 시행령 제52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

가. 신청시기

-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보수충액신고대행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 이후 신청 가능
-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 분기 중간 월 15일 이후 지원금 신청 가능(15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
 - ※ 1분기(1,2,3월) 사무대행업무 수행 → 5월 15일부터 1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 ※ 2분기(4,5,6월) 사무대행업무 수행 → 8월 15일부터 2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 ※ 3분기(7,8,9월) 사무대행업무 수행 → 11월 15일부터 3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 ※ 4분기(10,11,12월) 사무대행업무 수행 → 내년 2월 15일부터 4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무대행기관 유형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 → 지원금 구분, 신청년도, 신청분기 선택 → 공단산정자료 조회 → 조정 또는 추가 → 접수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공단산정자료가 기본 제공되며, 조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의 첨부자료 없이 접수 가능
 - 공단산정자료의 조정 또는 추가가 필요할 경우 행추가, 행사제, 신청명세 업로드 등을 사용하여 처리 가능하며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접수
 - 지원금 종류별로 각각 지급신청 하여야 함
- (서면)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작성 →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지역본부) 팩스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첨부서류: 지원금별 세부 신청명세 자료 필수 제출

다. 지원제한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음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세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1 보험사무대행기관

라. 소멸시효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5항에 따라 지원금별 때 받기 또는 때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
 -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마. 기타

-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서 식 마 당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comwel.or.kr) 메인 - 자료실 - 서식자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달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전자로 신고·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전자신고 불가)
-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

《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지급기준 요약 》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6호) -

□ 지원금 종류 및 지급기준 (지급대상 :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지원금 종류	대상	지원기준	지급 주기	금액
정수사무대행지원금	▶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경우 (자진신고사업장에 한함)	▶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80이상	반기	위임사업주당 16,000원
피보험자관리 등 대행지원금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의 근로내용·노무제공 확인신고,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 통보,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변경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명세변경신고 등을 한 경우		분기	위임사업주당 12,000원 ※ 6건 이상 신고시 15,000원, 15건 초과 신고시 18,000원
	▶ 일자리안정자금 병행 신청한 경우		분기	위임사업주당 6,000원 ※ 10명 이상 신고시 10,000원
	▶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 신고 대행 (노무제공자 제외)		연간	위임사업주당 18,000원(5명 미만), 24,000원(5명 이상)
	▶ 법정 신고기한 내 예술인 보수총액 신고 대행		연간	위임사업주당 5,000원(10명 미만), 10,000원(10명 이상)
	▶ 보험관계 소멸 시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신고 대행 (노무제공자 제외)		소멸시	위임사업주당 10,000원
적용촉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성립신고 대행		성립시	위임사업주당 40,000원

□ 지원금 지급 사례

※ 산정조건: 근로자 수 5명 미만(50개소), 5~30명 미만(50개소), 자진신고사업장 없음
 피보험자 신고(사업장별 매분기 1건~3건), 일자리안정자금 병행신청(사업장별 매분기 1건~9건)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신고(100개소), 신규 성립신고 실적(10개소)

대행기관명	수임 사업장수	연간 지원금				
		합계	피보험자신고 대행지원금	보수총액신고 대행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행지원금	적용촉진 장려금
○○○세무 회계사무소	100개소	9,700,000원	4,800,000원 (12천원×100개소×4회)	2,100,000원 (18천원×50개소)+(24천원×50개소)	2,400,000원 (6천원×100개소×4회)	400,000원 (40천원×10개소)
산정방법			▶ 피보험자신고대행지원금: 위임사업주당 12,000원 분기별 지급 ▶ 보수총액신고대행지원금: 5명 미만 사업장 18,000원, 5~30명 미만 사업장 24,000원 지급 ▶ 일자리안정자금대행지원금: 피보험자신고와 병행하여 신청한 경우 위임사업주당 6,000원 분기별 지급 ▶ 적용촉진장려금: 고용·산재보험 신규 성립신고시 40,000원 지급			

11 보험사무대행기관

제 7 장

보험사무대행기관 토탈서비스 이용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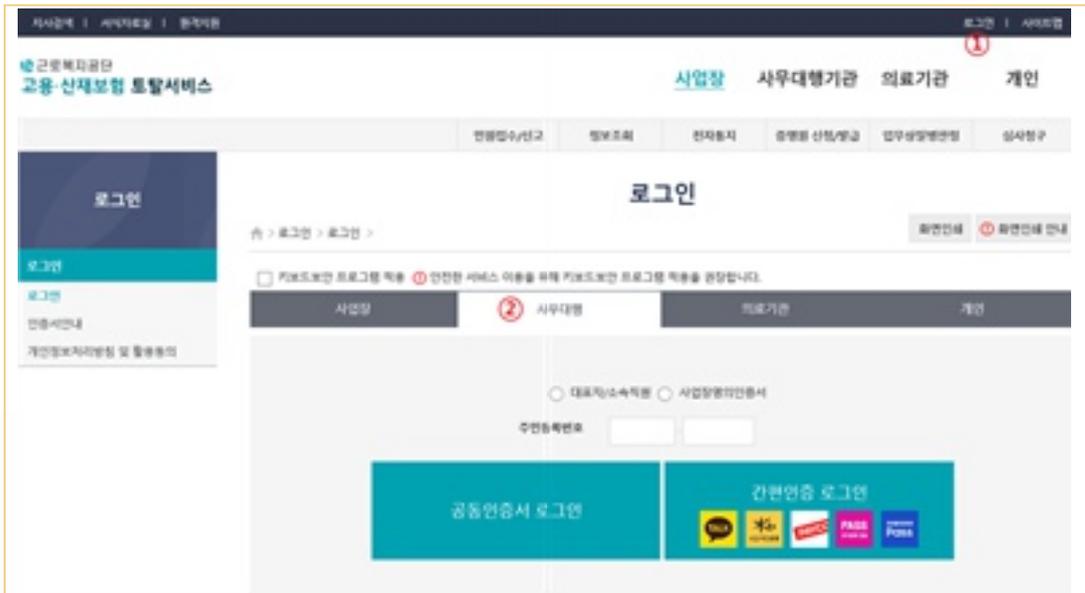
1 | 토탈서비스 로그인

가. 토탈서비스 로그인

- 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토탈서비스에서 “사무대행기관” 유형으로 로그인 후 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팩스 및 회계프로그램 전송, 타 사회보험 EDI 등을 통해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 지원금 미반영)

사무대행기관 로그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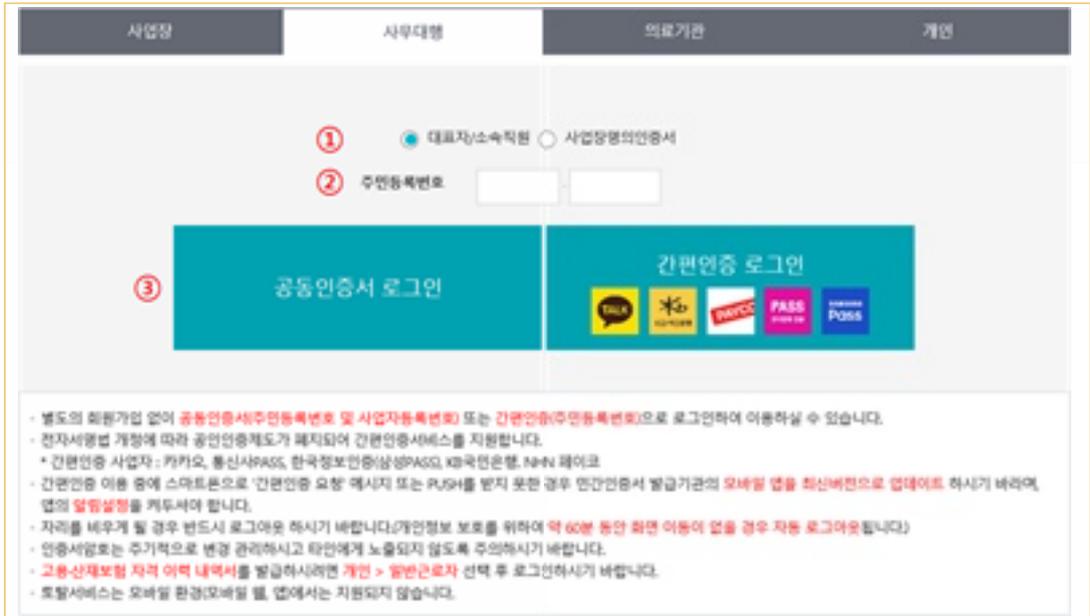
- ① 사무대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만든 사업장 명의 인증서
- ② 사무대행기관 대표자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된 사무대행기관 소속 직원의 개인 명의 인증서
- ③ 사무대행기관 대표자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된 사무대행기관 소속 직원 개인의 간편인증서비스 (2021. 9. 28.부터)



01 로그인 >> 02 사무대행기관 로그인 선택

※ 사무대행기관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야 함

나. 대표자 or 소속직원 개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 방법



- 01 대표자 or 소속직원 체크 >> 02 대표자 or 소속 직원 주민번호 입력 >> 03 대표자 or 소속직원 인증서로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간편인증 서비스는 대표자, 소속직원 등 '개인' 대상으로 로그인시에만 이용 가능

다. 사업장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 방법



- 01 사업장 명의 인증서 로그인 체크 >> 0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03 사업장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

라. 보안서약서 동의 후 인쇄 보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사용자 정보 확인
✕

*이름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인가일자	

※소재지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포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보험변경신고>>](#)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 신고](#), 메뉴에서 변경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정보

사용자명		유형	사무대행기관
------	--	----	--------

- 개인정보보호 의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의 규정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본 사무대행기관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포탈서비스에서는 자료의 열람내역(열람자, 열람시간, 열람내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보안서약

위 회원가입자 본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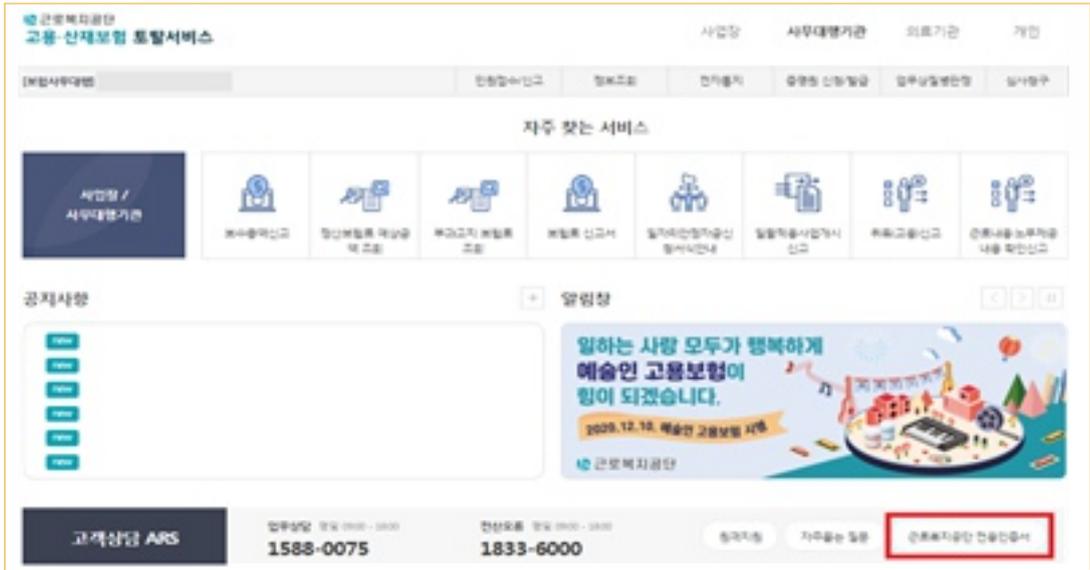
▶ 위 보안서약에 동의하여야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① 동의합니다.

② 보안서약서 인쇄하기

01 보안서약 내용 확인 후 동의합니다 버튼 체크 >> 02 보안서약서 인쇄하여 보관

마. 근로복지공단 전용 인증서 발급 방법



01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 신청하기 클릭

- 토달서비스와 4대 사회보험사이트에서는 일반 금융권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업무 가능
- 금융거래용 인증서의 제3자 활용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토달서비스에서 이 용가능한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 발급서비스 제공
- 필요시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 발급하여 업무 활용 가능

〈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 소개 〉

구분	용도제한 구분	이용 가능 사이트	발급비용 (VAT 별도)
사업장명의 인증서 (법인 등 사업자용)	전자거래 범용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업무 (금융·증권 거래, 나라장터, 국세청, 전자계약, 전자 입찰 등)	80,000원
	용도 제한	고용·산재보험 토달서비스 (total.comwel.or.kr) 근로복지넷 (workdream.net) 퇴직연금서비스 (pension.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20,000원
개인명의 인증서 (개인용)	용도 제한	건강보험EDI 서비스 (edi.nhis.or.kr) 국민연금EDI서비스 (edi.nps.or.kr) 고용보험 (ei.go.kr) ※ 일반 금융거래 불가능	10,000원

2 | 사무수임 신고 및 사무수임 해지 신고

보험사무 수입신고

1 보험사무수임신고

2 사무대행업무

3 보험사무 수입신고

4

보험구분	전자위탁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수입일	관리자수	관리지사
고용	Y	N	Y				
산재	Y	N	Y				

5

6

01 사무대행기관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02 사무대행업무 메뉴 선택

03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수임 신고 선택

04 수임신고 사업장의 관리지사 선택

05 수임신고 사업장의 관리번호 및 수임일자 입력

- 관리번호는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을 클릭하여 조회 가능
- 수임일자는 수임신고 하는 현재 날짜를 입력
- 행추가를 클릭하여 다수 사업장 동시 신고 가능
- ※ 사업장 관리지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06 사업주와 체결한 “사무위탁서” 스캔 첨부

- 다수 사업장을 입력한 경우 각각의 “사무위탁서”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등록
- 토털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무위탁서” 첨부 생략
- ※ 스캔파일명에는 특수문자(괄호, 따옴표, 언더바 등) 사용 금지

보험사무 수입해지 신고

1 보험사무수입신고

2 사무대행업무

3 수입해지신고 사업장 정보

보험구분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수입해지일	관리지사
고용	00	가업			
산재	00				

4 수입해지신고 사업장 정보를 추가 하시려면 항목여백을 클릭하세요

5 접수

- 01 사무대행기관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 02 사무대행업무 메뉴 선택
- 03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수입 해지 신청 선택
- 04 수입해지 사업장의 관리번호 및 수입해지사유, 해지일 입력
 - 관리번호는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을 클릭하여 조회 가능
 - 수입일자는 수입신고 하는 현재 날짜를 입력
 - 행추가를 클릭하여 다수 사업장 동시 신고 가능
 - ※ 사업장 관리지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05 「접수」를 클릭하여 사무수입 해지신고 완료

3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계좌 등록 및 지급신청 등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계좌 등록신청

The screenshot shows the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계좌 등록신청' (Insurance Agency Support Fund Disbursement Account Registration) form. The interface includes a left sidebar with navigation options, a main form area with various input fields, and a bottom navigation bar. Red boxes and numbers 1 through 5 highlight specific steps in the process:

- 1**: Selecting '민원접수/신고' (Inquiry/Report) in the sidebar.
- 2**: Selecting '사무대행업무' (Agency Business) in the sidebar.
- 3**: Selecting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계좌 등록신청' (Insurance Agency Support Fund Disbursement Account Registration) in the sidebar.
- 4**: Filling out the '대상기관 정보' (Target Institution Information) table, which includes fields for name, address, and contact details.
- 5**: Filling out the '계좌 정보' (Account Information) section, including account type and number.

At the bottom of the form, there are buttons for '입력완료' (Finish Input), '다음' (Next), and '이전' (Previous).

- 01 사무대행기관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 02 사무대행업무 메뉴 선택
- 03 보험사무대행기관지원금 지급계좌 등록신청 선택
- 04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 입력
- 05 통장사본 스캔 첨부
 - 스캔파일명에는 특수문자(괄호, 따옴표, 언더바 등) 사용 불가
- 06 「접수」를 클릭하여 계좌등록 신청 완료
 - 이미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할 필요 없이 지원금 지급신청 가능

11 보험사무대행기관

- 06 신청명세 다운로드 및 업로드
 - 입력정보에 조회된 사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거나, 수정한 자료 업로드 가능
- 07 이미 등록된 계좌 정보가 있는 경우 자동 조회
 - 지원금 지급계좌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지급계좌를 변경하려면,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계좌 등록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접수
 -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당시 입력된 지급계좌 정보로 지급처리(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다른 계좌 정보로 지급계좌 등록신청을 하더라도 추후 신청서 접수시 반영됨)
- 08 공단 산정자료와 다르게 수정한 내용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파일 첨부
- 09 「접수」를 클릭하여 지원금 지급신청 완료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 내역조회

1 민원접수/신고

2 보험사무대행기관

3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내역 조회

4 조회

5 2020 4분기

6 지원금신청하기

Check

- 조회일 기준 5년 이내 자료만 조회됨(보험사무대행지원금 소멸시효 5년)
- 이미 신청한 지원금의 승인 신청금액과 수령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는 공단에서 과료 지급한 지원금에 대하여 상계처리. 미결제나 보험사무대행 기관에서 지원금지출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한 경우 용 이요로
- 이미 신청한 지원금의 가액분에 대한 지급명승 확인후 신청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대상분기 종료후 45일부의 승인 신청금액 조회 및 지급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자료 무효를 위한 기간이 약 45일 소요)

대상연도	지원금구분	공단신청금액	수령금액	차액	신청일
2020	4분기	496,000	496,000	0	2020-08-13
2020	3분기	476,000	476,000	0	2020-08-13
2020	2분기	284,000			미신청

- 01 사무대행기관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 02 사무대행업무 메뉴 선택
- 03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내역 조회 선택
- 04 조회 버튼 클릭
 - 조회일 기준 5년 이내 자료 조회됨(보험사무대행지원금 소멸시효 5년)
- 05 보험사무 대행 실적에 따라 공단에서 산정된 지원금이 존재하나,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미신청”으로 조회
- 06 「지원금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 화면”으로 연계됨

제11편

참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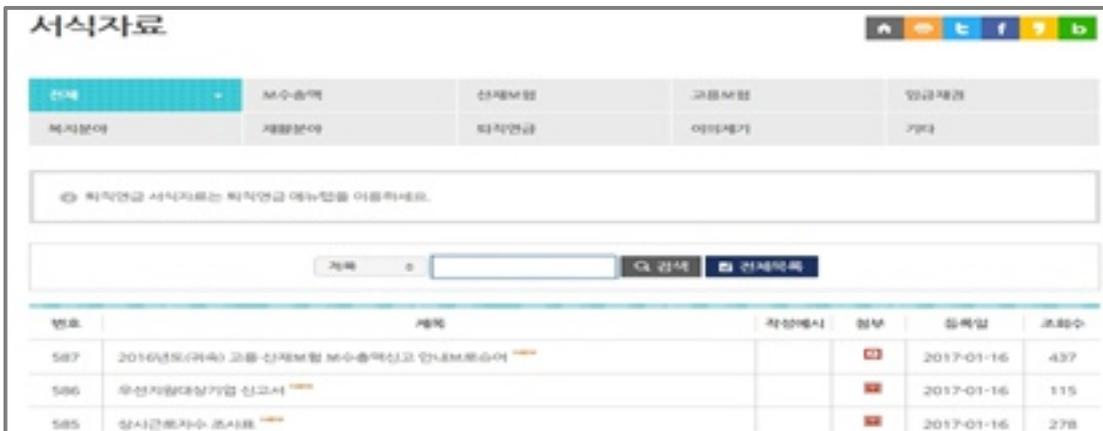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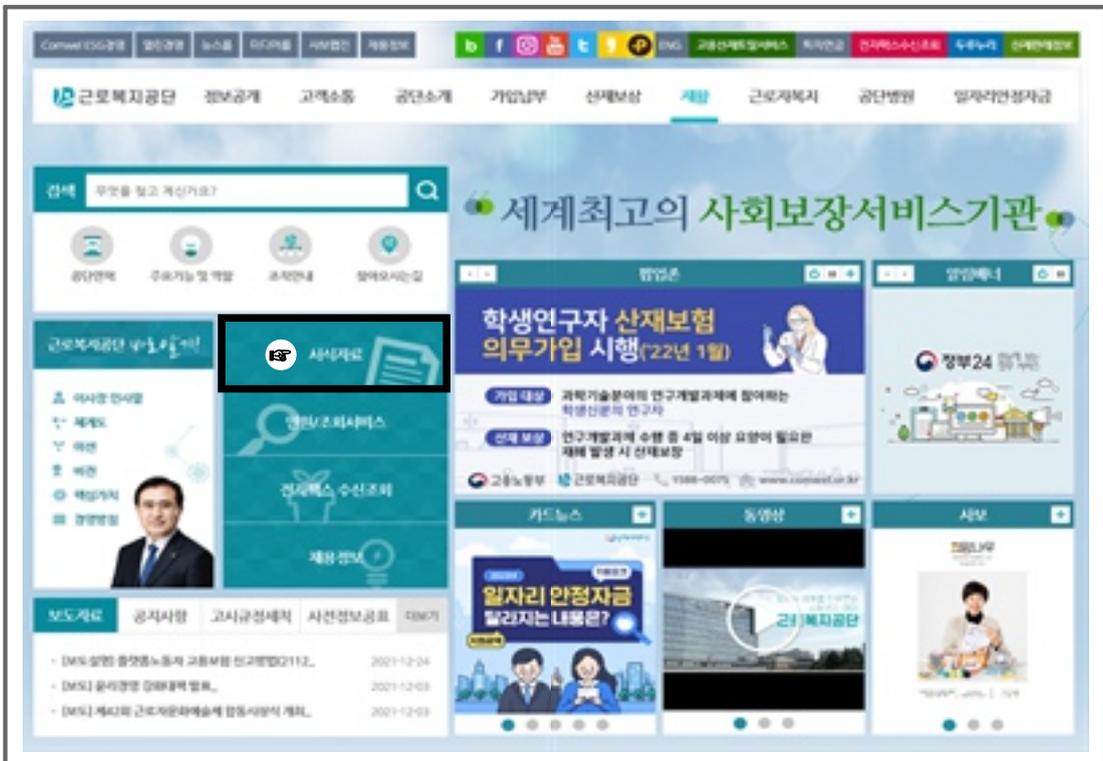
- 참고1 서식자료
- 참고2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기준 비교
- 참고3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 참고4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 참고5 2021년 성과평가 우수 보험사무대행기관 상위 30개소



참고1 | 서식자료

● 공단홈페이지 www.comwel.or.kr

- 초기 화면의 바로가기메뉴의 **서식자료** 선택 후 검색



참고2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 비교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보험료 부과 여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	×	×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	×	×
• 「산재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애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籍)의 성질이 있는 급여	-	×	×	×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애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	×	×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	×	×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	×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원 요양비·요양급여·장애일시금·비공무상 장애일시금·비직무상 장애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역유족연금일시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역유족연금	-	×	×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보험료 부과 여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등이 받는 수당	-	×	×	×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	×	×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	×	×	×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	×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보험료 부과 여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	×	×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 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	×	×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월20만원	×	×	×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	×	×
- 교원 및 연구기관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20만원	×	×	×
-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월20만원	×	×	×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월20만원	×	×	×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한도)		×	×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보험료 부과 여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 교사·교사의 인건비(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한도)		×	×	×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	×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월20만원	×	×	×
-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 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	×
•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	○	×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	×	×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	×	×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	×	×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	×	×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100만원	○	×	×
-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300만원	○	×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보험료 부과 여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300만원	○	×	×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	×	×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로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연 240만원	×	×	×
-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수당	-	×	×	×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연 240만원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	×	×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월10만원	×	×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월10만원	×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	×	×
•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	×	×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사용자 또는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연 500만원	×	×	×

참고3 |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품의 예

- 보건복지가족부 시행 '아동안전지킴이' 순찰 보수(원천세과-470, 2009.5.26)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보수(원천세과-419, 2009.5.15)
- 임직원 및 가족 관광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액(소득46011-567, 1999.12.31)
- 선택적복지제도의 종업원 포인트 사용액(서면1팀-1417, 2005.11.23)
- 부서단위로 받는 포상금으로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소득46011-2332, 1994.8.18)
-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판매실적급여(소득22601-395, 1985.2.6)
- 의료법인의 임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경감액(서면1팀-298, 2007.3.6)
- 임금채권포기시 근로소득해당 여부(서일46011-11906, 2003.12.26)
 -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회사가 직원가족들의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
-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별도 지급하는 수당(서면1팀-1439, 2005.11.28)
 -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사업주가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통보 받은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비과세 근로소득의 판단 예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 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법인 46013-3228, 1996.11.19)

-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실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 등을 회사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증빙 없이 단순히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1팀-1391, 2006.10.9)

●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영12조 3호)
 - ※ 종업원의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됨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통칙12-3)
-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님.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임(서면1팀-293, 2008.3.6)

■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금품의 예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서일46011-10237, 2001.9.25)

-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 용역의 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 학교강사의 소득구분(소득46011-21080, 2000.8.14)

-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근로소득에 해당(지급방법이나 명칭 여부를 불문)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에 해당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에 해당
 -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 출장·연수 및 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은 국외 근무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 되지 않음(소득세법 기본통칙-16…1 ; 법인46013-3631, 1996.12.27.)

참고4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 대표번호 : 1588-0075

지역본부 관할 소속기관

기관명	소재지	관할구역	우편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9층,19층,22층(충무로3가)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04554
서울강남지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8~10층(대치동)	강남구	06193
서울동부지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14~15층 (신천동, 월드타워빌딩)	서울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05510
서울서부지사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8~12층(신수동)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04108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층(영등포동2가)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07254
서울북부지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6층(상봉1동, 리베로빌딩)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성북구	02098
서울관악지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신대방동, 삼성보라매옴니타워) 6층, 7층	서울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7071
의정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1519번길 2-57(금오동)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연천군, 강원 철원군	11754
남양주지사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43, 7층 (다산동, 다산타임프라자)	남양주시, 구리시	12284
서울서초지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16층(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서울 서초구	06720
서울성동지사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8, 4층(성수동 2가, 거영빌딩)	서울 성동구	04782
서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1층(영등포동2가)	서울·강원 권역 소재 지사, 의정부·남양주 지사 전국(내과계질환 중 암 사건, 기타 질환)	07254
서울특수형태 근로종사자센터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11층(연합뉴스빌딩)	서울·강원 권역 소재 지사 및 의정부·남양주 지사 관할 특고·예술인 가입지원업무	03143
부산지역본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4~9층(초량동)	부산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48731
부산동부지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763번길 26, 1~3층(부곡동)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46274
부산북부지사	부산 북구 기차로 12, 6~7층(덕천동, 이수빌딩)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46548
창원지사(본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50번길 4, 2층3층(신월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창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진해구,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51439 ※ 본관: 경영복지·가입지원, 재할보상 별관: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창원지사(별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6, 1층(신월동)		
울산지사	울산 남구 문수로 330, 3~5층(옥동)	울산광역시	44661
양산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3층(석산리)	경남 양산시, 밀양시	50635
김해지사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466 2, 3층	경남 김해시	50935

기관명	소재지	관할구역	우편번호
진주지사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8, 8층(칠암동)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52725
통영지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10, 6,7층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53015
부산중부지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12층~13층(부전동)	부산 부산진구, 연제구	47244
부산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4, 7층(초량동)	부산·울산·경남 소재 지사	48729
부산특수형태 근로종사자센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10층(초량동)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소재 지사 관할 특고 가입지원업무	48731
대구지역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5, 3층, 7~9층(삼덕동2가)	대구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41948
대구북부지사	대구 북구 원대로 130, 3~4층 (침산동, 파크드림갤러리)	대구 서구, 북구, 경북 군위군,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41590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0, 8~9층 (두류동, 감삼빌딩)	대구 달서구, 경북 고령군, 성주군	42645
포항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23, 1~3층(대잠동)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37685
구미지사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2(송정동)	경북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 국가산업단지	39281
경산지사	경북 경산시 경안로 233, 6,7층(중방동, 도륜빌딩)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38621
영주지사	경북 영주시 원당로 68(휴천동)	경북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36102
안동지사	경북 안동시 경동로 841, 2층(용상동)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36711
대구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대구 남구 중앙대로 200, 12층(대명동)	대구·경북 소재 지사	42425
경인지역본부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 9층(구월동, 미추홀타워)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21556
인천북부지사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4층(구산동)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21417
수원지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3,4층(정자동)	경기 수원시	16313
화성지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8,9층	경기 화성시	18302
용인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1층(마북동)	경기도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16921
평택지사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75, 7,8,9층(서정동)	경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17774
부천지사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4, 7~10층(상동)	경기 부천시, 김포시	14623
안양지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2층, 7~9층(안양동)	경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14006
안산지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 1~3층(보오동)	경기 안산시, 시흥시	15532
고양지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4층(마두동)	경기 고양시, 파주시	10410

기 관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우편번호
성남지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14, 4~6층(도촌동)	경기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13426
경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3층(구산동)	인천·경기 소재 지사(의정부지사 제외)	21417
경인특수형태 근로종사자센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635(삼산동, 엘림타워) 501호	인천·경기 관할 특고 가입지원업무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제외)	21344
광주지역본부 (본관)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8,9,10층(양동)	광주(광산구 제외),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61925
광주지역본부(별관)	광주 북구 금재로 30, 4,5층(유동)	※ 본관 : 경영지원, 가입지원, 재활보상, 진폐보상, 복지사업, 산재의학센터 별관: 부정수급예방, 송무	61240
전주지사(본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5층(인후동1가)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55014
전주지사(별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3길 21-12, 5층 (인후동 1가)	※ 본관 : 경영복지, 재활보상 별관 : 가입지원	55013
익 산 지 사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1층(어양동)	전북 익산시, 김제시	54552
군 산 지 사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1~3층(장미동)	전북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54026
목포지사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5층(호남동)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58730
여수지사	전남 여수시 문수로 125(문수동)	전남 여수시, 광양시	59700
제주지사	제주 제주시 연신로 14 (이도2동)	제주시	63225
광산지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6, 1층, 10층(우산동)	광주시 광산구, 전남 나주시,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62363
순천시사	전남 순천시 백강로 367, 5층(조례동)	전남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57934
광주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광주 남구 봉선로 1, 3층(봉선동)	광주·전남·전북·제주 소재 지사	61687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8,11,15,16,17층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대전(유성구제외), 충남 금산군	35209
청주지사(본관)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36번길 21(내덕동)	충북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28481
청주지사(별관)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28, 4층 (내덕동)	※ 본관: 경영복지, 가입지원 별관: 재활보상	
천안지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6,7,8층(불당동)	충남 천안시, 아산시	31169
충주지사	충북 충주시 증원대로 3434(봉방동)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27428
보령지사	충남 보령시 한내로 27, 1~3층(동대동)	충남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33433

기관명	소재지	관할구역	우편번호
서산지사	충남 서산시 남부순환로 1035, 오성빌딩 2~3층	충남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31998
유성지사	대전 유성구 반석로 9, 7,8,9층(반석동)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세종특별자치시	34068
대전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9층(둔산동)	대전·충남·충북 소재 지사	35209
대전특수형태 근로종사자센터	대전 서구 문예로 137, 7층(둔산동, KT&G)	대전·충북·충남·세종·광주·전북·전남·제주 특고업무	35209
강원지역본부(본관)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1(무실동)	강원 원주시, 횡성군	26387 ※본관: 경영지원, 가입지원, 재활보상, 복지사업 별관: 진폐보상
강원지역본부(별관)	강원 원주시 시청로 30, 3층(무실동, 메트로프라자)		
춘천지사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7층 (석사동, 빅서스 프라자빌딩)	강원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 가평군	24415
강릉지사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17 3층, 4층(포남동)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25492
태백지사	강원 태백시 황지로 181, 3층(황지동)	강원 태백시, 삼척시	26008
영월지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3번길 30, KT빌딩 3층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26233

■ 공단 본부 등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공단본부	울산 중구 종가로 340(교동)	44428
산재심사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5층(영등포동2가)	07254
인재개발원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3	27803
직업환경연구원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본관 2층(구산동)	21417
근로복지연구원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층(영등포동2가)	07254
재활공학연구소	인천 부평구 경인로10번길 26, (구산동)	21417
콜센터	광주 북구 삼소로 141, 1층(대촌동)	61004

■ 근로복지공단 병·의원

기관명	소재지	진료과목	우편번호
인천 병원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6(구산동)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21417
서울 의원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사옥 20층	재활의학과	07258
안산 병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일동)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15324
창원 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중앙동)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51524
대구 병원	대구 북구 학정로 515(학정동)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신경과)	41405
순천 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조례동)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 치과	57947
광주 의원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72-8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62364
대전 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285-3)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34384
대전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66 한신에스메카서관 135호	직업환경의학과	34016
태백 병원	강원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26052
동해 병원	강원 동해시 하평로 11(평릉동)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25738
정선 병원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1길 145	내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26129
경기요양 병원	경기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	신경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18558

참고5

2021년 성과평가 우수 보험사무대행기관 상위 30개소

기관유형	보험사무대행기관명	기관소재지	전화번호
노무법인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서울(강남구)	010-2040-0620
세무사	세명 세무·회계 사무소	부산·경남(부산 사상구)	051-327-0818
세무사	세무그룹 세담	인천·경기(인천 연수구)	032-834-5714
노무법인	노무법인 산천 노동문제 연구소 경기지사	인천·경기(경기 수원)	031-251-1701
세무사	방진호 세무·회계 사무소	대구·경북(대구 북구)	053-324-6800
세무사	최옥선 세무·회계 사무소	대전·충남(세종)	044-868-3291
세무사	세무사 김인규 텍스트리	대전·충남(대전 서구)	042-710-7130
노무법인	노무법인 한양 인사노무컨설팅	서울(중구)	02-756-7788
세무사	나이스 세무·회계	서울(용산구)	02-790-1986
공인노무사	노무그룹 지노	서울(용산구)	02-6080-8558
세무법인	세정 세무법인 경기지사	인천·경기(경기 화성)	031-225-8561
세무사	세무사 안병무사무소	인천·경기(경기 안양)	031-457-4490
회계법인	신승 회계법인 역삼분사무소	서울(강남구)	02-414-0381
세무사	오동수 세무·회계사무소	인천·경기(경기 이천)	031-637-0053
세무사	세무사 염광민 사무소	서울(서초구)	02-6259-0207
세무사	김기학 세무·회계 사무소	대전·충남(대전 중구)	042-256-2821
세무사	허영관 세무·회계 사무소	전북(군산)	063-467-1681~2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대전·충남(대전 서구)	042-489-9911
세무사	유원 세무·회계 컨설팅	서울(강남구)	02-565-3838
세무사	삼정 세무·회계 사무소	부산·경남(경남 진주)	055-748-1100
세무사	세무사 이민형 사무소	인천·경기(경기 용인)	031-339-3045
세무사	세무사 신현일 사무소	제주(제주)	-
노무법인	노무법인 도원	서울(강남구)	02-2038-3355
세무법인	세무법인 한백 텍스	서울(중구)	02-2277-3101
세무법인	세무법인 이안 컨설팅 가산지점	서울(금천구)	02-6953-1501
세무법인	세무법인 한길 텍스 영등포지사	서울(영등포구)	02-6123-4242
세무사	세무·회계 동행	서울(송파구)	02-400-5519
세무사	세무사 박상민 사무소	서울(양천구)	02-6232-1900
공인노무사	바른길 노무사 사무소	부산·경남(경남 창원)	055-237-9323
세무법인	정진 회계법인 청주지점	충북(청주)	042-230-4900

※ '21년에 실시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성과평가(2000년 실적) 결과 상위 30개소 명단(일부 기관 제외)

※ 소규모 사업장은 위 우수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을 통해 무료로 보험사무위탁 가능하며(공단에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수입 가능 여부는 각 기관 유선 문의 요망

2022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발행일 : 2022년 1월

발행인 : 강 순 희

발행처 : 근로복지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0

인 쇄 : 전우용사촌(주)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시행('22년 1월)



가입 대상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신분의 연구자**

-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재학생
-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 휴학생 및 수료생 포함



신고 기한

대학·연구기관 등은 매학기 시작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 제출

- 1학기 4월 15일까지, 2학기 10월 15일까지

* 다만, '22년 1월 시행 당시 학생연구자는 '22. 2. 15.까지 신고

학기 중 학생연구자 추가해당 또는 비해당 시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 제출

- 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산재 보상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comwel.or.kr

2022년 1월 1일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가 고용보험에 적용됩니다



배달 대행·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적용 대상 직종

1 퀵서비스기사

퀵서비스기사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하(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택배기사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2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특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특례 개요

2022.1.1.부터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퀵업체, 음식배달대행업체, 대리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 신고, 원천공제 및 보험료 납부 의무 부여

피보험자격 신고

-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취득·상실신고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보험료 납부

보험료 산정 및 부과

특고 보수액 x 보험료율(0.7%) + 특고 보수액 x 보험료율(0.7%)
(특고 부담) (사업주 부담)

- 부담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균등 부담(각 0.7%)
- 요율 : 1.4%(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수급조건

구직급여 수급 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기여요건 :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 노무제공자로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 지급수준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지급

출산전후급여 수급 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수급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상한액 : '21년 기준 월 200만원 (근로자와 동일)
-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유관기관 안내

기관	주요업무	대표번호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지급 등 적용지원 업무 ·출산전후급여 지급	국번없이 1350	www.ei.go.kr
근로복지공단	서울특고센터 (서울강원 지역본부 관내 사업장 관할)	02-6946-0501	www.comwel.or.kr
	경인특고센터 (경인지역본부 관내 사업장 관할)	032-712-0500	
	부산특고센터 (부산·대구 지역본부 관내 사업장 관할)	051-790-0300	
	대전특고센터 (대전·광주 지역본부 관내 사업장 관할)	042-718-060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고지 및 수납·채납관리	1577-1000	www.nhis.or.kr